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1. 13.]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환경부 (총괄-물환경정책과) 044-201-6998

환경부 (공공폐수처리시설-수질수생태과) 044-201-7068

환경부 (비점오염-물환경정책과) 044-201-7010

환경부 (폐수배출시설, 기타수질오염원, 배출 등의 금지-수질수생태과) 044-201-7071

환경부 (배출부과금, 배출허용기준, 특정수질유해물질 조사-수질수생태과) 044-201-7075

환경부 (폐수처리업, 측정기기-수질수생태과) 044-201-7061

환경부 (수생태계 건강성-수질수생태과) 044-201-707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7.>

제2조(기타수질오염원)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6. 16., 2018. 1. 17.>
[제목개정 2015. 6. 16.]

제3조(수질오염물질)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특정수질유해물질)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공공수역) 법 제2조제9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란 다음 각 호의 수로를 말한다.
<개정 2014. 1. 29., 2014. 7. 17., 2020. 11. 27.>

1. 지하수로
2. 농업용 수로
3.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4. 운하

제6조(폐수배출시설)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별표 4와 같다.

제7조(수질오염방지시설)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은 별표 5와 같다.

제8조(비점오염저감시설)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 1. 29.>

제8조의2(수생태계 구성요소) 법 제2조제15호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리적·화학적·생물적 요소”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말한다.

1. 부착돌말
2. 저서성(底棲性) 대형 무척추동물

- 3. 어류
- 4. 수변식생(水邊植生)
- 5. 서식 및 수변환경

[본조신설 2018. 1. 17.]

[종전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 <2018. 1. 17.>]

제8조의3(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시설은 법 제2조 제19호다목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에서 제외한다.

1. 해당 시설과 인접하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표지판을 설치한 시설
 - 가. 물놀이가 금지됨을 알리는 표시 및 안내문
 - 나. 해당 시설의 관리자명 및 관리자의 연락처
2.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의 운영시간에 관리인을 두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

[본조신설 2017. 1. 19.]

[제8조의2에서 이동 <2018. 1. 17.>]

제9조(오염총량목표수질의 승인신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을 적은 서류에 영 제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분석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9., 2018. 1. 17.>

제10조(총량관리 단위유역 수질 측정방법) 영 제3조제7항에 따른 총량관리 단위유역 하단지점의 수질 측정방법은 별표 7과 같다.

제11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 ① 시·도지사는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역환경의 조사·분석 자료
 2. 오염원의 자연증감에 관한 분석 자료
 3. 지역개발에 관한 과거와 장래의 계획에 관한 자료
 4. 오염부하량의 산정에 사용한 자료
 5. 오염부하량의 저감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사용한 자료
- ②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을 것
 2. 오염부하량의 저감계획이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을 것
 3. 영 제4조제4호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10년 단위로 수립되어 있을 것
- ③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 ① 시·도지사는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역환경의 조사·분석 자료
2. 오염원의 자연증감에 관한 분석 자료
3. 지역개발에 관한 과거와 장래의 계획에 관한 자료
4. 오염부하량의 산정에 사용한 자료
5. 오염부하량의 저감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사용한 자료

②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을 것
2. 오염부하량의 저감계획이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을 것
3. 영 제4조제4호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10년 단위로 수립되어 있을 것

③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개정 2024. 11. 7.>

④ 제3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4. 11. 7.>

⑤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4. 11. 7.>

[시행일: 2025. 1. 1.] 제11조

제12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지역) ① 환경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4조의4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을 것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1. 19.>

1.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 당시 별표 7에 따라 측정한 수질이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량관리 단위유역(이하 "총량관리단위유역"이라 한다)의 오염총량목표수질보다 나쁜 지역

2.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 이후 별표 7에 따라 측정한 수질이 2년간 연속 총량관리단위 유역의 오염총량목표수질보다 나쁜 지역
-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지역에 대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승인절차·기준 등) ①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보일부터 1년 이내에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으면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1.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저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할당되어 있을 것
 2.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저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을 줄이는 시기가 적정하게 지정되어 있을 것
 3.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종기(終期)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과 같을 것
 4. 그 밖에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을 것
- ③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검토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으로, "환경부장관"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
-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 ①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4조의 4제2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 이행사항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9.>

- ②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보고서의 검토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보고서"로, "환경부장관"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으로 본다.

제15조(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방법 등) ①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 승인된 후에 설치하는 시설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따라 설치에 관한 허가·인가·승인·신고 등을 할 때에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이하 "오염할당사업자등"이라 한다)는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의 이행시기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명세
2.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개선 명세 및 측정기기 부착 명세
- ③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이 제1항에 따라 통보한 할당 오염부하량을 초과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게는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배출량을 추가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지방자치단체의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대상·방법 등) ① 법 제4조의5제2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1. 오수 또는 폐수를 1일 200세제곱미터 이상으로 배출하거나 방류하는 시설로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중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염부하량의 할당이나 배출량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 ② 제1항에 따른 오염부하량 할당이나 배출량 지정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본다.

제17조(조치명령 등) ①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초과한 정도, 조치 명령의 내용, 명령이행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기간은 시설의 개선 또는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고 그 개선계획서에 따라 명령을 이행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7. 1. 19.>
- ④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이행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4항에 따른 이행보고서를 받으면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조치완료 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료를 채취하여 다음 각 호의 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해야 한다.<개정 2012. 1. 19., 2024. 11. 7.>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2. 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한국환경공단 및 그 소속 사업소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검사기관

제18조(오염할당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① 법 제4조의6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징금은 제105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각각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하고, 사업장(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규모별 부과계수는 영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은 2.0, 제2종사업장은 1.5, 제3종사업장은 1.0, 제4종사업장은 0.7, 제5종사업장은 0.4로 할 것. 다만, 영 제8조 각 호의 시설에 대한 부과계수는 2.0으로 한다.
- ② 법 제4조의6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별표 22제2호가목8)나)에 따라 조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조의6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 ③ 법 제4조의6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등) ①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를 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납부통지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부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7.>

- ②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조정신청서에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7.>
- ③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부과 및 환급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 1. 17.>
- ④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에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7.>

[제목개정 2018. 1. 17.]

제20조(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① 법 제4조의9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이하 "조사·연구반"이라 한다)은 국립환경과학원에 둔다.

- ② 조사·연구반의 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추천하는 국립환경과학원 소속의 공무원과 물환경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 17.>
- ③ 조사·연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목표수질에 대한 검토·연구
 2.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대한 검토·연구
 3.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대한 검토

4.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검토
5. 법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 이행사항 평가 보고서 검토
6. 오염총량목표수질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수계특성에 대한 조사·연구
7. 오염총량관리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연구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20조(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① 법 제4조의9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이하 "조사·연구반"이라 한다)은 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국환경공단에 둔다. <개정 2024. 11. 7.>

② 조사·연구반의 반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4. 11. 7.>

1. 국립환경과학원에 조사·연구반을 두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추천하는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공무원과 물환경 관련 전문가
2. 한국환경공단에 조사·연구반을 두는 경우: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한국환경공단 소속 임직원과 물환경 관련 전문가

③ 조사·연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4. 11. 7.>

1.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목표수질에 대한 검토·연구
2.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대한 검토·연구
3.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대한 검토
4.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검토
5. 법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 이행사항 평가 보고서 검토
6. 오염총량목표수질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수계특성에 대한 조사·연구
7. 오염총량관리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연구
8. 오염부하량 초과 또는 오염총량목표수질 미달성 원인에 대한 정밀조사·분석 및 관리대책 검토
9. 오염총량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의 수집·분석·활용 및 통계 자료의 작성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사·연구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24. 11. 7.>

[시행일: 2025. 1. 1.] 제20조

제21조(제공하는 정보의 종류) 법 제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를 위하여 조사한 물환경에 관한 정보
2. 수면관리자가 수면관리 차원에서 조사한 물환경에 관한 정보

[전문개정 2018. 1. 17.]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개정 2018. 1. 17.>

제1절 총칙

제22조(국립환경과학원장 등이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측정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개정 2012. 1. 19., 2018. 1. 17., 2019. 10. 17.>

1.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비점오염물질 측정망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를 위한 측정망
3. 영 제8조 각 호의 시설 등 대규모 오염원의 하류지점 측정망
4. 법 제21조에 따른 수질오염경보를 위한 측정망
5.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대권역·중권역을 관리하기 위한 측정망
6. 공공수역 유해물질 측정망
7. 퇴적물 측정망
8. 생물 측정망
9.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운영하는 측정망

②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1항제5호·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측정망을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19. 10. 17.>

[제목개정 2019. 10. 17.]

제23조(시·도지사 등이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① 시·도지사,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 또는 수면관리자가 법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측정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 17., 2021.

12. 10.>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소권역을 관리하기 위한 측정망
 2. 도심하천 측정망
 3. 그 밖에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측정망
- ②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수면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수질오염도를 상시측정하거나 수질의 관리 등을 위한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7.>

1. 수질오염도 : 측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
 2. 수생태계 현황 : 조사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시측정, 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신설 2018. 1. 17.>

[제목개정 2018. 1. 17.]

제24조(측정망 설치계획의 내용·고시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이하 “측정망 설치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 17.>

1. 측정망 설치시기
2. 측정망 배치도
3. 측정망을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4. 측정망 운영기관

5. 측정자료의 확인방법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9조의2제1항·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거나 승인한 경우(변경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측정망 설치를 시작하는 날의 90일 전까지 그 측정망 설치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7.>

③ 삭제<2018. 1. 17.>

[제목개정 2018. 1. 17.]

제24조의2(수생태계 현황 조사) ① 법 제9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의 방법은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통계자료나 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7.>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9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수생태계 현황을 조사한 경우에는 조사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수생태계에 서식하는 생물종 및 개체수 등이 포함된 조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7.>

[본조신설 2017. 6. 26.]

제24조의3(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제8조의2 각 호의 항목을 대상으로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물종의 다양성 및 물리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7.>

1. 삭제<2018. 1. 17.>

2. 삭제<2018. 1. 17.>

3. 삭제<2018. 1. 17.>

4. 삭제<2018. 1. 17.>

5. 삭제<2018. 1. 17.>

② 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건강성의 평가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8. 1. 17.>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이하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7.>

[본조신설 2017. 6. 26.]

제24조의4(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고시 등) ① 법 제9조의4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이하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 시기

2. 조사 지점

3. 조사 항목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변경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수생태계 현황 조사를 실시하는 날의 90일 전까지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 17.]

제24조의5(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 17.]

제25조(물환경 목표기준의 결정·평가·공개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물환경 목표기준을 결정·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 1. 17.>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목표기준 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7.>

1. 법 제9조에 따른 수질오염도 상시측정 및 수질 조사 결과
2. 법 제9조의3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 결과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목표기준 등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보에 신고, 국가물환경종합정보망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목표기준의 달성 여부 등에 대한 평가방법과 평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목개정 2018. 1. 17.]

제26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7. 1. 19.>

[제목개정 2017. 1. 19.]

제26조의2(토사 유출 등의 기준) ①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사량을 말한다. 이 경우 토사는 육상에서 행해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한 토사로서 누적강우량이 20밀리미터 미만일 경우에 유출되거나 버려지는 토사로 한다.

1. 1천킬로그램 이상의 토사량(「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하수관로, 폭 5미터 이하의 배수로 또는 폭 5미터 이하의 소하천에 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에 한한다)
2. 토사 유입 후의 부유물질 농도에서 토사 유입 전의 부유물질 농도를 뺀 값이 리터당 100밀리그램 이상이 되게 하는 토사량(하천·호소에 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누적강우량 및 토사량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 6. 16.]

[중전 제26조의2는 제26조의3으로 이동 <2015. 6. 16.>]

제26조의3(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부담 범위 등) ①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1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방제조치의 대집행 지원을 마쳤을 때에는 별표 10의2의 비용부담 범위 내에서 그 지원에 든 비용을 산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용산정 내역을 확인한 후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29.]

[제2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6조의3은 제26조의4로 이동 <2015. 6. 16.>]

제26조의4(방사능 조사 방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를 조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에 따라야 한다.

1. 조사할 하천·호소 등의 선정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할 것
 - 가.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
 - 나. 수질변화 경향 파악의 용이성
 - 다. 수질오염 가능성
 2.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 중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물질을 조사 항목으로 선정할 것
 3.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 조사는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할 것
- ② 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를 조사해야 하는 하천·호소 등의 선정, 조사 대상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 조사 주기 및 그 밖에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 조사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 12. 31.]

[제26조의3에서 이동 <2015. 6. 16.>]

제27조(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지역 및 도로·구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 1. 29.>

1. 상수원 호소
 2. 영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 상수원 취수 시설이 있는 지역
-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통행할 수 없는 도로·구간(이하 “통행제한 도로·구간”이라 한다)은 별표 11과 같다.
- ③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수송하는 경우라도 통행제한 도로·구간을 통행할 수 있다.<개정 2015. 6. 16.>
1. 군용자동차
 2. 통행제한 도로·구간의 인접지역 주민이 그 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한 농약을 운반하는 자동차
 3. 통행제한 도로·구간의 진입 지점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발급받은 별지 제9호서식의 통행증을 그 앞쪽 유리에 붙인 자동차
 4. 제3항제3호에 따른 통행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통행증발급신청서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의2(관계 전문기관) 법 제19조의2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 1. 17.>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환경공단

3. 하천·호소 등의 물환경 보전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본조신설 2014. 1. 29.]

제28조(수변생태구역 매수신청) ① 영 제26조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7.>

1. 삭제 <2012. 1. 19.>
2. 삭제 <2012. 1. 19.>
3. 입목등록원부 또는 입목등기부(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오수·폐수발생량을 증명하는 서류
5. 대리인의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 1. 19., 2018. 1. 17., 2022. 3. 31.>

1.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4.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5. 지적도

제28조의2(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폐수배출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10년마다 기후변화에 대한 시설의 취약성 등의 조사(이하 "취약성등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9.>

② 취약성등 조사의 조사항목은 홍수(태풍 및 호우를 포함한다), 가뭄, 폭염, 폭설 및 해수면 상승 등의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한다.

1. 기후노출 정도: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과거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에 예측되는 기후 변화 정도
2. 기후변화 민감도: 기후 관련 자극에 의하여 해당 시설이 해롭거나 이로운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는 정도
3. 기후변화 적응능력: 해당 시설이 기후변화에 맞게 스스로 조절하거나 우려되는 피해를 감소시키는 등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능력

③ 환경부장관은 취약성등 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취약성등 조사와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취약성등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취약성등 조사의 조사항목·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 1. 29.]

제29조(뉘시금지·제한구역의 안내판 규격 및 내용)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뉘시금지구역 또는 뉘시제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별표 12와 같다.

제30조(낚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10. 5., 2014. 1. 29., 2020. 11. 27.>

1. 낚시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 가. 낚시바늘에 끼워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물고기를 유인하기 위하여 떡밥·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
 - 나. 어선을 이용한 낚시행위 등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행위(「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줄낚시는 제외한다)
 - 다. 1명당 4대 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
 - 라. 1개의 낚시대에 5개 이상의 낚시바늘을 떡밥과 묶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
 - 마. 쓰레기를 버리거나 취사행위를 하거나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대·소변을 보는 등 수질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 바. 고기를 잡기 위하여 폭발물·배터리·어망 등을 이용하는 행위(「내수면어업법」 제6조·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금지행위
3.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 밖에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제30조의2(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21조의 2제1항에 따라 해당 하천·호소 등에서 제한되는 행위 및 제한 기간에 대하여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관할 구역의 읍·면·동 게시판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시·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 19.]

[종전 제30조의2는 제30조의3으로 이동 <2017. 1. 19.>]

제30조의3(완충저류시설의 설치대상) 법 제21조의4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단지”란 다음 각 호의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1. 면적이 15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2.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1일 200톤 이상 배출하는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3. 폐수배출량이 1일 5천톤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치한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 가. 영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지역
 - 나.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탐진강 본류(本流)의 경계(「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의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
 - 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탐진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支流)(「하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에 한정한다)의 경계(「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의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
4.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제조·보관·저장·사용량이 1천톤 이상이거나 면적 1제곱미터당 2킬로그램 이상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본조신설 2014. 12. 31.]

[제30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0조의3은 제30조의4로 이동 <2017. 1. 19.>]

제30조의4(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계획 등) ① 법 제21조의4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충저류시설의 추진일정 및 설치장소
2.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 방법 및 저류수의 연계처리 방안
3.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사용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량
4.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수·폐수의 배출량
5.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제조·보관·저장·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양
6.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비용의 부담(추정 소요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재원조달과 비용분담 방안, 운영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7. 사고유출수 및 초기우수 처리기능 등을 고려한 완충저류시설의 저류용량과 이에 대한 산정근거 자료
8. 수질오염사고 발생 가능성, 부지 및 입지여건, 기술적 조건, 경제성 등 평가자료
9.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 유수지, 비점오염저감시설 등의 활용방안

② 법 제21조의4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완충저류시설의 추진일정 및 설치장소
2. 완충저류시설의 시설용량 또는 설치비용의 100분의 25 이상의 증가
3.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 방법 및 저류수의 연계처리 방안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계획에 대하여 협의하는 경우에는 미리 한국환경공단에게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2. 31.]

[제30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0조의4는 제30조의5로 이동 <2017. 1. 19.>]

제30조의5(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법 제21조의4제4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은 별표 12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4. 12. 31.]

[제30조의4에서 이동 <2017. 1. 19.>]

제2절 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보전 <개정 2018. 1. 17.>

제31조(수계영향권 구분기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 1. 29.>

1. 대권역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을 기준으로 수계영향권별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구분한다.
2. 중권역은 규모가 큰 자연하천이 공공수역으로 합류하는 지점의 상류 집수구역을 기준으로 환경자료의 수집 및 관리, 유역의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 이수(利水) 및 치수의 측면을 고려하여 구분한다.

3. 소권역은 개별 하천의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류 집수구역을 기준으로 환경자료의 수집 및 수질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리·동 등 행정구역의 경계에 따라 구분한다.

제31조의2(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방법 등) ①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의 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이하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1. 12. 10.>

1. 댐, 보(淤), 저수지 등이 공공수역의 상류와 하류 간 수생태계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
2. 하도(河道), 하안(河岸), 홍수터(홍수 때 저수로를 넘쳐 흐르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제방 등이 공공수역과 수변지역 간 수생태계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

②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방법은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자료나 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 17.]

제31조의3(수생태계 연속성 단절·훼손의 기준) ① 법 제2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수생태계 연속성의 단절 또는 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
 - 가. 댐, 보, 저수지 등의 인공 구조물로 인하여 물질의 순환 또는 생물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 나. 하도, 하안, 홍수터 및 제방과 그 주변에서 물질의 순환 또는 생물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2. 수생태계 연속성 훼손
 - 가. 댐, 보 및 저수지 등의 인공 구조물로 인하여 물질의 순환 또는 생물의 이동이 제한되는 경우
 - 나. 하도, 하안, 홍수터 및 제방과 그 주변에서 물질의 순환 또는 생물의 이동이 제한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훼손의 세부적인 기준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 17.]

제31조의4(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단절 또는 훼손된 수생태계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정 보호종 또는 회유성(回遊性) 어종의 존재여부
2. 하천 상·하류의 수생태계 건강성
3. 하천의 수질 및 건천화(乾川化) 여부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련 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해당 조치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댐, 보 및 저수지의 개선 또는 철거

2. 어도(魚道)의 설치 또는 개선
3. 하도의 복원, 홍수터의 복원·관리, 제방 개선, 저류지 설치
4. 그 밖에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본조신설 2018. 1. 17.]

제32조(오염원의 조사) ① 법 제23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매년 관할구역의 오염원 종류, 수질 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7.>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사결과를 검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개정 2020. 11. 2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오염원의 조사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신설 2020. 11. 27.>

[제목개정 2020. 11. 27.]

제32조의2(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법 제23조의2제2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직전에 수립한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2. 물환경 관리 관련 경제·사회·기술 변화 및 전망
3. 국가 물환경 관리 연구 및 기술개발계획
4. 물환경 관리·보전을 위한 투자계획

[본조신설 2018. 1. 17.]

제32조의3(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포함 사항) 법 제24조제2항제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직전에 수립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2. 중점관리가 필요한 관할 중권역 현황

[본조신설 2018. 1. 17.]

제32조의4(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관할 중권역이 물환경 목표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그 밖에 물환경 및 물이용의 목적이 변화하여 중권역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8. 1. 17.]

제3절 호소의 물환경 보전 <개정 2018. 1. 17.>

제33조(호소 안의 쓰레기 운반·처리에 관한 조정절차) ① 수면관리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1조제3항 전단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호소 안의 쓰레기 운반·처리의 주체 및 그 소요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하고, 관계 수면관리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조정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해제)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대상저수지의 위치, 시설관리자, 저수용량, 오염도
 2.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의 목적 및 필요성
 3. 그 밖에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② 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저수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법 제3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오염 정도가 영 제30조의2에 따른 기준 이하로 2년 이상 계속하여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8. 2.]

제33조의3(수질 오염 방지 등에 관한 대책의 수립 등) ①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공동으로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중점관리저수지의 설치목적, 이용현황 및 오염현황
 2. 중점관리저수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거주인구 등 일반현황
 3.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관리목표
 4.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오염 예방 및 수질 개선방안
 5. 그 밖에 중점관리저수지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대책을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관계 전문기관 등의 검토를 거쳐 3개월 이내에 대책의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질 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에 관한 대책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저수지에 대한 수질 오염 방지활동 실적과 수질 개선계획의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8. 2.]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제34조(배출허용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35조(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 법 제32조제8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이란 영 제3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1. 29., 2021. 12. 10.>

[제목개정 2021. 12. 10.]

제35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11. 24.]

제36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의 서식) 영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며, 영 제31조제6항 본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37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시의 제출서류 등) ①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2. 10.>

1. 영 제31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2. 영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 설치계획서 및 그 도면
 3. 영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 및 그 도면
- ② 법 제33조제2항 본문 및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1. 12. 10., 2024. 11. 7.>

제38조(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 19., 2014. 1. 29., 2023. 4. 4.>

1.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폐수배출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영 별표 13의 사업장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3. 폐수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및 이 조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폐수배출시설에 설치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5.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폐수배출시설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6.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7.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② 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1. 19., 2014. 1. 29., 2023. 4. 4.>
 1.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2.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허가관청, 신고관청 및 폐수배출시설이 같고,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폐수배출시설이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4. 영 제3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수를 위탁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 4의2.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
5. 제1항 각 호 및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적힌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영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종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폐수배출량을 변경하는 경우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폐수배출시설에서 사용하는 원료나 첨가물 등의 변경 없이 다음 각 목의 측정 또는 검사 결과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법 제4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
 - 나. 법 제68조에 따른 검사(해당 검사의 시료채취일 이전 6개월 이내에 법 제4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을 실시한 경우로서, 그 결과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 4. 4.>
 1.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해야 한다.<신설 2023. 4. 4.>
 1. 제1항 각 호에 따른 변경신고: 변경 전
 2. 제2항제1호에 따른 변경신고: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
 3.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에 따른 변경신고: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4. 제2항제6호에 따른 변경신고: 법 제4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확인한 날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⑤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의 뒤 쪽에 변경신고사항을 적는다.<개정 2023. 4. 4.>

제38조의2(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의 수리여부 통지기간) 법 제33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의 경우 10일,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의 경우 5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 10. 17.]

제39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법 제33조제9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4. 1. 29., 2019. 10.

17.>

1. 구리 및 그 화합물
2. 디클로로메탄
3. 1, 1-디클로로에틸렌

제40조(관계전문기관) 법 제3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이란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2. 1. 19., 2014. 1. 29.>

제41조(위탁처리대상 폐수) 영 제33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란 다음 각 호의 폐수를 말한다. <개정 2012. 1. 19., 2019. 10. 17., 2021. 12. 10., 2024. 11. 7.>

1. 1일 50세제곱미터 미만(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2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 다만,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서 고정된 관망을 이용하여 이송 처리하는 경우에는 폐수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위탁처리할 수 있다.
2. 사업장에 있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다른 폐수와 그 성질·상태가 달라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될 경우 적절한 처리가 어려운 폐수로서 1일 50세제곱미터 미만(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2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
3. 삭제 <2021. 12. 10.>
4.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나 보수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수로서 시·도지사 및 사전 협의된 기간에만 배출되는 폐수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위탁처리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폐수

제42조(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을 이용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영 제33조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1. 19., 2020. 11. 27.>

1. 폐수를 제조공정에서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로서 폐수 등의 수질오염물질을 차단된 공정 밖으로 배출하지 아니하고도 적절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시설이나 공정의 특성에 따라 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한 폐수가 부득이하게 공정 밖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이하 “폐수처리업자등”이라 한다)에 위탁처리해야 한다.
2. 삭제 <2021. 12. 10.>
3.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의 성상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어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
4. 폐수의 성상 및 폐수에 함유된 물질의 특성상 폐수를 제품 또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다른 폐수의 처리 또는 연구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43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의 제출서류)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 1. 19., 2019. 10. 17., 2021. 12. 10.>

1. 영 제3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 가. 해당 폐수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의 특성과 사용되는 원료·부원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 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그 밖의 시험분석자료
2. 영 제33조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 가. 위탁처리할 폐수의 종류·양 및 수질오염물질별 농도에 대한 예측서
 - 나. 위탁처리할 폐수의 성상별 저장시설의 설치계획 및 그 도면
 - 다. 폐수처리업자등과 체결한 위탁처리계약서
3. 영 제33조제3호 및 제42조에 해당되는 경우
 - 가. 제4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폐수배출시설에 사용되는 물과 액체물질의 양, 그 재이용량에 관한 서류 및 재이용 공정도. 다만, 폐수를 재이용한 후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주기별 농도·양 및 처리방법에 관한 서류와 폐수처리업자등과 체결한 위탁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한다.
 - 나. 삭제 <2021. 12. 10.>
 - 다. 제4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와 체결한 위탁처리계약서
 - 라. 제4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품, 제품의 원료, 다른 폐수의 처리 또는 연구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용도·사용처 및 해당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농도·양 등에 관한 서류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경우 : 그 밖에 처리방법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제44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제45조(공동방지시설의 설치·변경 등) ① 사업자 또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이하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라 한다)는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이하 "공동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사업자에게는 제2호와 제3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7., 2021. 12. 10.>

1.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한다)
2. 사업장별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수질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예측서
3. 사업장별 원료사용량·제품생산량에 관한 서류,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4. 사업장에서 공동방지시설에 이르는 배수관 설치도면 및 명세서
5.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의 사용량과 폐수배출량을 각각 확인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 등 측정기기의 설치계획 및 그 부착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영 제35조에 따른 측정기기부착 대상사업장만 제출한다)
6. 사업장별 폐수배출량 및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의 배출부과금·과태료·과징금 및 벌금 등에 대한 분담명세를 포함한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② 공동방지지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공동방지지설의 대표자에게 공동방지지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행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동방지지설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배출부과금의 납부는 사업자별로 부담비율을 미리 정하여 분담한다.

③ 사업자 또는 공동방지지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17.>

1. 공동방지지설의 폐수처리능력
2. 공동방지지설의 수질오염물질처리방법
3. 공동방지지설로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 전체의 폐수배출량 또는 그 사업장의 수
4. 공동방지지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제46조(가동시작의 신고) 사업자가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가동시작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가동시작신고서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된 가동시작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가동시작일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3조제2호 또는 제42조제2호·제3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사업자는 가동시작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9., 2018. 1. 17.>

[제목개정 2014. 1. 29.]

제47조(시운전 기간 등) ① 법 제37조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4. 1. 29.>

1.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 가동시작일부터 50일. 다만, 가동시작일이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동시작일부터 70일로 한다.
2. 폐수처리방법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 가동시작일부터 30일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시작신고(가동시작일의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지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하도록 하여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3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오염도 검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2. 1. 19., 2014. 1. 29.>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2.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 및 그 소속 사업소
5.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수질 분야의 검사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질검사기관

③ 제2항에 따른 오염도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그 검사 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48조(수질오염물질 희석처리의 인정 등) ① 시·도지사가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질오염방지공법상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 폐수의 염분이나 유기물의 농도가 높아 원래의 상태로는 생물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2. 폭발의 위험 등이 있어 원래의 상태로는 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희석처리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가 영 제31조제5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리하려는 폐수의 농도 및 특성
 2. 희석처리의 불가피성
 3. 희석배율 및 희석량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검토한 결과 희석처리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뒤 쪽에 희석대상 폐수의 폐수배출시설, 발생량, 희석배율 및 희석량 등을 적어야 한다.

제49조(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지설의 운영기록 보존)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지설을 운영하는 자(공동방지지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지설의 가동시간, 폐수배출량, 약품투입량, 시설관리 및 운영자,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운영일지(이하 "운영일지"라 한다)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록일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운영일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운영일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호의 서식에 따른다.<개정 2020. 11. 27.>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자 : 별지 제19호서식
 2. 영 제3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폐수를 처리하는 사업자 : 별지 제20호서식
 3.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 : 별지 제21호서식
- ③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지설을 운영하는 자는 운영일지를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개정 2024. 11. 7.>

제50조(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9. 5., 2015. 6. 16., 2017. 1. 19., 2021. 12. 10.>

1. 측정기기의 측정·분석·평가 등의 방법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부합되도록 유지할 것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포함한다)를 부착하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을 것
3. 측정기기에 의하여 측정된 자동측정자료를 오염도검사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상시 전송할 것
4. 측정기기의 도입 및 교체 시마다 측정기기의 현황을 영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할 것
5. 측정기기의 점검 및 교정 시마다 점검·관리사항을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작성하여 영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할 것

제51조(개선명령 등) ①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은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에 위반의 내용, 조치기간, 조치사항, 조치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② 시·도지사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정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 및 개선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그 초과횟수를 포함하여 2년 이내에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 10. 28.>

④ 영 제40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제47조제2항 각 호의 검사기관을 말한다.

제52조(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등의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① 영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사업자등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개선계획서에 세부 개선명세서 1부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9., 2018. 1. 17.>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으로 한다.<개정 2021. 12. 10.>

1. 영 제40조제1항제1호의 경우 : 응급조치를 한 때부터 24시간 이내
2. 영 제40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 폐수배출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또는 측정기기(이하 "폐수배출시설등"이라 한다)의 개선·변경 또는 보수작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이전
3. 영 제40조제1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경우 : 폐수배출시설등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때부터 48시간(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한다) 이내

③ 사업자등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한 때부터 8시간 이내에,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등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전자문서·팩스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미리 사업장등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등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2. 1. 19., 2019. 12. 20.>

④ 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폐수배출시설등의 개선을 완료하거나 가동을 개시한 경우에는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의 개선완료보고서를 지체 없이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19.>

[제목개정 2021. 12. 10.]

제52조의2(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등의 개선사유서의 제출 등) ① 영 제40조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별표 14의2와 같다.

② 영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선사유서를 제출하려는 사업자등은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 개선사유서에 별표 14의2에 따른 경미한 개선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7.>

③ 한국환경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개선사유서 검토결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 자료를 보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3일내에 그 결과를 당사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9.]

제52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신청) ① 법 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사업계획서 1부
2. 영 별표 8의2의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과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4. 11. 7.>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등록을 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라 한다)는 법 제38조의6제1항 후단에 따라 영 제38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사무실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38조의6제1항 후단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를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뒤쪽에 변경 내용을 적은 후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 19.]

제52조의4(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8조의8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측정기기의 가동 상태를 상시 점검할 것
2.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실적보고서에 측정기기 관리대행 계약서 등 대행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고, 제출한 서류의 사본을 제출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할 것
3. 등록된 기술인력이 법 제38조의8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게 할 것
4.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등 측정기기 관리업무의 대행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측정기기 관리업무의 대행을 맡긴 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본조신설 2017. 1. 19.]

제52조의5(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8조의9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4의3과 같다.

②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말소 신청서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38조의9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
2. 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
3. 등록취소·말소 연월일 및 그 사유

[본조신설 2017. 1. 19.]

제52조의6(관리대행능력의 평가방법 등) 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법 제38조의10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7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측정기기 관리대행 실적에 관한 서류 1부
2.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기술인력의 교육이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관련 행정처분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확정된 경우에는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⑤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를 하거나 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대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 1. 19.]

제53조(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영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의 폐수를 유입하여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1. 29.>

제54조(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등) ① 영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확정배출량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1부씩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은 시·도지사등이 전산으로 확정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9., 2017. 1. 19., 2018. 1. 17.>

1. 배출구별 유기물질과 부유물질의 측정기록 사본
 2. 조업일지 등 조업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3. 확정배출량이 영 제50조제1호에 따른 검사배출량보다 100분의 20 이상 적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업장별 오염물질 배출명세(공동방지사설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확정배출량명세서는 배출구별로 작성한다.

[제목개정 2017. 1. 19.]

제55조(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확인을 위한 오염도검사 등) ① 시·도지사등은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분기별로 1회 이상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거나 제4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개월마다 1회 이상 오염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해당 부과기간 직전의 부과기간에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영 제50조에 따라 해당 부과기간 직전 부과기간의 기준 이내 배출량이 조정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의뢰한 오염도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등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자등에게 검사결과 중 배출농도와 일일유량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56조(배출부과금의 부과시의 고려사항) 법 제41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수질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1. 29., 2017. 1. 19.>

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 여부에 관한 사항
2. 배출수역의 환경기준 및 오염도에 관한 사항

제57조(기본부과금의 감면절차) ① 영 제5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의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수의 발생·처리·재이용의 공정도 및 재이용되는 물의 양, 폐수의 재이용률 등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재이용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받은 시·도지사등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기본부과금의 감면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배출부과금납부통지서 등) ① 영 제53조에 따른 부과금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별지 제25호서식의 배출부과금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54조제6항에 따른 조정부과 또는 환급 통지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에 영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7.>

제59조(개선완료일) ① 영 제54조제2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선완료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영 제40조제1항제1호의 경우 : 제52조제4항에 따른 자체개선완료보고서에 명시된 가동중 지일 또는 전량위탁처리일(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개선내용 등을 확인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영 제40조제1항제2호의 경우 : 제52조제4항에 따라 자체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날(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개선내용 등을 확인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② 영 제40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위탁처리하였으나 제41조 각 호의 폐수 외의 폐수가 일부 배출되고 있는 경우에는 개선완료일은 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제60조(배출부과금의 환급, 징수유예·분할납부신청 등) ① 영 제56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7.>

1. 영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1부
- ② 과오납된 배출부과금의 환급에 관해서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 절차를 준용한다.<신설 2012. 7. 5.>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배출부과금의 징수·환급,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신설 2012. 7. 5.>
- [제목개정 2012. 7. 5.]

제61조(과징금의 납부통지) 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1. 29.]

제62조(개선명령 등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보고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 ② 법 제4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제47조제2항 각 호의 검사기관을 말한다.<개정 2014. 1. 29.>

제63조(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① 법 제46조의2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영 별표 13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를 말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1. 12. 10.>
 1. 조사대상 및 대상물질에 관한 사항
 2. 조사시기·절차·방법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조사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조사결과 처리 및 공개에 관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계획을 게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4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를 해야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 및 별표 14의4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량조사 방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법 제46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망(이하 "전산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 12. 10.>
[본조신설 2018. 1. 17.]

제63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63조제4항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그 조사 결과의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 검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1. 17.]

제63조의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공개계획을 제63조제4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제출한 자에게 서면 또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공개계획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의2서식에 따른 소명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소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 여부 및 공개 범위를 결정하여 별지 제30호의3서식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서를 지체 없이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개계획을 통보한 날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전산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 17.]

제63조의4(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전산망의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전산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 및 법 제46조의3제2항에 따른 정보 및 통계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은 정보 및 통계가 전산망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집·분석·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보유한 정보 및 통계를 공유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 17.]

제64조(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이 관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4. 운영일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5. 수질오염물질의 측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정 2017. 1. 19.>

제64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 절차 등) ① 영 제65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이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라 한다) 납부 통지 내용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이의신청서에 영 제64조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는 별지 제30호의5서식에 따른다.
- ③ 영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의6서식의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서에 영 제65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④ 영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는 별지 제30호의7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 10. 17.]

제65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① 법 제48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31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 원본 1부 및 사본 4부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때 미리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과 검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 ⑤ 영 제6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 근거는 설치비와 관리비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 17.]

제66조 삭제 <2017. 1. 19.>

제67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고시) 환경부장관이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9.>

1. 영 제6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영 제66조제2항 각 호의 사항
3.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열람 장소 및 열람 기간
4. 그 밖에 이해관계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제목개정 2017. 1. 19.]

제68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열람)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사본을 30일 이상 갖추어 두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9.>

②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7. 1. 19., 2018. 1. 17.>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 1. 19.]

제69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내용의 반영) ① 시행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내용을 실시설계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9.>

②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받은 환경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1. 19.>

④ 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목개정 2017. 1. 19.]

제70조(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시행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용부담계획서 2부
2. 원인자별 비용부담 세부 내용에 관한 서류 1부
3. 원인자 등 이해관계인과의 협의결과에 관한 서류 1부

[전문개정 2018. 1. 17.]

제70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의 예외) ①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강우·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강우, 재해 또는 사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에 유입하는 경우
2.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증설, 개축,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관할 유역환

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3.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등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상 부득이하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로서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 요청서를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

2. 시설의 증설, 개축, 보수 등을 위한 공사 계획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 요청서를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처리공법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기간 및 기준을 초과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의 항목

2. 처리공법 개선 계획 및 개선 완료 예정일까지 매 분기별 추진 계획

3. 개선 계획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자원 조달계획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협의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⑤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협의를 완료한 때에는 매 분기별로 제3항제2호에 따른 추진 계획을 점검해야 한다. 이 경우 점검 결과 매 분기별 추진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협의를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10. 17.]

제71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기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17. 1. 19.>

[제목개정 2017. 1. 19.]

제71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5천만원의 범위에서 우수한 시행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폐수 유입률 및 폐수처리의 효율 제고 등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실적

2. 법 제4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원인자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구축 등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실적

3.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횟수 및 안전사고의 발생 횟수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완료한 후 60일 이내에 포상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 금액, 지급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 1. 19.]

제71조의3(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① 시행자가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법 제 5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이하 이 조에서 "기술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의 특성 조사
2. 공정별 처리효율 분석
3. 시설 및 운영 현황 점검과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시설의 유지 및 관리 방안

② 시행자는 기술진단을 실시한 결과 관리상태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술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기술진단 결과를 첨부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50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기술진단을 대행하는 자가 기술진단을 대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인건비, 여비 및 시험·분석비 등으로 하되, 기술진단 대상의 범위·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 1. 19.]

제72조(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등)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구조기준 등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8. 1. 17.>

[제목개정 2018. 1. 17.]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제73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절차) ① 법 제5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 2012. 7. 20., 2017. 1. 19.>

1. 법 제53조제1항제1호 또는 영 제72조제5항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자 :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

2. 법 제53조제1항제2호 또는 영 제72조제5항제2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자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

②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 사업 또는 시설이 둘 이상의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적 또는 길이 등이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0. 4. 2., 2014. 12. 31., 2019. 10. 17.>

1. 법 제5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주요 비점오염원 및 비점오염물질에 관한 자료

2. 개발사업등의 평면도 및 비점오염물질의 발생·유출 흐름도
3. 개발사업등으로 인하여 불투수면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를 최소화하여 자연 상태의 물 순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법(이하 "저영향개발기법"이라 한다) 등을 고려한 비점오염저감계획서
4.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운영·관리계획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법 제53조제5항 단서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③ 법 제53조제5항제1호 및 영 제74조에 해당하여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인정받으려는 자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에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19. 12. 31.>
 1. 사업장 강우유출수의 수질분석자료(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전인 사업장은 강우유출수 수질분석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사업장 외부의 오염물질 유입으로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증가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장 입지현황 및 도면
 3.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방지할 수 있는 차단시설계획
 - 가. 자재관리 및 공정과정이 빗물에 노출되는 경우
 - 나. 시설이 고장나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빗물에 노출되는 경우
 4. 도로, 주차장 등 빗물에 노출된 사업장 내 부지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사업장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히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비점오염원 관리계획
 - ④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영 제74조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신설 2019. 12. 31.>
 -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별지 제34호서식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31.>
 - ⑥ 사업자는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대상 사업 또는 시설과 관련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이 항에서 "변경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등을 받은 날(변경승인등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비점오염원 설치변경신고서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변경사항이 영 제7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0. 4. 2., 2015. 6. 16., 2019. 12. 31., 2020. 11. 27.>
 - ⑦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의 뒤쪽에 그 변경내용을 적은 후 설치신고증명서를 비점오염원 변경신고자에게 주어야 한다.<신설 2015. 6. 16., 2019. 12. 31.>

제74조(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2. 31.>

1. 비점오염원 관련 현황
2. 저영향개발기법(제7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된 저영향개발기법을 말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

- 다) 등을 포함한 비점오염원 저감방안
- 3. 저영향개발기법 등을 적용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계획
- 4.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

② 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5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시점 등) ① 법 제5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점을 말한다. <개정 2010. 4. 2., 2014. 1. 29., 2015. 6. 16., 2019. 10. 17.>

1.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 가. 공사 중에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공사개시 전
 - 나. 공사완료 후에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공사 준공시. 다만, 다른 공사가 완료된 사업부지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2.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법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 전.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이 설립된 부지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3.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 및 시설
 - 가.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사업: 제1호에 따른 시점
 - 나.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시설: 제2호에 따른 시점
- ② 법 제53조제5항제3호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자는 해당 부지에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영비용, 과태료 및 벌금 등에 대한 부담명세 등에 관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 규약을 마련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29., 2019. 10. 17.>

제76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기준) ①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19. 10. 17.>

② 법 제53조제6항제2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운영기준은 별표 18과 같다.<개정 2019. 10. 17.>

③ 법 제53조제6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1. 29., 2019. 10. 17.>

1.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자를 정하여 강우(降雨) 전후에 시설물을 점검하도록 할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결과를 별지 제36호서식의 관리·운영대장에 기록하여 2년간 비치할 것

제77조(이행명령 또는 시설설치·개선명령의 내용) 법 제53조제7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명령은 구체적인 저감계획의 이행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개선명령은 설치·개선의 대상시설 및 관리·운영기준과 설치·개선 시의 고려사항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7.>

제78조(비점오염 관련 관계 전문기관) 법 제53조제8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 1. 19., 2014. 1. 29., 2019. 10. 17.>

1. 한국환경공단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제78조의2(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취수시설의 상류·하류 지역)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및 하류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3. 12. 31.]

제78조의3(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8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0. 2. 3.]

[종전 제78조의3은 제78조의6으로 이동 <2020. 2. 3.>]

제78조의4(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절차 등) ① 법 제5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다시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 2서식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저감 원리, 구조 및 제원(諸元) 등을 포함한 설명서와 그 도면
2. 비점오염저감시설에 사용된 재료 목록 및 각 재료의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3. 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내부·외부 기기 및 장치의 운전 조건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4.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유지관리 비용 및 재료의 교체주기를 포함해야 한다)

② 법 제53조의3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구조
2.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재료[여과재, 포장재, 채움재, 수처리제(水處理劑)에 한정한다]
3.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전 방법

③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성능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법 제53조의3제3항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의 세부 내용을 첨부한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검사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2. 3.]

[종전 제78조의4는 제78조의7로 이동 <2020. 2. 3.>]

제78조의5(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을 받은 자는 법 제53조의4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

78조의4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서를 지체 없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3.]

제78조의6(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 ④ 법 제53조의5제7항에 따른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투수면적률: 대상지역의 전체면적 대비 불투수면적 비율의 백분율
2. 물순환율: 1에서 직접유출률(대상지역의 전체 강우량 중 빗물이 토양으로 침투·저류되거나 증발산 되지 않고 지표면 위로 직접 흐르는 양의 비율을 말한다)을 뺀 값의 백분율

② 제1항에 따른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에 대한 세부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10. 17.]

[제78조의3에서 이동 <2020. 2. 3.>]

제78조의7(중장기 물순환 목표 관련 조사·연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중장기 물순환 목표 설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1. 물순환 목표 설정방법 등 목표 설정
2.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
3. 물순환 목표 달성도 평가
4. 물순환 목표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수계특성
5. 물순환 관리와 관련한 제도 및 기술적 사항
6. 물순환 목표 설정 및 관리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본조신설 2019. 10. 17.]

[제78조의4에서 이동 <2020. 2. 3.>]

제79조(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해제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54조제5항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의 해제 이후 관할 시·도지사가 추진하여야 하는 적절한 관리방안을 말한다. <개정 2014. 1. 29.>

제80조(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55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목표의 달성기간
2. 해당 관리지역 내의 비점오염물질이 유입되는 수계의 일반 현황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관계 기관·단체의 장 및 해당 관리지역 주민이 관리지역의 비점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추진하거나 협조하여야 하는 사항

제81조(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의 절차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관리대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지역 주민 및 관계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책시행계획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이하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관리대책시행계획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가 법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지역의 개발계획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제82조제4호의 연차별 투자계획 중 비점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그 밖에 비점오염저감대책 사업에 드는 비용이 100분의 15 이상 감소하는 경우
-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관리대책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2조(관리대책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56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1. 29.>

1. 해당 관리지역에서 비점오염물질이 유입되는 수계의 오염원 분포 현황 및 특성의 분석에 관한 사항
2. 관할 시·도지사, 관계 시·군·구청장 및 해당 관리지역의 관계 기관·단체가 각각 추진하여야 할 비점오염저감사업 또는 활동 등에 관한 사항
3. 해당 관리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자발적인 비점오염저감 활동에 관한 사항
4.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제83조(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내용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이행사항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관리지역의 전년도 개발 현황
 2. 관리지역의 전년도 비점오염물질의 발생 현황
 3. 비점오염저감사업 또는 활동의 전년도 추진 실적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이행사항 평가기준, 평가지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4조(관계기관의 검토 등)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전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된 조사·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9., 2017. 1. 19., 2018. 1. 17., 2019. 10. 17., 2021. 12. 10.>

1. 법 제53조의5제5항에 따른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이행사항에 대한 평가
 - 1의2. 법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
 - 1의3. 관리대책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2.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검토
3. 법 제5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4. 법 제69조에 따른 물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 중 비점오염저감사업에 드는 경비의 보조

제84조의2(전문연구기관) 법 제57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 11. 27.>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환경공단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비점오염원의 관리 및 저감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보급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본조신설 2014. 1. 29.]

제85조(휴경 등 권고대상 농경지의 해발고도 및 경사도) 법 제59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해발고도”란 해발 400미터를 말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사도”란 경사도 15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4. 1. 29.>

제5장 기타수질오염원의 관리 <개정 2015. 6. 16.>

제86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 신고 등) ①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려는 자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37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6.>

1. 기타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2. 원료·사료·약품·농약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 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3. 제87조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 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38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 신고 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6.>

③ 법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사항(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에 적힌 신고사항만 해당한다)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변경 전에 별지 제40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서에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까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6., 2017. 1. 19.>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2.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제출 관청과 기타수질오염원이 같고, 입지제한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의 뒤쪽에 변경 신고사항을 적은 후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5. 6. 16., 2017. 1. 19.>

[제목개정 2015. 6. 16.]

제87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의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 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하는 시설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5. 6. 16., 2019. 10. 17., 2021. 12. 10.>

[제목개정 2015. 6. 16.]

제88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에 대한 개선명령) ① 시·도지사는 법 제60조제7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7., 2021. 12. 10.>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는 시·도지사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16.>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에 명시된 개선기간이 끝나면 그 이행 여부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 6. 16.]

제89조(골프장의 맹독성·고독성 농약 사용여부의 확인) ① 시·도지사는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골프장의 맹독성·고독성 농약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기마다 골프장별로 농약사용량을 조사하고 농약잔류량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7. 1. 19.>

제89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등) ① 법 제6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 및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그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7.>

1.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2.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를 위한 시설의 조치계획서 1부
3. 수질의 검사주기가 포함된 수질 검사계획서 1부

②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3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9. 10. 17.>

1. 시설의 명칭 또는 대표자
2. 시설의 소재지
3. 시설의 유형 또는 종류
4. 연중 운영기간
5. 바닥면적 또는 용수의 종류
6. 저류조 용량 또는 청소 주기
7. 여과기 설치 여부 또는 소독방법
8.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폐쇄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4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19. 10. 17.>

1.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

2. 시설물 사후관리계획서(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해야 한다.<신설 2023. 4. 4.>

1. 제3항제1호 사항의 변경신고: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
2. 제3항제2호 사항의 변경신고: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3. 제3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의 변경신고: 변경 전

⑥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의 뒤쪽에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개정 2019. 10. 17., 2023. 4. 4.>

[본조신설 2017. 1. 19.]

제89조의3(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기준) 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은 별표 19의2와 같다. <개정 2019. 10. 17.>

[본조신설 2017. 1. 19.]

제6장 폐수처리업

제90조(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① 법 제62조제1항 전단에서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0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을 말한다.

②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폐수 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하였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0.>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 가. 처리대상 폐수의 종류 및 그 처리방법
 - 나. 처리시설의 설치명세
2.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3.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4. 폐수처리방법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폐수재이용업의 경우에는 폐수성상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5. 공업용수 및 폐수처리방법별로 유입조와 최종배출구 등에 부착하여야 할 적산유량계와 수질자동측정기기의 설치 부위를 표시한 도면(폐수재이용업의 경우에는 폐수성상별로 유입조와 최종배출구 등에 부착하여야 할 적산유량계의 설치 부위를 표시한 도면)
6. 폐수의 수거 및 운반방법을 적은 서류
7. 기술능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기술자격증(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사본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능력 보유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증과 사업자등록증명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 12. 10., 2024. 11. 7.>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폐수 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폐수 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 제64조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삭제 <2021. 12. 10.>

[전문개정 2020. 11. 27.]

제90조의2(폐수처리업의 변경허가·변경신고) ①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1. 12. 10.>

1.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 가. 폐수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의 변경
 - 나. 별표 20에 따른 허가요건 중 시설 및 장비의 변경
2.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 가. 대표자의 변경
 - 나. 사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의 변경
 - 다.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 라. 별표 20에 따른 허가요건 중 기술능력의 변경
 - 마. 별표 20 비고 제3호에 따라 측정대행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실험기기·기구의 임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바. 마목에 따른 계약의 내용(계약기간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② 폐수처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43호서식의 폐수 수탁처리업·재이용업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허가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2. 10.>

1. 제1항제1호의 경우 : 변경 전
 2.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3. 제1항제2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경우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③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능력 보유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

증과 사업자등록증명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4. 11. 7.>

[본조신설 2020. 11. 27.]

- 제91조(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62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4. 1. 29., 2019. 12. 31.>
- ② 법 제62조제3항제5호에 따른 폐수 간 반응여부 등의 확인방법은 별표 20의2와 같다.<신설 2020. 11. 27.>
- ③ 법 제62조제3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1에 따른 준수사항을 말한다.<개정 2020. 11. 27.>
- ④ 폐수처리업자가 수탁처리할 수 있는 폐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1. 19., 2014. 1. 29., 2020. 11. 27., 2021. 12. 10.>
1. 제41조 각 호에 해당하는 폐수
 2. 제42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폐수배출시설에서 부득이하게 배출하여야 하는 폐수
 3. 폐수배출시설 외의 보일러, 그 밖의 생산관련시설이나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위탁처리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폐수

- 제91조의2(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① 법 제62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이란 별표 20의3에 따른 검사기준을 말한다.
- ② 법 제62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검사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③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의 주기는 3년으로 하되, 최초의 정기검사는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받아야 한다.
- ④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는 날 15일 전까지 별지 제46호서식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11. 7.>
1. 폐수 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증 사본
 2. 폐수처리시설의 설계도면 및 처리용량계산서
 3. 직전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최초 정기검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4. 직전 정기검사 이후 폐수처리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 내용
 5. 폐수처리시설의 운전·유지관리계획서
 6. 폐수처리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 ⑤ 검사기관은 정기검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7호서식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결과서를 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내주고,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세부기준, 검사방법 등 폐수처리시설의 정기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1. 12. 10.>

[본조신설 2020. 11. 27.]

[제목개정 2021. 12. 10.]

제91조의3(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라 폐수처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개선,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개선명령의 경우: 1년

2. 사용중지명령의 경우: 6개월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신설 2021. 12. 10.>

가. 검사 결과가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

나. 조치명령의 내용

다. 이행기간

③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개선 등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조치 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0.>

④ 폐수처리업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명령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1. 12. 10.>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해야 한다.<신설 2021. 12. 10.>

[본조신설 2020. 11. 27.]

[제목개정 2021. 12. 10.]

제92조(과징금의 납부통지) 영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1. 29.]

제7장 보 칙

제92조의2(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방법은 별표 2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9. 10. 17.]

제93조(기술인력 등의 교육기간·대상자 등) ①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또는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이하 "기술인력등"이라 한다)을 고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9.>

1. 최초교육: 기술인력등이 최초로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

2. 보수교육: 제1호에 따른 최초 교육 후 3년마다 실시하는 교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인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인력등을 고용한 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관할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4. 11. 13.>

1.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2.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 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경우
3. 재해, 사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할 시·도지사 또는 관할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이 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에서 기술인력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1. 2. 9., 2017. 1. 19., 2020. 11. 27., 2024. 11. 13.>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또는 「수도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2.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3. 환경기술인: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제목개정 2017. 1. 19.]

제94조(교육과정의 종류 및 기간) ① 기술인력등이 법 제38조의8제2항·제67조제1항 및 제93조제1항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 1. 19.>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측정기기 관리대행 기술인력과정
 2. 환경기술인: 환경기술인과정
 3.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폐수처리기술요원과정
- ② 제1항의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 7. 5., 2017. 1. 19.>

제95조(교육계획) ① 제93조에 따른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제94조제1항 각 호의 교육과정별로 매년 11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의 조사결과 및 장기추계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과목·기간 및 인원
5. 교육대상자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 교재편찬계획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8.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6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 환경부장관은 제95조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94조제1항 각 호의 교육과정별로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교육과정개시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교육개시 전까지 해당 교육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97조(교육결과의 제출)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의8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실적을 다음 해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9.>

제98조(교육실시 현황 등의 보고·지도 등)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실시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기관의 교육 상황, 교육시설 및 그 밖에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99조(자료제출협조) 법 제38조의8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인력등을 고용하는 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9.>

- 1. 소속 기술인력등의 명단
- 2. 교육이수자 현황
-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100조(교육경비) 법 제38조의8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과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1. 19.>

제101조(보고 및 검사 등의 사유와 통합검사 등) ① 법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1. 19., 2014. 1. 29., 2015. 6. 16., 2017. 1. 19.>

- 1. 폐수배출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기타수질오염원 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한 가동 여부 또는 수질오염물질의 처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점검하는 경우
- 2.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로 수질오염사고 또는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 4. 법에 따른 허가·신고 또는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제출한 개선계획서 또는 개선완료보고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배출부과금의 부과 또는 오염원 및 수질오염물질배출량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수질오염방지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기타수질오염원 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수질오염방지시설 설계·시공의 적정성 또는 수탁폐수의 수탁량·처리량·재고량 등 수탁처리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의2. 측정기기의 운영상황 확인 및 운영관리기준의 준수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준수사항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환경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대한 계획 및 실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법 제68조제1항 각 호의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려는 때에는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4. 11. 7.>
- ③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 결과 등을 적은 서면을 사업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에 대한 출입이나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환경오염사고·광역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6. 30., 2014. 12. 24., 2017. 1. 19.>
1.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
2. 「소음·진동관리법」 제51조제1항
3.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
5. 「폐기물관리법」 제43조제1항
6.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제102조(보고 및 검사 등의 대상시설) 법 제68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53조에 해당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1. 29., 2017. 1. 19.>
 [제목개정 2017. 1. 19.]

제103조(오염도검사기관) 법 제68조제2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제4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1. 29.>

제104조(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법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의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19.>

1. 수소이온농도
2. 영 별표 7에 따른 수질자동측정기기(법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측정기기의 정상 운영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정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측정 가능한 수질오염물질

[제목개정 2017. 1. 19.]

제105조(행정처분 기준) ① 법 제71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② 시·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2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다.<개정 2023. 1. 5.>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로 인한 주변지역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
5.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6조(수수료) ① 법 제7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5., 2020. 2. 3., 2020. 11. 27., 2021. 12. 10.>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설치신고: 1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
 2.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5천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천원)
 - 2의2. 법 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1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
 - 2의3. 법 제38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변경등록: 5천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천원)
 3. 법 제6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 1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
 4. 법 제62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변경허가·변경신고: 5천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천원)
 5. 법 제73조제2호의2에 따른 성능검사 수수료: 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정한 금액
 6. 법 제73조제5호에 따른 정기검사: 폐수처리시설의 종류·규모별로 인건비·경비·기술료 및 출장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수수료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며, 수수료를 정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한국환경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개정 2020. 2. 3.>
- ③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과 산정내용을 한국환경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신설 2020. 2. 3.>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0. 2. 3., 2020. 11. 27., 2021. 12. 10.>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같은 항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은 제외한다)의 수수료: 시·도지사에게 수입증지로 납부
- 1의2. 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의 수수료: 환경부장관에게 수입인지로 납부
2. 제1항제5호에 따른 수수료: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현금으로 납부
3. 제1항제6호에 따른 수수료: 검사기관에 현금으로 납부

제107조(보고) ① 영 제83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등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은 별표 23과 같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별표 23 제1호·제2호·제4호·제6호 및 제9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1. 19.>
 ② 제1항의 보고에 관한 서식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0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 12. 16., 2015. 6. 16., 2019. 12. 31., 2021. 12. 10., 2023. 4. 17.>

1. 제1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대상·방법 등: 2014년 1월 1일
 2.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및 연장기간: 2014년 1월 1일
 3. 제50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2023년 1월 1일
 4. 삭제 <2021. 12. 10.>
 5. 삭제 <2019. 12. 31.>
 6. 제54조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7. 제73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변경신고 기한 및 설치신고 시 제출서류 등: 2014년 1월 1일
 8. 제8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 신고·변경신고 기한 및 설치·관리 신고 시 제출서류 등: 2014년 1월 1일
 9. 제87조 및 별표 19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가 하여야 할 조치: 2014년 1월 1일
 10. 삭제 <2019. 12. 31.>
 11. 제90조제1항·제2항·제6항 및 별표 20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등록기준,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및 변경등록 대상: 2014년 1월 1일
 12. 제93조제1항 및 제94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의 종류·시기 및 교육과정의 종류·기간: 2014년 1월 1일
 13. 제105조 및 별표 22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2023년 1월 1일
- ② 환경부장관은 제101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의 사유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3. 4. 17.>

[전문개정 2014. 4. 30.]

제8장 삭제 <2013. 9. 5.>

제108조 삭제 <2013. 9. 5.>

부칙 <제263호, 2007. 12.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0 및 별표 2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0 제2호다목1) 및 2), 별표 21 제13호 및 제1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에 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최초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이 확정된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질측정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을 판단하기 위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 당시의 수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별표 7 비고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로 수립하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과거 3년간 측정한 것”을 “영 제3조제7항에 따라 수질을 측정하기 시작한 날부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승인한 날 이전까지 측정한 것”으로 한다.

제4조 (폐수처리업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5 폐수수탁처리업란의 제2호다목(1) 단서에 따라 등록된 폐수처리업자는 별표 20 폐수수탁처리업란의 제2호라목(1) 및 (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기준에 적합한 폐수처리업자로 본다.

제5조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을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검사 또는 상시측정한”으로 하고, 제30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36조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③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을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검사 또는 상시측정한"으로 하고, 제32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가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4호에"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로 하고, 제36조 중 "수질환경보전법"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40조 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으로 하고, 제46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④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호에서"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에서"로 한다.

⑤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을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검사 또는 상시측정한"으로 하고, 제32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38조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⑥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호다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목 중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으로 한다.

⑦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1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으로 하며, 같은 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호에"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에"로 하고,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

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로 하고,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33조 및 제71조제2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9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⑩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수질환경보전법령”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령”으로 한다.

⑪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2호나)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별표 비고 제5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별표 10 제2호2)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1호가목3)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별표 11 제1호라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으로 하며, 별표 11 제2호나목2)가)의 비고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고, 별표 17 제1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3호,2008. 4.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호,2008. 10.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로서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3조(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에 설치된 시설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설치가 제한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35호,2009. 6. 30.>(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호,2009. 6. 30.>(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5조제2항제1호에 해당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366호,2010. 4.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시점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74호,2010. 6. 30.>(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4항제2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⑩ 부터 ㉑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80호,2010. 10.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제한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설치가 제한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수질오염물질 등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된 “클로로폼” 및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각각 이 규칙에 따른 “클로로포름” 및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로 본다.

제4조(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로서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부칙 <제397호,2011. 2.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3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환경기술인 등은 그 교육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9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428호,2011. 10. 28.>(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항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443호,2012. 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2 제2호나목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65호,2012. 7.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7호,2012. 7. 20.>(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제2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470호,2012. 8. 2.>

이 규칙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호,2012. 10. 5.>(뉘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나목 중 “「뉘시어선업법」”을 “「뉘시 관리 및 육성법」”으로 한다.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493호,2012. 12. 31.>(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5호,2013. 9.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4호·제5호, 별표 2, 별표 3, 별표 13 및 별표 23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1호 비고의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측정기기의 현황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는 제 50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라 측정기기 보유현황을 작성하여 3년 동안 보관하거나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제4조(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로서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33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제한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설치가 제한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533호,2013. 12. 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3호,2014. 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 및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후변화에 대한 시설의 취약성등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기후변화에 대한 시설의 취약성등 조사는 2015년에 실시한다.

제3조(폐수처리업 등록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90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폐수처리업의 저장시설 용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별표 20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4년 7월 31일까지 같은 표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가동개시"가 "가동시작"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2"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부칙 <제553호,2014. 4. 30.>(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3호,2014. 7. 17.>(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수관로

② 생략

부칙 <제577호,2014. 11.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1호,2014. 12. 16.>(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3호,2014. 12. 2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⑪부터⑳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586호,2014.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3조제2항제3호 및 제74조 제1항제2호·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2항제3호 및 제74조제1항제2호·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4조의 제목 "(완충저류시설 등의 설치·운영기준)"을 "(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 등의 설치·운영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완충저류시설"을 "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완충저류시설에 관한 개선명령 등)"을 "(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 등에 관한 개선명령)"으로 한다.

제49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완충저류시설"을 "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 등"으로 한다.

별표 7의 제목 중 "완충저류시설"을 "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600호,2015. 6.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시점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의 시설 설치 등 조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9 제6호가목 후단 및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6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629호,2015. 12. 22.>(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정비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2호,2016. 5.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과 그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배출시설 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고 설치를 준비 중인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별표 2, 별표 3, 별표 13 제2호나목6)·7) 및 별표 13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 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고 배출시설의 설치를 준비 중인 자로서 2019년 1월 1일 이후 별표 2, 별표 3, 별표 13 제2호나목6)·7) 및 별표 1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제한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2019년 1월 1일 이후 별표 3 및 별표 1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688호,2017. 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56호부터 제58호까지, 별표 3 제31호부터 제33호까지 및 별표 13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선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에 관한 적용례) ① 제7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폐수처리업 변경등록신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90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로서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자는 2020년 3월 31일까지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제한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2019년 1월 1일 이후 별표 3 제31호부터 제33호까지 및 별표 1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9. 10. 17.]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2 비고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③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호목 시설 규모의 기준란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6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④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3호라목2)나)(1)(다) 및 같은 2)거)(5)(다)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5의3 제2호나목2)마)(3)(다)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3) 단서, 제2호나목2)마) 단서, 같은 마) 후단, 제3호가목2) 단서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⑥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3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2호 및 제7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⑦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⑧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9조제1항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⑨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6항제1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⑩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5제8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⑪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별표 4 제3호나목4)가)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6 제3호라목1)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15 제3호나목1) 및 2)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부칙 <제705호,2017. 6. 26.>

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5호,2018. 1.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측정망 설치계획을 변경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22 제2호가목6)가)(1), 같은 6 나)(1), 같은 6 다)(1), 같은 6 바)(1), 같은 호 다목1)가)(1), 같은 목 2)가)(1) 및 같은 목 3)가)(1)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③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9조”로 한다.

제36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④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9조”로 한다.

제46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5조”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제6항”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5조제6항”으로 한다.

⑥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72)”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7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⑦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한다.

⑧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

⑨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제3조제1호다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로 한다.

별표 3 제7호가목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9조”로 한다.

⑩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호목의 시설 규모의 기준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⑪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9조"로 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⑫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8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의 제1호아목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2호타목1)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⑭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23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별표 3 제3호 비고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8 제3호다목2)가)(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한다.

⑮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제28조제3항제2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6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3. 「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2제1항 또는 제68조제1항

별표 5 제3호라목2)나)(1)(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2) 거)(5)(나)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5) (다)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다목2)나

)1)(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5의3 제2호나목2)마)(1) 및 (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마) (3)(나)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3)(다)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마) (4)의 (가)부터 (사)까지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4) (바)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2)다)(1)(나)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5의4 제1호가목1)다)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로 하고, 같은 호 나목3)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3)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별표 2 및 별표 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62조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2)마)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62조로 하며, 같은 마) 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2)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별표 2 및 별표 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62조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별표 11 제1호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2)가) ○매립시설 침출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화학적 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의 배출허용기준의 비교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를 「물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로 하며, 같은 가) ○매립시설침출수의 폐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의 비고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로 한다.

별표 13 제1호나목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별표 14 비고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⑩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으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제7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별표 1 제1호가목 비고 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3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며, 같은 비고 제5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로 하고, 같은 비고 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하며, 같은 표 제1호나목 Ⅱ지역의 범위란 및 같은 목 Ⅲ지역의 범위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2호 및 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를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작성방법란 제1호 및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구비서류란의 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47조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으로 한다.

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⑱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3)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한다.

⑲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⑳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단서”를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시험기기 및 장비란의 제1호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46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6조”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제7조의4제1항제5호다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에 따른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을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7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 48조”로 한다.

㉔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한다.

㉕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을 “물환경 목표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2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각각 “물환경”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水生態係)”를 “물환경”으로 한다.

㉖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5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을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3”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 시설 및 장비란의 2)나)(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5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2) 위반사항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

㉗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로 한다.

제11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기관

제14조제1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단서”를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부칙 <제829호,2019. 10.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19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0, 별표 13(제2호가목1) 비고 제2호는 제외한다

및 별표 20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수질오염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 60조제1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신고를 해야 한다.

제3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3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같은 목 1) 비고 제2호 및 같은 목 2) 비고 제2호는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4의3 및 별표 2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폐수처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폐수처리업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20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등록을 신청한 자의 등록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0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833호,2019. 12. 20.>(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9호,2019.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8호,2020. 2.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제78조의4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0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부칙 <제890호,2020. 1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부담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한 수질오염에 대하여 방제조치의 대집행 지원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비점오염원의 설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수처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6605호 물환경보전법 부칙 제4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턴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9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수 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증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제5조(폐수처리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를 완료하였거나 운영 중인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의 기한까지 제91조의 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기준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폐수 수탁처리업: 2022년 12월 31일
2.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수 재이용업: 2023년 12월 31일

부칙 <제921호,2021.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2호,2021. 9. 16.>(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4호,2021. 1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제63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수처리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의2제1항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한 측정대행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979호,2022. 3. 31.>(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0호,2023. 1. 5.>(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027호,2023. 4.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2 제2호가목 비고 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 이 규칙 시행 전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행위에 대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2 제2호가목 비고 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32호,2023. 4. 17.>(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8호,2024. 11.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0호,2024. 11. 13.>(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타수질오염원(제2조 관련)

시설구분	대상	규모
1. 수산물 양식시설	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제8항제2호에 따른 가두리양식업시설 나.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수조식해수양식업시설 다.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육상수조식내수양식업시설	면허대상 모두 수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수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홀 이상일 것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비점오염원으로 설치 신고대상인 골프장은 제외한다)
3. 운수장비 정비 또는 폐차장 시설	가. 동력으로 움직이는 모든 기계류·기구류·장비류의 정비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 나. 자동차 폐차장시설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검사장 면적을 포함한다)일 것 면적이 1천 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4. 농축수산물 단순가공 시설	가. 조류의 알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	물사용량이 1일 5세제곱미터 이상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이하 이 호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에 유입하는 경우에는 1일 20
법제처	73 터	국가법령정보센터

		세제곱미터 이상] 일 것
	나. 1차 농산물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	물사용량이 1일 5세제곱미터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는 경우에는 1일 20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 농산물의 보관·수송 등을 위하여 소금으로 절임만 하는 시설	용량이 10세제곱미터 이상(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는 경우에는 1일 20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라. 고정된 배수관을 통하여 바다로 직접 배출하는 시설(양식어민이 직접 양식한 굴의 껍질을 제거하고 물세척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수산물을 포획 또는 채취한 상태 그대로 물세척만 하거나 삶은 제품을 구입하여 물세척만 하는 시설	물사용량이 1일 5세제곱미터 이상(농축 수산물 단순가공시설이 바다에 붙어 있는 경우에는 물사용량이 1일 20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5. 사진 처리 또는 X-Ray 시설	가. 무인자동식 현상·인화·정착시설	1대 이상일 것
	나. 한국표준산업분류 733사진촬영 및 처리업의 사진처리시설(X-Ray시설을 포함한다) 중에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시설	1대 이상일 것
6.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이나 안경원	가.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금은을 세공하여 금은판매점에 제공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시설	폐수발생량이 1일 0.01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안경원에서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	1대 이상일 것
7. 복합물류터미널 시설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과 관련된 작업을 하는 시설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8. 거점소독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방역을 위하여 축산 관련	면적이 15제곱미터

시설	차량의 소독을 실시하는 시설	이상일 것
----	-----------------	-------

비고

1. 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는 시설 중 증발과 누수로 인하여 줄어드는 물을 보충하여 양식하는 양식장, 전복양식장은 제외한다.
2. 제8호의 거점소독시설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 따른 거점소독시설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방역기준에 따른 거점소독시설을 말한다.
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아목에 해당되어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 대상이 되는 사업은 기타수질오염원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수질오염물질(제3조 관련)

1. 구리와 그 화합물
2. 납과 그 화합물
3. 니켈과 그 화합물
4. 총 대장균군
5. 망간과 그 화합물
6. 바륨화합물
7. 부유물질
8. 삭제 <2019. 10. 17.>
9. 비소와 그 화합물
10. 산과 알칼리류
11. 색소
12. 세제류
13. 셀레늄과 그 화합물
14. 수은과 그 화합물
15. 시안화합물
16. 아연과 그 화합물
17. 염소화합물
18. 유기물질
19. 삭제 <2019. 10. 17.>
20. 유류(동·식물성을 포함한다)
21. 인화합물
22. 주석과 그 화합물
23. 질소화합물
24. 철과 그 화합물
25. 카드뮴과 그 화합물
26. 크롬과 그 화합물
27. 불소화합물
28. 페놀류
29. 페놀
30. 펜타클로로페놀
31. 황과 그 화합물
32. 유기인 화합물
33. 6가크롬 화합물
34. 테트라클로로에틸렌

35. 트리클로로에틸렌
36.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37. 벤젠
38. 사염화탄소
39. 디클로로메탄
40. 1, 1-디클로로에틸렌
41. 1, 2-디클로로에탄
42. 클로로포름
43. 생태독성물질(물벼룩에 대한 독성을 나타내는 물질만 해당한다)
44. 1,4-다이옥산
45.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46. 염화비닐
47. 아크릴로니트릴
48. 브로모포름
49. 퍼클로레이트
50. 아크릴아미드
51. 나프탈렌
52. 폼알데하이드
53. 에피클로로하이드린
54. 톨루엔
55. 자일렌
56. 스티렌
57.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58. 안티몬
59. 과불화옥탄산(PFOA)
60.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61.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

특정수질유해물질(제4조 관련)

1. 구리와 그 화합물
2. 납과 그 화합물
3. 비소와 그 화합물
4. 수은과 그 화합물
5. 시안화합물
6. 유기인 화합물
7. 6가크롬 화합물
8. 카드뮴과 그 화합물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 트리클로로에틸렌
11. 삭제 <2016. 5. 20.>
1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13. 셀레늄과 그 화합물
14. 벤젠
15. 사염화탄소
16. 디클로로메탄
17. 1, 1-디클로로에틸렌
18. 1, 2-디클로로에탄
19. 클로로포름
20. 1,4-다이옥산
21.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22. 염화비닐
23. 아크릴로니트릴
24. 브로모포름
25. 아크릴아미드
26. 나프탈렌
27. 폼알데하이드
28. 에피클로로하이드린
29. 페놀
30. 펜타클로로페놀
31. 스티렌
32.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33. 안티몬

폐수배출시설(제6조 관련)

1.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

가. 폐수배출시설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설로 한다.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폐수량이 0.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출판·인쇄시설,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X-Ray시설과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은 모두 폐수배출시설로 하고, 제2호의 2) 금속광업시설과 82) 제1호부터 제81호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터 이상(「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1일 최대 폐수량이 0.2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2)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제2호의 2) 금속광업시설과 82) 제1호부터 제81호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1세제곱미터 이상(「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1일 최대 폐수량이 2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가) 1일 최대 폐수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광유류(석유 등 광물성원료로부터 얻어진 기름)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 제9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

나) 1일 최대 폐수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그 시설에서 방류하는 하천의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말한다) 이내로 유지된다고 허가·신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다) 1일 최대 폐수량이 1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원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라 한다) 항목

의 수질오염물질만 배출되고, 그 수질오염물질의 농도가 항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허가·신고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나. 가목에서 "1일 최대 폐수량"은 연중 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모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위탁처리·재이용하거나 폐수배출공정 중의 방지시설에서 처리되는 폐수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두부 및 떡 제조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경우에는 두부 및 떡 제품을 식히거나 담근 폐수는 1일 최대 폐수량에서 제외한다.

2) 절삭유 등을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일체형 기계나 시설로서 폐수가 순환 중에 그 기계나 시설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하여 위탁처리 등을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일 배출공정만 있는 경우에는 순환량이 아닌 그 기계나 시설에 딸린 저장시설의 용량으로 산정한다.

다. 가목 1)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이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원료(용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부원료 또는 첨가물을 사용하는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원료로 사용되거나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용수에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용수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 중 수돗물의 수질기준 이하인 폐수배출시설은 가목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에서 제외한다.

2.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폐수배출시설	한국표준 산업분류	포함 또는 제외시설
1) 석탄 광업시설	051	○ 채탄능력 8천 톤/월 미만의 시설은 제외한다. ○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0809 기타 광업

2) 금속 광업시설(채광된 광물의 가공처리시설)	06	<p>지원서비스시설 중 유무연탄 채굴지원서비스시설을 포함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729 그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시설 중 토탄채굴시설을 포함한다. ○ 19102 연탄 및 기타 석탄가공품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0809 기타 광업 지원서비스시설 중 금속 광업지원서비스시설을 포함한다.
3) 비금속 광물 광업시설	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광업 및 채석업 시설과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0809 기타 광업지원서비스시설 중 비금속 광업 지원서비스시설을 포함한다. ○ 0729 토탄채굴시설은 1) 석탄 광업시설에 포함한다. ○ 연료용 광물 광업시설과 071 토사석 광업(채취·가공)시설로서 폐수를 해당 채취지점 또는 가공시설의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4) 도축, 육류·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101 1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1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에는 각종 육지동물을 도축 및 가공하여 신선·냉장·냉동한 고기를 생산하거나 육류를 건조·훈연·염장·염수장 및 기타 방법으로 가공 및 저장처리한 고기가공품, 소시지 및 유사제품, 식용 또는 비식용의 짐승고기 분말 등을 생산하는 시설로서 가축·가금·조류·고래 및 수렵물 등의 도축시설을 포함한다. ○ 102 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중 해상에서 작업하는 시설과 별표 1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5)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103	○ 단순 물세척만 하거나 수송·보관을 위 하여 소금절임만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동·식물성 유지제조 시설	104	
7)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 류 제조시설	105	○ 조류의 알 세척시설은 제외한다.
8) 곡물 가공품 제조시설	1061	
9) 전분 및 당류 제조시 설	1062	
10) 동물용 사료 및 조제 식품 제조시설	108	
11) 설탕 제조시설	1072	
12) 조미료 및 식품첨가 물 제조시설	1074	
13) 기타 식품 제조시설	1071 1073 1079	○ 두부 및 그 유사식품, 빵, 곡분과자, 국 수 및 그 유사식품, 코코아 및 설탕과자 제품, 커피·차류 및 조제 스프, 인삼제 품, 건강식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식료품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1073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 시설 중 자체 조리판매용시설은 제외한 다. ○ 1071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시설 중 100제곱미터 미만의 제과점·방앗간은 제외한다.
14) 알콜음료 제조시설	111	
15) 비알콜성 음료 및 얼 음 제조시설	112	
16) 담배 제조시설	12	
17) 방직 및 가공사 제조 시설	131 132	○ 1441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시설을 포 함한다.
	133	
18) 섬유염색 및 가공시 설	134	
19) 기타 섬유제품 제조	139	

시설		
20) 가죽·모피가공 및 제품 제조시설	142	
21)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시설	151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시설	152	
23) 펄프·종이 및 종이 제품 제조시설	16	
24)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 시설	17	
	18	○ 치과용 X-Ray, 수포촬영용 마이크로필름 처리시설 및 별표 1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581	
	592	
	733	
25) 코크스 및 연탄제조 시설	191	○ 19102 연탄 및 기타 석탄가공품 제조시설은 1) 석탄 광업시설에 포함한다.
26)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192	○ 석유저장, 석유증류(상압·감압), 석유전화(분해·개질), 석유정제, 윤활유 및 그리스제조,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석유정제 및 석유정제 부산물 재처리시설을 포함한다.
		○ 석유저장시설은 석유정제·저유소로 한정한다.
		○ 가스회수·염(鹽)류제거·황산화물 제거·납성분 제거·스트리핑(stripping: 휘발성분 제거)·스테빌라이즈(원유 등에 함유된 부탄보다 낮은 끓는점의 성분을 증류로 제거하여 증기압을 조절하기 위한 정류탑)·개질·접촉분해·수소첨가분해·이성화(異性化: 화합물을 형성하는 분자를 다른 물체로 변화시키는 화학반응)·알킬화·중합시설을 포함한다.
27)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제조시설	20111	○ 에틸렌 및 프로필렌계, 부틸렌계, 부타디엔계, 사이크로펜타디엔계, 이소프렌계, 방향족탄화수소계, 사이크로헥산계, 아세

28) 석탄화합물 제조시설	20119	<p>틸렌계,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시설을 포함한다.</p> <p>○ 20119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시설 중 석탄화합물 제조시설(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24112의 석탄화합물 제조시설)에 한정한다.</p>
29)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제조시설	20112	
30) 기타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20119	<p>○ 20119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시설 중 석탄화합물 제조시설(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24112의 석탄화합물 제조시설)은 28) 석탄화합물 제조시설에 포함한다.</p>
31)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시설	2012	<p>○ 황산, 질산, 염산, 소다회, 수산화나트륨 및 알칼리, 암모니아합성 및 유도제품, 무기안료, 금속의 산화물, 수산화물 및 염, 화학원소 단체물질, 인산, 비금속의 산화물, 황화물, 할로겐화합물,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시설을 포함한다.</p> <p>○ 우라늄, 토륨 등의 방사성 물질을 혼합·배합·농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p>
32) 산업용가스 제조시설	20121	<p>○ 352 연료용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시설 중 가스 제조시설을 포함한다.</p>
33) 염료, 조제 무기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20132	<p>○ 식물성 염료추출물 제조시설을 포함한다.</p>
34)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20311	
	20312	
	20313	
35) 합성고무 제조시설	20201	<p>○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설을 포함한다.</p>
36) 합성수지 및 기타 플	20202	<p>○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설을 포</p>

라스틱물질 제조시설	20203	함한다.
3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시설	21	○ 의료용 화합물 및 생약제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38) 살충제 및 기타 농약 제조시설	2032	
39)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시설	2041	
40) 계면활성제·치약·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시설	20421 20422	
41) 화장품 제조시설	20423	
42) 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제 제조시설	20424	○ 왁스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43)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시설	266 20491	○ 26293 전자카드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44) 가공염 및 정제염 제조시설	20492	
45)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	20499	○ 20499 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제조시설 중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24392의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에 한정한다.
46)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시설	20493	
4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시설	20494	
48) 바이오 연료 및 기타 분류되지 않은 화학제품 제조시설	20495	○ 20499 기타 분류되지 않은 화학제품 제조시설 중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24392의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은 45)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에 포함한다.
49) 화학섬유 제조시설	205	
5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22	

<p>틱제품 제조시설</p> <p>5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p> <p>52) 도자기 및 기타 요업 제품 제조시설</p> <p>53) 시멘트·석회·플라스틱 및 그 제품 제조시설</p> <p>54)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시설</p> <p>55) 1차 철강 제조시설</p> <p>56) 합금철 제조시설</p> <p>57)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p> <p>58) 동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p> <p>59) 알루미늄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p> <p>60)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p> <p>61)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시설</p> <p>62) 금속주조시설</p> <p>63)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표준산업분류 25부터 31까지의 제</p>	<p>231</p> <p>232</p> <p>233</p> <p>239</p> <p>241</p> <p>24113</p> <p>2421</p> <p>24221</p> <p>24222</p> <p>24229</p> <p>2429</p> <p>243</p> <p>25</p>	<p>○ 레미콘차량은 관련 시설로 포함한다.</p> <p>○ 수증기 양생공정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p> <p>○ 석제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비금속 광물 제조시설을 포함한다.</p> <p>○ 제철, 제강, 열간압연(熱間壓延: 금속재료를 재결정온도 이상에서 하는 압연), 냉간압연, 압출 및 인발제품(금속관 등의 끝부분을 끌어당겨 지름, 관벽 두께를 감소시킨 제품), 철강선, 강관, 철강압연, 주철강관, 연신(원료를 가늘게 늘이는 공정) 및 제관시설(관을 만드는 시설)을 포함한다.</p> <p>○ 구리·알루미늄·납·아연과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비철금속 제련 및 정련시설을 포함한다.</p> <p>○ 주된 공정의 일부로서 공통시설의 도금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p>
---	--	--

조시설)			
64) 절연선 및 케이블 제	283		
조시설			
65) 1차 전지 및 축전지	282		
제조시설			
66) 전구 및 조명장치 제	284		
조시설			
67) 반도체 및 전자부품	261	○ 26293 전자카드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제조시설	262		
68) 영상 및 음향기기 제	265		
조시설			
69) 가구 및 기타 제품	32	○ 가구, 악기, 운동 및 경기용구, 귀금속	
제조시설	33	(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금은 판매점	
		의 세공시설은 제외한다) · 장신구 및 관	
		련 제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장난	
		감, 장식품 및 일용품 제조시설을 포함	
		한다.	
70) 화력발전시설	35113	○ 10만 킬로와트/시간 미만의 시설은 제외	
		한다.	
71) 수도사업시설	360	○ 역세(逆洗)를 하지 아니하고 물리적으로	
		만 처리하는 수도사업시설은 제외한다.	
		○ 정수능력 1천 세제곱미터/일 미만의 시	
		설은 제외한다.	
72) 먹는샘물 제조시설	360	○ 세병(洗瓶) 및 세척시설이 없는 먹는샘	
		물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 취수능력 10세제곱미터/일 미만의 시설	
		은 제외한다.	
73) 수산물 판매장(면적	46314	○ 건어물 · 젓갈류를 판매하는 곳이 별도로	
700제곱미터 이상)	46315	구획된 경우 또는 활어를 판매하는 시	
	47213	설, 수산물소매시설로서 발생하는 폐수	
	47214	를 「하수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74) 병원시설(병상의 수	861	○ 수술실 · 처치실 및 병리실이 없는 병원	

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규모 이상인 시설)		과 한약을 끓이는 시설이 없는 한방병원은 제외한다.
75)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 장시설 및 폐기물처리 업의 폐수발생시설	381 382	○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에너지 생산에 이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에 유입하는 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 중 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분해시설에 유입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76) 세탁시설(용적 2세 제곱미터 이상 또는 용수 시간당 1세제곱 미터 이상)	9691	○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 안에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아니한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은 제외한다.
77) 산업시설의 폐가스· 분진, 세정·응축시설 (분무량 또는 응축량 이 시간당 0.01세제곱 미터 이상)	공통시설	○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제10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세정·응축수를 해당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정수능력이 1일 당 100세제곱미터 이상)	공통시설	○ 역세를 하지 아니하고 물리적으로만 처리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수영장의 정수시설은 제외한다. ○ 폐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정수 폐수를 해당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9) 이화학 시험시설(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공통시설	<p>제외한다.</p> <p>○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제10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실험폐수를 해당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와 초등학교·중학교의 실험실은 제외한다.</p>
80) 도금시설	공통시설	<p>○ 실험생산시설을 포함한다.</p> <p>○ 주공정이 도금공정인 시설을 말하며, 다른 공정의 일부로서 25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81) 운송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	공통시설	<p>○ 자동차·건설기계·열차·항공기 등 운송장비를 수선·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을 포함한다.</p> <p>○ 별표 1의 기타 수질오염원과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제10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소에서 분뇨 및 폐기물 등을 운반하는 차량의 세척 과정 중 배출되는 폐수를 해당 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82) 제1호부터 제81호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공통시설	<p>○ 건설현장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은 제외한다.</p> <p>○ 임가공시설과 383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시설은 원 생산 제품제조시설 분류</p>

아니하는 시설		와 같이 분류하되 별표 1의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비고 :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의 숫자는 특별한 설명이 없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분류번호를 말한다.

수질오염방지시설(제7조 관련)

1. 물리적 처리시설

- 가. 스크린
- 나. 분쇄기
- 다. 침사(沈砂)시설
- 라. 유수분리시설
- 마. 유량조정시설(집수조)
- 바. 혼합시설
- 사. 응집시설
- 아. 침전시설
- 자. 부상시설
- 차. 여과시설
- 카. 탈수시설
- 타. 건조시설
- 파. 증류시설
- 하. 농축시설

2. 화학적 처리시설

- 가. 화학적 침강시설
- 나. 중화시설
- 다. 흡착시설
- 라. 살균시설
- 마. 이온교환시설
- 바. 소각시설
- 사. 산화시설
- 아. 환원시설
- 자. 침전물 개량시설

3. 생물화학적 처리시설

- 가. 살수여과상
- 나. 폭기(瀑氣)시설
- 다. 산화시설(산화조(酸化槽) 또는 산화지(酸化池)를 말한다)
- 라. 혐기성·호기성 소화시설
- 마. 접촉조(接觸槽: 폐수를 염소 등의 약품과 접촉시키기 위한 탱크)
- 바. 안정조

사. 돈사똥발효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같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5. 별표 6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비고: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은 해당 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더 이상 처리하지 아니하고 직접 최종방류구에 유입시키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시설이 최종처리시설인 경우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본다.

비점오염저감시설(제8조 관련)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

가. 자연형 시설

- 1) 저류시설 : 강우유출수를 저류(貯留)하여 침전 등에 의하여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로 저류지·연못 등을 포함한다.
- 2) 인공습지 : 침전, 여과, 흡착, 미생물 분해, 식생 식물에 의한 정화 등 자연상태의 습지가 보유하고 있는 정화능력을 인위적으로 향상시켜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을 말한다.
- 3) 침투시설 : 강우유출수를 지하로 침투시켜 토양의 여과·흡착 작용에 따라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로서 투수성(透水性)포장, 침투조, 침투저류지, 침투도랑 등을 포함한다.
- 4) 식생형 시설 : 토양의 여과·흡착 및 식물의 흡착(吸着)작용으로 비점오염물질을 줄임과 동시에, 동·식물 서식공간을 제공하면서 녹지경관으로 기능하는 시설로서 식생여과대와 식생수로 등을 포함한다.

나. 장치형 시설

- 1) 여과형 시설 : 강우유출수를 집수조 등에서 모은 후 모래·토양 등의 여과재(濾過材)를 통하여 걸러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을 말한다.
- 2) 소용돌이형 시설 : 중앙회전로의 움직임으로 소용돌이가 형성되어 기름·그리스(grease) 등 부유성(浮游性) 물질은 상부로 부상시키고, 침전가능한 토사, 협잡물(挾雜物)은 하부로 침전·분리시켜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을 말한다.
- 3) 스크린형 시설 : 망의 여과·분리 작용으로 비교적 큰 부유물이나 쓰레기 등을 제거하는 시설로서 주로 전(前) 처리에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 4) 응집·침전 처리형 시설 : 응집제(應集劑)를 사용하여 비점오염물질을 응집한 후, 침강시설에서 고형물질을 침전·분리시키는 방법으로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말한다.
- 5)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 : 전처리시설에서 토사 및 협잡물 등을 제거한 후 미생물에 의하여 콜로이드(colloid)성, 용존성(溶存性) 유기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위 제1호의 시설과 같거나 그 이상의 저감효율을 갖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총량관리 단위구역의 수질 측정방법(제10조 관련)

1. 목표수질지점에 대한 수질 측정은 기본방침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2. 목표수질지점별로 연간 30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수질 측정 주기는 8일 간격으로 일정하여야 한다. 다만, 홍수, 결빙, 갈수(渴水) 등으로 채수(採水)가 불가능한 특정 기간에는 그 측정 주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수질 측정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평균수질을 산정하여 해당 목표수질지점의 수질변동을 확인한다.

가. 평균수질 = $e^{(\text{변환평균수질} + \frac{\text{변환분산}}{2})}$

나. 변환평균수질 = $\frac{\ln(\text{측정수질}) + \ln(\text{측정수질}) + \dots}{\text{측정횟수}}$

다. 변환분산 = $\frac{\{\ln(\text{측정수질}) - \text{변환평균수질}\}^2 + \dots}{\text{측정횟수} - 1}$

비고 : 측정수질은 산정 시점으로부터 과거 3년간 측정한 것으로 하며, 그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L)으로 표시한다.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산정 기준(제15조제2항제1호 관련)

오염부하량 할당대상자는 최종방류구별로 배출수의 수질을 일정한 주기로 30회 이상 측정된 자료를 이용하여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준수하기 위한 최종방류구별 배출량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 $\frac{\text{할당 오염부하량}}{\text{기준배출수질}} \times 10^6$

가. 수질 측정 결과가 대수정규분포(log-normal distribution, 對數正規分布)를 따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기준배출수질 = $e^{(\text{변환평균} + 1.645 \times \text{변환표준편차})}$

· 변환평균 = $\frac{\ln(\text{배출수수질}) + \ln(\text{배출수수질}) + \dots}{\text{측정횟수}}$

· 변환표준편차 = $\sqrt{\frac{\{(\ln(\text{배출수수질}) - \text{변환평균})\}^2 + \dots}{\text{측정횟수} - 1}}$

나. 수질 측정 결과가 대수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기준배출수질 = $(1-b) \times X_a + b \times X_{(a+1)}$ 로 산정한다.

- a는 $1 + 0.95 \times (\text{측정횟수} - 1)$ 의 정수부분, b는 $1 + 0.95 \times (\text{측정횟수} - 1)$ 의 소수부분을 말한다.
- X₁, X₂, X₃, ..., X_a, ..., X_n은 배출수 수질을 오름차순으로 서열화한 값을 말한다.
- X_a는 측정자료를 오름차순으로 서열화한 값 중 a번째 배출수 수질을 말한다.
- X_(a+1)은 측정자료를 오름차순으로 서열화한 값 중 (a+1)번째 배출수 수질을 말한다.

비고

1. 최종방류구별 배출량의 단위는 1일당 리터(L/일)로 한다.
2. 기준배출수질의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L)으로 한다.
3. 할당 오염부하량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말하며, 그 단위는 1일당 킬로그램(kg/일)으로 한다.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

배출량 추가지정 기준(제15조제3항 관련)

$$\text{추가 지정 배출량(L/일)} = (\text{할당 오염부하량/실측평균수질}) \times 10^6$$

- 비고 : 1. 실측평균수질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이 측정한 수질을 평균하여 산정한 수질로서 그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L)으로 한다.
2. 할당 오염부하량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말하며, 그 단위는 1일당 킬로그램(kg/일)으로 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제26조 관련)

1. 방류수 수질기준

1) 2011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구 분	적용기간 및 수질기준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2013. 1. 1.부터 2019. 12. 31.까지			
		I 지역	II 지역	III 지역	IV 지역	I 지역	II 지역	III 지역	IV 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mg/L)	20(30) 이하	20(30) 이하	20(30) 이하	20(30) 이하	20(30) 이하	10(10) 이하	10(10) 이하	10(10) 이하	10(10) 이하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mg/L)	40(40) 이하	40(40) 이하	40(40) 이하	40(40) 이하	40(40) 이하	20(40) 이하	20(40) 이하	40(40) 이하	40(40) 이하
부유물질 (SS) (mg/L)	20(30) 이하	20(30) 이하	20(30) 이하	20(30) 이하	20(30) 이하	10(10) 이하	10(10) 이하	10(10) 이하	10(10) 이하
총질소 (T-N) (mg/L)	40(60) 이하	40(60) 이하	40(60) 이하	40(60) 이하	40(60) 이하	20(20) 이하	20(20) 이하	20(20) 이하	20(20) 이하
총인 (T-P) (mg/L)	4(8) 이하	0.2(0.2) 이하	0.3(0.3) 이하	0.5(0.5) 이하	4(8) 이하	0.2(0.2) 이하	0.3(0.3) 이하	0.5(0.5) 이하	2(2) 이하
총대장균 수 (개/mL)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생태독성 (TU)	1(1) 이하	1(1) 이하	1(1) 이하	1(1) 이하	1(1) 이하	1(1) 이하	1(1) 이하	1(1) 이하	1(1) 이하

비고

1.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의 방류

수 수질기준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해당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수질 오염물질 항목으로 한정하여 별표 13 제2호나목의 표 중 특례지역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처리시설 설치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적용기간에 따른 수질기준란의 ()는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말한다.
3. 생태독성 항목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기준을 말한다.
4.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인 경우 그 원인이 오직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성분 때문이라고 증명된 때에는 그 방류수를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 또는 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5. 제4호에 따른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 성분 때문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구 분	수질기준			
	I 지역	II 지역	III 지역	IV 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mg/L)	10(10) 이하	10(10) 이하	10(10) 이하	10(10) 이하
총유기 탄소량 (TOC) (mg/L)	15(25) 이하	15(25) 이하	25(25) 이하	25(25) 이하
부유물질 (SS) (mg/L)	10(10) 이하	10(10) 이하	10(10) 이하	10(10) 이하
총질소	20(20)	20(20)	20(20)	20(20)

(T-N) (mg/L)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총인	0.2(0.2)	0.3(0.3)	0.5(0.5)	2(2)
(T-P) (mg/L)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총대장균 균 수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개/mL)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생태독성 (TU)	1(1) 이하	1(1) 이하	1(1) 이하	1(1) 이하

비고

1.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폐놀류 등 수질오염물질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해당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항목으로 한정하여 별표 13 제2호나목의 표 중 특례지역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처리시설 설치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적용기간에 따른 수질기준란의 ()는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말한다.
3. 생태독성 항목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기준을 말한다.
4.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인 경우 그 원인이 오직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성분 때문이라고 증명된 때에는 그 방류수를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 또는 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5. 제4호에 따른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 성분 때문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적용대상 지역

구 분	범 위
I 지역	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p>나.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 중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p> <p>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각각 지정·고시된 수변구역</p> <p>라.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이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p>
Ⅱ지역	<p>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BOD), 총유기탄소량(TOC) 또는 총인(T-P) 항목의 수치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물환경 목표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현저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p>
Ⅲ지역	<p>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수계에 포함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I 지역 및 II 지역을 제외한다)</p>
Ⅳ지역	<p>I 지역, II 지역 및 III 지역을 제외한 지역</p>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개정 2020. 11. 27.>

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부담의 범위(제26조의3제1항 관련)

1. 방제조치에 사용된 방제 자재·약품 등 소모된 물품 비용. 다만, 방제조치에 사용한 것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공함으로써 비용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2. 방제조치에 사용된 기계·기구의 임차료
3. 방제조치를 위하여 배출 및 회수된 오염물질과 그 밖에 오염물질과 관련된 물건의 제거·운반 또는 폐기물 처리에 소요된 비용

통행제한 도로·구간(제27조제2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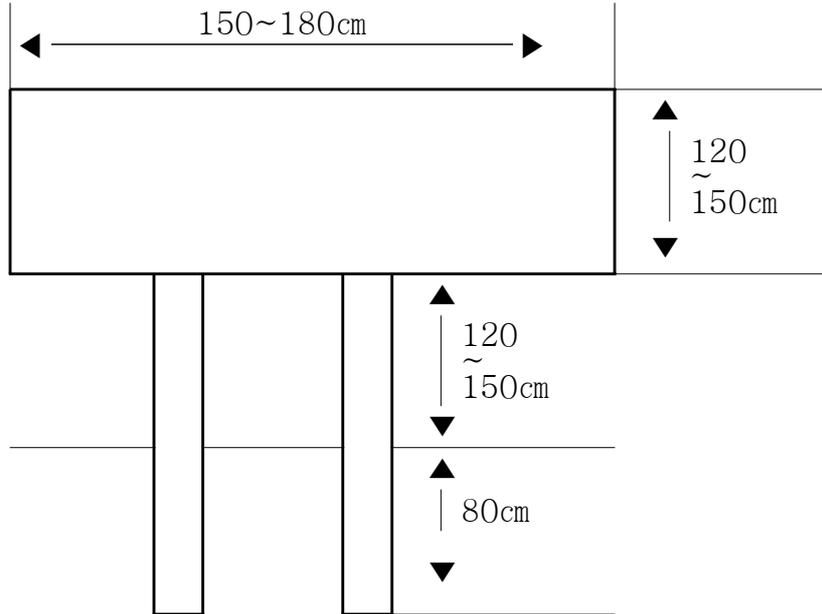
상수원명	대상도로	구간	거리
팔당호	일반국도 제6호	○시점: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경강로(팔당대교 입구) - 경유: 양평군 양서면 경강로(용담대교 입구) ○종점: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경강로(신원역 교차로)	12.7km
	일반국도 제45호	○시점: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태허정로(도마삼거리) ○종점: 경기도 하남시 태허정로(팔당댐 앞)	6.7km
	지방도 제342호	○시점: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산수로(광동하수처리장 사거리) ○종점: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운심교	18km
	일반국도 제45호 (북한강 강변)	○시점: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경강로(팔당대교 입구) ○종점: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북한강로(금남교차로)	21km
잠실	특별시도 제254호 (잠실철교)	○시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철교 남단 ○종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잠실철교 북단	1.3km
	특별시도 제278호 (올림픽대교)	○시점: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대교 남단 ○종점: 서울특별시 광진구 올림픽대교 북단	1.5km
	일반국도 제43호 (천호대교)	○시점: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교 남단 ○종점: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교 북단	1.2km
	특별시도 제248호 (광진교)	○시점: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교 남단 ○종점: 서울특별시 강동구 광진교 북단	1.1km
대청호	지방도 제509호	○시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회남문의로 (상장삼거리) ○종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회남문의로 (문의사거리)	1.8km
	지방도 제604호~ 지방도 제32호	○시점: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노산하석로 (하석삼거리) ○종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대청호반로 (문의사거리)	11.3km

	지방도 제32호	○시점: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신흥사 입구) ○종점: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교	9km
	국가지원 지방도 제32호	○시점: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신탄진동 55) ○종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미천고은로(미천리)	9.6km
	지방도 제629호	○시점: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호수로(비룡삼거리) ○종점: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호수로(검문소삼거리)	19km
	지방도 제571호	○시점: 대전광역시 동구 회남로(세천삼거리) ○종점: 충청북도 보은군 회남면 남대문교	18km
보령호	지방도 제617호	○시점: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판미로(늑전교삼거리) ○종점: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판미로(도화담삼거리)	10km
	시도 제1호	○시점: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보령호로(화산교삼거리) ○종점: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보령호로(늑전교삼거리)	4.3km
	농어촌 도로	○시점: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보령호로(댐) ○종점: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판미로(도화담삼거리)	10.5km
용담호 (금강)	지방도 제795호 (댐 인접)	○시점: 전라북도 진안군 정천면 진용로(정천면휴게소삼거리) ○종점: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진용로(용담댐삼거리)	20.0km
	군도 제22호 (댐 인접)	○시점: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정주천로(영강교부근) ○종점: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주용로(지방도 제795호 합류점)	5.5km
주암호	시도 제8호	○시점: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주암호길(광천리 170-2) ○종점: 전라남도 화순군 남면 모후로(복교리 산89-10)	25km
	일반국도 제15호	○시점: 전라남도 화순군 남면 모후로(복교리 산89-10) ○종점: 전라남도 화순군 남면 모후로(합수목교삼거리)	5.3km
동북호	군도 제23호 ~ 농어촌도로 제101호	○시점: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적벽로(경치리삼거리) ○종점: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백아로(구산삼거리)	11.7km
	군도	○시점: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물염로(신기마을 입구)	7.5km

	제4호	○종점: 전라남도 화순군 북면 물염로(다곡삼거리)	
상사호 (이사천)	군도 제1호	○시점: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노동길(지방도 제58호 합류점, 쌍지삼거리) ○종점: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노동길(지방도 제857호 합류점)	9km
회야호	군도 제18호	○시점: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북동천로 (못산 소류지 입구) ○종점: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대북동천로(회야댐초소 앞)	4.2km
덕동호	지방도 제945호	○시점: 경상북도 경주시 경감로(보불로삼거리) ○종점: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경감로(장항삼거리)	11.7km
운문댐 (낙동강)	국도 제20호 (댐 관통)	○시점: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청려로(지방도 제69호 합류점) ○종점: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청려로(지방도 제921호 합류점)	12.9km
남강댐 (낙동강)	시도 제7호 (댐 상류)	○시점: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금성로(정곡리 완사) ○종점: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금성로(금성리 장신)	3.1km
	시도 제18호~지방도 제1049호 (댐 인접)	○시점: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대평로(진주대로삼거리) ○종점: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 호반로(삼거리)	18km
밀양댐 (낙동강)	지방도 제1051호 (댐 인접)	○시점: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고례로(댐관리소 입구) ○종점: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배내로(고점사거리)	8km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제29조 관련)

1. 안내판의 규격



- 두께 및 재질: 3밀리미터 또는 4밀리미터 두께의 철판
- 바탕색: 청색
- 글씨: 흰색

2. 안내판의 내용

가. 낚시금지구역

알림

1. 이 지역은 「물환경보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금지구역입니다.

2. 낚시금지구역에서는 하천·호소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낚시행위가 모두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여 낚시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시장·군수·구청장

○ ○ 경찰서장

나. 낚시제한구역

알림

1. 이 지역은 「물환경보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제한구역입니다.
2. 낚시제한구역에서는 하천·호소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2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아래의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3항제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 가. 낚시바늘에 끼워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기를 유인하기 위하여 떡밥·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
- 나. 어선을 이용한 낚시행위 등 「낚시어선업법」에 따른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행위
- 다. 1명당 4대 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
- 라. 1개의 낚시대에 5개 이상의 낚시 바늘을 떡밥과 뭉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
- 마. 쓰레기를 버리거나 취사행위를 하거나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대·소변을 보는 등 수질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 바. 고기를 잡기 위하여 폭발물·배터리·어망 등을 이용하는 행위
- 사.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금지행위
- 아.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 밖에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년 월 일

○ ○ 시장·군수·구청장

○ ○ 경찰서장

비고 : 제2호사목 및 아목은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적는다.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기준(제30조의5 관련)

1. 설치기준

- 가.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위치는 배수구역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고유출수, 초기우수 등의 유입, 저류수의 연계처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나. 완충저류시설은 유입시설, 협잡물제거시설, 저류시설, 배출 및 이송시설, 부대시설 등으로 구성한다.
- 다. 완충저류시설은 사고유출수의 토양오염방지를 위하여 누수가 발생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 라. 유입시설은 배수구역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고유출수, 초기우수 등이 완충저류시설로 적정히 유입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마. 유입시설 또는 협잡물제거시설에 사고유출수, 초기우수 등의 유입 및 수질의 이상징후를 상시 측정·감시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바. 저류시설은 사고유출수의 하천 직유입 차단 및 강우 시 비점오염저감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고유출수 저류기능만 갖출 수 있다.
- 사. 저류시설은 대상 배수구역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고유출수, 초기우수 등을 안정적으로 저류할 수 있는 구조 및 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 아. 저류시설은 사고유출수, 초기우수 등의 저류로 인해 바닥에 퇴적된 퇴적물의 처리·제거를 위한 시설 및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자. 배출 및 이송시설은 사고유출수, 초기우수의 배출, 이송 또는 연계처리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차. 부대시설은 환기시설, 실시간 운영관리시설 등의 적절한 시설운영에 필요한 시설로 구성한다.

2. 운영기준

- 가. 전담관리인을 지정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나. 전담관리인은 사고발생 시 수질오염물질, 유해화학물질 등이 포함된 사고유출수의 하천 직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 다. 평상시 초기우수 처리를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로 운영 중이더라도 사고유출

수 유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라. 불시에 발생하는 사고유출수 및 초기우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입 시설 또는 협잡물제거시설 내 수질을 상시 측정·감시하여야 한다.

마. 청천 시, 강우 시, 사고유출수 발생 시 저류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처리 수준을 정하고, 저류시설에 유입된 사고유출수 또는 초기우수 등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배출, 이송 및 연계처리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한다.

사. 시설의 운영관리 및 수질측정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아. 완충저류시설은 연계처리하는 하수·폐수 처리시설 운영자 등에게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34조 관련)

1. 지역구분 적용에 대한 공통기준

가. 제2호 각 목 및 비고의 지역구분란의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및 특례지역은 다음과 같다.

- 1) 청정지역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하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라 한다) 매우 좋음(Ia)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2) 가지역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좋음(Ib), 약간 좋음(II)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3) 나지역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보통(III), 약간 나쁨(IV), 나쁨(V) 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4) 특례지역 : 공공폐수처리구역 및 시장·군수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하는 농공단지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의 공원구역 및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제2호에 따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청정지역으로 본다.

다. 정상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는 폐수배출시설에 제2호에 따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같은 호 나목의 항목은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수질오염물질 항목만 해당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나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2.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

1)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지역구분	대상 규모 항목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이상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미만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 (mg/L)	화학적 산소 요구량 (mg/L)	부유 물질량 (mg/L)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 (mg/L)	화학적 산소 요구량 (mg/L)	부유 물질량 (mg/L)
청정지역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40 이하	50 이하	40 이하
가지역		60 이하	70 이하	60 이하	80 이하	90 이하	80 이하
나지역		80 이하	90 이하	80 이하	120 이하	130 이하	120 이하
특례지역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비고 : 1.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

에 유입시키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서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특례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2)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지역구분	대상 규모 항목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이상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미만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 (mg/L)	총유기 탄소량 (mg/L)	부유 물질량 (mg/L)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 (mg/L)	총유기 탄소량 (mg/L)	부유 물질량 (mg/L)
청정지역		30 이하	25 이하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40 이하
가지역		60 이하	40 이하	60 이하	80 이하	50 이하	80 이하
나지역		80 이하	50 이하	80 이하	120 이하	75 이하	120 이하
특례지역		30 이하	25 이하	30 이하	30 이하	25 이하	30 이하

비고 : 1.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서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특례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3. 특례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의 경우로 한정한다)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나. 폐놀류 등 수질오염물질

1) 200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항목	수소 이온 농도	노말핵산 추출물질 함유량		페놀류 함유량	시아합 유량	크롬합 유량	용해성 철함유 량	아연합 유량	구리합 유량	카드뮴 함유량	수은합 유량	유기인 함유량	비소합 유량	납함유 량	6 가크롬 함유량	용해성 망간합 유량	불소합 유량	P C B 함유량	총 대 장 균 군	~총 대장 균군 수~	색도	온도	총질소	총인	트리클 로로에 틸렌	테트라 클로로 에틸렌	음이온 계면활 성제
		광유류	동식물 유지류																								
		(mg/L)	(mg/L)																								
청정	5.8 ~ 8.6	1 이하	5 이하	1 이하	0.2 이하	0.5 이하	2 이하	1 이하	1 이하	0.02 이하	0.001 이하	0.2 이하	0.1 이하	0.2 이하	0.1 이하	2 이하	3 이하	불검출	100 이하	200 이하	40 이하	30 이하	4 이하	0.06 이하	0.02 이하	3 이하	
가	5.8 ~ 8.6	5 이하	30 이하	3 이하	1 이하	2 이하	10 이하	5 이하	3 이하	0.1 이하	0.005 이하	1 이하	0.5 이하	1 이하	0.5 이하	10 이하	15 이하	0.003 이하	3,000 이하	300 이하	40 이하	60 이하	8 이하	0.3 이하	0.1 이하	5 이하	
나	5.8 ~ 8.6	5 이하	30 이하	3 이하	1 이하	2 이하	10 이하	5 이하	3 이하	0.1 이하	0.005 이하	1 이하	0.5 이하	1 이하	0.5 이하	10 이하	15 이하	0.003 이하	3,000 이하	400 이하	40 이하	60 이하	8 이하	0.3 이하	0.1 이하	5 이하	
특례	5.8 ~ 8.6	5 이하	30 이하	5 이하	1 이하	2 이하	10 이하	5 이하	3 이하	0.1 이하	0.005 이하	1 이하	0.5 이하	1 이하	0.5 이하	10 이하	15 이하	0.003 이하	3,000 이하	400 이하	40 이하	60 이하	8 이하	0.3 이하	0.1 이하	5 이하	

비고 : 1.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제2호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19)의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23)의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색 소첨가 제품만 해당한다) 제조시설에만 적용한다.

2. 삭제 <2010.4.2>

3. 별표 4 제2호80) 도금시설과 도금시설 외의 폐수배출시설로서 도금공정이 있는 시설(도금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다른 폐수와 섞어서 처리하지 아니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위 표의 총 질소 항목의 배출허용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상수원관리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역구분	총질소 배출허용기준(mg/L)
------	------------------

청정지역	30 이하
가지역	120 이하
나지역	120 이하
특례지역	120 이하

2)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항 목	지역구분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수소이온농도		5.8 ~ 8.6	5.8 ~ 8.6	5.8 ~ 8.6	5.8 ~ 8.6
노말핵산추출물질함유량	광유류 (mg/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동식물유지류(mg/L)	5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페놀류함유량 (mg/L)		1 이하	3 이하	3 이하	5 이하
시안함유량 (mg/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크롬함유량 (mg/L)		0.5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용해성철함유량 (mg/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아연함유량 (mg/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구리함유량 (mg/L)		1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카드뮴함유량 (mg/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수은함유량 (mg/L)		0.001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유기인함유량 (mg/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비소함유량 (mg/L)		0.0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납함유량 (mg/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6가크롬함유량 (mg/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용해성망간함유량 (mg/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플로오르(불소) 함유량 (mg/L)		3 이하	15 이하	15 이하	15 이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PCB) 함유량 (mg/L)		불검출	0.003 이하	0.003 이하	0.003 이하
총대장균군(群) (총대장균군수) (mL)		1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색도 (도)		200 이하	3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온도 (°C)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총질소 (mg/L)		3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총인 (mg/L)		4 이하	8 이하	8 이하	8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 (mg/L)		0.06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mg/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 (mg/L)		3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벤젠 (mg/L)		0.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디클로로메탄 (mg/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생태독성(TU)	1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	------	------	------	------

비고 : 1.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제2호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19)의 기타 섬유제품 제조 시설 및 23)의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만 해당한다) 제조시설에만 적용한다.

2. 삭제 <2010.4.2>

3.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별표 4 제2호의 폐수배출시설 분류 중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에만 적용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청정지역 3종부터 5종까지의 사업장은 TU 2를 적용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는 TU 1을 적용한다.

5. 가지역, 나지역, 특레지역의 생태독성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별표 4 제2호의 폐수배출시설 분류 중 18) 48), 80)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은 TU 4를 적용하고,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31), 33)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은 TU 8을 적용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는 모두 TU 2를 적용한다.

6. 생태독성은 영 별표 13에 따른 1종 및 2종 사업장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3종부터 5종까지의 사업장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항 목		지역 구분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레 지역
수소이온농도		5.8 ~ 8.6	5.8 ~ 8.6	5.8 ~ 8.6	5.8 ~ 8.6
노말핵산추출물질함유량	광유류(mg/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동식물유지류(mg/L)]	5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페놀류함유량(mg/L)		1 이하	3 이하	3 이하	5 이하
시안함유량(mg/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크롬함유량(mg/L)		0.5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용해성철함유량(mg/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아연함유량(mg/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구리(동)함유량(mg/L)		1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카드뮴함유량(mg/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수은함유량(mg/L)	0.001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유기인함유량(mg/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비소함유량(mg/L)	0.0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납함유량(mg/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6가크롬함유량(mg/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용해성망간함유량(mg/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플로오르(불소)함유량(mg/L)	3 이하	15 이하	15 이하	15 이하
폴리클로로디네이티드바이페닐(PCB) 함유량(mg/L)	불검출	0.003 이하	0.003 이하	0.003 이하
총대장균군(群)(총대장균군수)(mℓ)	1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색도(도)	200 이하	3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온도(℃)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총질소(mg/L)	3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총인(mg/L)	4 이하	8 이하	8 이하	8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mg/L)	0.06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mg/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mg/L)	3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벤젠(mg/L)	0.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디클로로메탄(mg/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생태독성(TU)	1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셀레늄함유량(mg/L)	0.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사염화탄소(mg/L)	0.004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0.08 이하
1,1-디클로로에틸렌(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6 이하
1,2-디클로로에탄(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클로로포름(mg/L)	0.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비고: 1.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제2호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같은 호 19)의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23)의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만 해당한다) 제조시설에만 적용한다.

2.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별표 4 제2호의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에만 적용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청정지역에 설치된 영 별표 13에 따른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에 적용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TU 2를 적용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는 TU 1을 적용한다.
4.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에 적용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의 경우 별표 4 제2호의 18), 48) 및 80)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은 TU 4를 적용하고, 같은 호의 31) 및 33)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은 TU 8을 적용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는 모두 TU 2를 적용한다.
5. 영 별표 13에 따른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에 적용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6.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증명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가.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 나.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을 제외한 곳으로 방류하는 경우(201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7. 제6호에 따른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8.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류할 경우에는 해당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4)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항 목	지역 구분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수소이온농도	5.8 ~ 8.6	5.8 ~ 8.6	5.8 ~ 8.6	5.8 ~ 8.6
노말핵산추출물질함유량	광유류(mg/L)	1 이하	5 이하	5 이하
	동식물유지류(mg/L)	5 이하	30 이하	30 이하
페놀류함유량(mg/L)	1 이하	3 이하	3 이하	5 이하
시안함유량(mg/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크롬함유량 (mg/L)	0.5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용해성철함유량 (mg/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아연함유량 (mg/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구리 (동) 함유량 (mg/L)	1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카드뮴함유량 (mg/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수은함유량 (mg/L)	0.001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유기인함유량 (mg/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비소함유량 (mg/L)	0.0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납함유량 (mg/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6가크롬함유량 (mg/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용해성망간함유량 (mg/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플로오르 (불소) 함유량 (mg/L)	3 이하	15 이하	15 이하	15 이하
폴리클로로디테르바이페닐 (PCB) 함유량 (mg/L)	불검출	0.003 이하	0.003 이하	0.003 이하
총대장균군 (群) (총대장균군수) (ml)	1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색도 (도)	200 이하	3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온도 (°C)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총질소 (mg/L)	3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총인 (mg/L)	4 이하	8 이하	8 이하	8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 (mg/L)	0.06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mg/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 (mg/L)	3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벤젠 (mg/L)	0.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디클로로메탄 (mg/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생태독성 (TU)	1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셀레늄함유량 (mg/L)	0.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사염화탄소 (mg/L)	0.004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0.08 이하
1,1-디클로로에틸렌 (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6 이하
1,2-디클로로에탄 (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클로로포름 (mg/L)	0.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니켈 (mg/L)	0.1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바륨 (mg/L)	1.0 이하	10.0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4-다이옥산 (mg/L)	0.05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mg/L)	0.02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염화비닐 (mg/L)	0.01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아크릴로니트릴 (mg/L)	0.01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브로모포름 (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비고

1.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제2호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같은 호 19)의 기타 섬유 제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23)의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만 해당한다) 제조시설에만 적용한다.
2.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고, 별표 4 제2호의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에만 적용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청정지역에 설치된 영 별표 13에 따른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에 적용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TU 2를 적용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는 TU 1을 적용한다.
4.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에 적용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의 경우 별표 4 제2호의 18), 48) 및 80)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은 TU 4를 적용하고, 같은 호의 31) 및 33)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은 TU 8을 적용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는 모두 TU 2를 적용한다.
5. 영 별표 13에 따른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에 적용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6.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증명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가.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 나.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을 제외한 곳으로 방류하는 경우(201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7. 제6호에 따른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8.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류할

경우에는 해당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5)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항 목	지역 구분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수소이온농도		5.8 ~ 8.6	5.8 ~ 8.6	5.8 ~ 8.6	5.8 ~ 8.6
노말핵산추출 물질함유량	광유류(mg/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동식물유지류(mg/L)	5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페놀류함유량(mg/L)		1 이하	3 이하	3 이하	5 이하
시안함유량(mg/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크롬함유량(mg/L)		0.5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용해성철함유량(mg/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아연함유량(mg/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구리(동)함유량(mg/L)		1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카드뮴함유량(mg/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수은함유량(mg/L)		0.001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유기인함유량(mg/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비소함유량(mg/L)		0.0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납함유량(mg/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6가크롬함유량(mg/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용해성망간함유량(mg/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플로오르(불소)함유량(mg/L)		3 이하	15 이하	15 이하	15 이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PCB) 함유량(mg/L)		불검출	0.003 이하	0.003 이하	0.003 이하
총대장균군(群)(총대장균군수)(ml)		1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색도(도)		200 이하	3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온도(℃)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총질소(mg/L)		3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총인(mg/L)		4 이하	8 이하	8 이하	8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mg/L)		0.06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mg/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mg/L)		3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벤젠 (mg/L)	0.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디클로로메탄 (mg/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생태독성 (TU)	1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셀레늄함유량 (mg/L)	0.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사염화탄소 (mg/L)	0.004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0.08 이하
1,1-디클로로에틸렌 (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6 이하
1,2-디클로로에탄 (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클로로포름 (mg/L)	0.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니켈 (mg/L)	0.1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바륨 (mg/L)	1.0 이하	10.0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4-다이옥산 (mg/L)	0.05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DEHP) (mg/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8 이하
염화비닐 (mg/L)	0.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1.0 이하
아크릴로니트릴 (mg/L)	0.01 이하	0.2 이하	0.2 이하	1.0 이하
브로모포름 (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비고

1.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제2호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같은 호 19)의 기타 섬유 제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23)의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만 해당한다) 제조시설에만 적용한다.
2.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별표 4 제2호의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에만 적용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청정지역에 설치된 영 별표 13에 따른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에 적용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TU 2를 적용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는 TU 1을 적용한다.
4.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에 적용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의 경우 별표 4 제2호의 18), 48) 및 80)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은 TU 4를 적용하고, 같은 호의 31) 및 33)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은 TU 8을 적용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는 모두 TU 2를 적용한다.
5. 삭제 <2013.9.5>
6.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증명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

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가.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나.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을 제외한 곳으로 방류하는 경우(201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7. 제6호에 따른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8.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류할 경우에는 해당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6)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항 목		지역 구분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수소이온농도		5.8 ~ 8.6	5.8 ~ 8.6	5.8 ~ 8.6	5.8 ~ 8.6
노말핵산추출물질함유량	광유류(mg/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동식물유지류(mg/L)	5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페놀류함유량(mg/L)		1 이하	3 이하	3 이하	5 이하
시안함유량(mg/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크롬함유량(mg/L)		0.5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용해성철함유량(mg/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아연함유량(mg/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구리(동)함유량(mg/L)		1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카드뮴함유량(mg/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수은함유량(mg/L)		0.001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유기인함유량(mg/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비소함유량(mg/L)	0.0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납함유량(mg/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6가크롬함유량(mg/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용해성망간함유량(mg/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플로오르(불소)함유량(mg/L)	3 이하	15 이하	15 이하	15 이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PCB)함유량(mg/L)	불검출	0.003 이하	0.003 이하	0.003 이하
총대장균군(群)(총대장균군수)(ml)	1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색도(도)	200 이하	3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온도(℃)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총질소(mg/L)	3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총인(mg/L)	4 이하	8 이하	8 이하	8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mg/L)	0.06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mg/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mg/L)	3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벤젠(mg/L)	0.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디클로로메탄(mg/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생태독성(TU)	1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셀레늄함유량(mg/L)	0.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사염화탄소(mg/L)	0.004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0.08 이하
1,1-디클로로에틸렌(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6 이하
1,2-디클로로에탄(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클로로포름(mg/L)	0.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니켈(mg/L)	0.1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바륨(mg/L)	1.0 이하	10.0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4-다이옥산(mg/L)	0.05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mg/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8 이하
염화비닐(mg/L)	0.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1.0 이하
아크릴로니트릴(mg/L)	0.01 이하	0.2 이하	0.2 이하	1.0 이하
브로모포름(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나프탈렌(mg/L)	0.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폼알데하이드(mg/L)	0.5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에피클로로하이드린(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톨루엔(mg/L)	0.7 이하	7.0 이하	7.0 이하	7.0 이하
자일렌(mg/L)	0.5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비고

1.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제2호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같은 호 19)의 기타 섬유 제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23)의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만 해당한다) 제조시설에만 적용한다.
2.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별표 4 제2호의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에만 적용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인 경우 그 원인이 오직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진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성분 때문으로 증명된 때에는 그 폐수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방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가.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 나.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을 제외한 곳으로 방류하는 경우(201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

정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른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 성분 때문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류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7)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항 목		지역 구분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수소이온농도		5.8 ~ 8.6	5.8 ~ 8.6	5.8 ~ 8.6	5.8 ~ 8.6
노말핵산추출물질 함유량	광유류(mg/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동식물유지류(mg/L)	5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페놀류함유량(mg/L)		1 이하	3 이하	3 이하	5 이하
페놀(mg/L)		0.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펜타클로로페놀(mg/L)		0.001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시안함유량(mg/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크롬함유량(mg/L)		0.5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용해성철함유량(mg/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아연함유량(mg/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구리(동)함유량(mg/L)		1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카드뮴함유량(mg/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수은함유량(mg/L)		0.001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유기인함유량(mg/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비소함유량(mg/L)		0.0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납함유량(mg/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6가크롬함유량(mg/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용해성망간함유량(mg/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플로오르(불소)함유량(mg/L)	3 이하	15 이하	15 이하	15 이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PCB)함유량(mg/L)	불검출	0.003 이하	0.003 이하	0.003 이하
총대장균군(群)(총대장균군수)(mℓ)	1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색도(도)	200 이하	3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온도(℃)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총질소(mg/L)	3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총인(mg/L)	4 이하	8 이하	8 이하	8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mg/L)	0.06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mg/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mg/L)	3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벤젠(mg/L)	0.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디클로로메탄(mg/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생태독성(TU)	1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셀레늄함유량(mg/L)	0.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사염화탄소(mg/L)	0.004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0.08 이하
1,1-디클로로에틸렌(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6 이하
1,2-디클로로에탄(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클로로포름(mg/L)	0.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니켈(mg/L)	0.1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바륨(mg/L)	1.0 이하	10.0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4-다이옥산(mg/L)	0.05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mg/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8 이하
염화비닐 (mg/L)	0.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1.0 이하
아크릴로니트릴 (mg/L)	0.01 이하	0.2 이하	0.2 이하	1.0 이하
브로모포름 (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나프탈렌 (mg/L)	0.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폼알데하이드 (mg/L)	0.5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에피클로로하이드린 (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톨루엔 (mg/L)	0.7 이하	7.0 이하	7.0 이하	7.0 이하
자일렌 (mg/L)	0.5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비고

1.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제2호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같은 호 19)의 기타 섬유 제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23)의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만 해당한다) 제조시설에만 적용한다.
2.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별표 4 제2호의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에만 적용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 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인 경우 그 원인이 오직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진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성분 때문으로 증명된 때에는 그 폐수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방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가.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 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을 제외한 곳으로 방류하는 경우(201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4. 제3호에 따른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 성분 때문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첨부

서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류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8)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항 목		지역 구분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청정 지역	지역			
수소이온농도		5.8 ~ 8.6	5.8 ~ 8.6	5.8 ~ 8.6	5.8 ~ 8.6	5.8 ~ 8.6
노말핵산추출물질 함유량	광유류(mg/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동식물유지류(mg/L)	5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페놀류함유량(mg/L)		1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5 이하
페놀(mg/L)		0.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펜타클로로페놀(mg/L)		0.001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시안함유량(mg/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크롬함유량(mg/L)		0.5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용해성철함유량(mg/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아연함유량(mg/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구리(동) 함유량(mg/L)		1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카드뮴함유량(mg/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수은함유량(mg/L)		0.001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유기인함유량(mg/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비소함유량(mg/L)		0.0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납함유량(mg/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6가크롬함유량(mg/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용해성망간함유량(mg/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플로오르(불소)함유량(mg/L)	3 이하	15 이하	15 이하	15 이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PCB) 함유량(mg/L)	불검출	0.003 이하	0.003 이하	0.003 이하
총대장균군(群)(총대장균군수)(mℓ)	1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색도(도)	200 이하	3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온도(℃)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총질소(mg/L)	3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총인(mg/L)	4 이하	8 이하	8 이하	8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mg/L)	0.06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mg/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mg/L)	3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벤젠(mg/L)	0.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디클로로메탄(mg/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생태독성(TU)	1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셀레늄함유량(mg/L)	0.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사염화탄소(mg/L)	0.004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0.08 이하
1,1-디클로로에틸렌(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6 이하
1,2-디클로로에탄(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클로로포름(mg/L)	0.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니켈(mg/L)	0.1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바륨(mg/L)	1.0 이하	10.0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4-다이옥산(mg/L)	0.05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mg/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8 이하

염화비닐 (mg/L)	0.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1.0 이하
아크릴로니트릴 (mg/L)	0.01 이하	0.2 이하	0.2 이하	1.0 이하
브로모포름 (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나프탈렌 (mg/L)	0.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폼알데하이드 (mg/L)	0.5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에피클로로하이드린 (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톨루엔 (mg/L)	0.7 이하	7.0 이하	7.0 이하	7.0 이하
자일렌 (mg/L)	0.5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퍼클로레이트 (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아크릴아미드 (mg/L)	0.015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스티렌 (mg/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mg/L)	0.2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안티몬 (mg/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비고

1.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제2호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같은 호 19)의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23)의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만 해당한다) 제조시설에만 적용한다.
2.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별표 4 제2호의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에만 적용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인 경우 그 원인이 오직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성분 때문으로 증명된 때에는 그 폐수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방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가.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 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을 제외한 곳으로 방류하는 경우(201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4. 제3호에 따른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 성분 때문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첨부서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류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6. 위 표에도 불구하고 퍼클로레이트 항목은 별표 4 제2호31)의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57)의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 시설의 경우에는 청정지역은 0.4mg/L, 가지역, 나지역 및 특례지역은 4mg/L의 기준을 적용한다.
7. 총대장균군 배출허용기준은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9)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항 목		지역 구분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수소이온농도		5.8 ~ 8.6	5.8 ~ 8.6	5.8 ~ 8.6	5.8 ~ 8.6
노말핵산추출물 질함유량	광유류(mg/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동식물유지류 (mg/L)	5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페놀류함유량(mg/L)		1 이하	3 이하	3 이하	5 이하
페놀(mg/L)		0.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펜타클로로페놀(mg/L)		0.001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시안함유량(mg/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크롬함유량(mg/L)		0.5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용해성철함유량(mg/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아연함유량(mg/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구리(동)함유량(mg/L)		1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카드뮴함유량(mg/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수은함유량(mg/L)	0.001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유기인함유량(mg/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비소함유량(mg/L)	0.0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납함유량(mg/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6가크롬함유량(mg/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용해성망간함유량(mg/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플로오르(불소)함유량(mg/L)	3 이하	15 이하	15 이하	15 이하
PCB함유량(mg/L)	불검출	0.003 이하	0.003 이하	0.003 이하
총대장균군(群) (총대장균군수)(ml)	1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색도(도)	200 이하	3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온도(℃)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총질소(mg/L)	3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총인(mg/L)	4 이하	8 이하	8 이하	8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mg/L)	0.06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mg/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mg/L)	3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벤젠(mg/L)	0.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디클로로메탄(mg/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생태독성(TU)	1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셀레늄함유량(mg/L)	0.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사염화탄소(mg/L)	0.004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0.08 이하
1,1-디클로로에틸렌(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6 이하

1,2-디클로로에탄(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클로로포름(mg/L)	0.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니켈(mg/L)	0.1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바륨(mg/L)	1.0 이하	10.0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4-다이옥산(mg/L)	0.05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DEHP)(mg/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8 이하
염화비닐(mg/L)	0.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1.0 이하
아크릴로니트릴(mg/L)	0.01 이하	0.2 이하	0.2 이하	1.0 이하
브로모포름(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나프탈렌(mg/L)	0.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폼알데하이드(mg/L)	0.5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에피클로로하이드린(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톨루엔(mg/L)	0.7 이하	7.0 이하	7.0 이하	7.0 이하
자일렌(mg/L)	0.5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퍼클로레이트(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아크릴아미드(mg/L)	0.015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스티렌(mg/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mg/L)	0.2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안티몬(mg/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주석(mg/L)	0.5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비고

1.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제2호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같은 호 19)의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23)의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만 해당한다) 제조시설에만 적용한

다.

2.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 해당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인 경우 그 원인이 오직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성분 때문으로 증명된 때에는 그 폐수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방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가.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 나. 다음 시설에서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을 제외한 곳으로 방류하는 경우
 - 1) 별표 4 제2호의 폐수배출시설 분류 중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201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 2) 1)에 해당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202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4. 제3호에 따른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 성분 때문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첨부서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2조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는 생태독성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출받을 수 있다.
6. 특례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의 경우로 한정한다)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되, 방류수 수질기준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7. 위 표에도 불구하고 퍼클로레이트 항목은 별표 4 제2호31)의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57)의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 시설의 경우에는 청정지역은 0.4mg/L, 가지역, 나지역 및 특례지역은 4mg/L의 기준을 적용한다.
8. 총대장균군 배출허용기준은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9.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제35조의2 관련)

물질명	기준농도(mg/L)
구리와 그 화합물	0.1
납과 그 화합물	0.01
비소와 그 화합물	0.01
수은과 그 화합물	0.001
시안화합물	0.01
유기인 화합물	0.0005
6가크롬 화합물	0.05
카드뮴과 그 화합물	0.005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
트리클로로에틸렌	0.03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0.0005
셀레늄과 그 화합물	0.01
벤젠	0.01
사염화탄소	0.002
디클로로메탄	0.02
1,1-디클로로에틸렌	0.03
1,2-디클로로에탄	0.03
클로로포름	0.08
1,4-다이옥산	0.05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0.008
염화비닐	0.005
아크릴로니트릴	0.005
브로모포름	0.03
페놀	0.1
펜타클로로페놀	0.001
아크릴아미드	0.015
나프탈렌	0.05
폼알데하이드	0.5
에피클로로하이드린	0.03
스티렌	0.02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0.2
안티몬	0.02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제44조 관련)

1. 영 제3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폐수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원료·부원료 등을 바꾸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영 제3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가. 발생한 폐수는 폐수처리업자등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나. 폐수위탁은 제41조에 따라 위탁처리할 수 있는 폐수로 한정한다.

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위탁처리할 폐수의 일일최대발생량을 기준으로 5일분 이상을 성상별로 보관할 수 있도록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그 양을 알아볼 수 있는 계측기(간이측정자·눈금 등)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한 폐수를 이송저장하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에서 직접 위탁할 수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보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라. 폐수성상이 서로 다른 폐수를 혼합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출판·인쇄, 자동식사진처리, X-Ray시설에서 위탁처리하는 현상액, 정착액 및 세척액은 각각 분리수거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18리터 이상의 합성수지용기의 윗부분과 양측면에 가로 10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크기의 바탕에 현상액은 황색바탕에 검정색으로 '현상폐수'라고 적고, 정착액은 녹색바탕에 검정색으로 '정착폐수'라고 적어야 한다. 다만, 소규모 자동식 사진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세척액의 수질오염물질 농도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위탁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폐수수탁처리업자와 폐수인계·인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 폐수(위)수탁확인서를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입력해야 하며, 입력방법은 별표 21의2와 같다.

바. 사업장에 폐수수탁처리계약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사. 폐수수탁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 폐업 또는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의 일시정지 등을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새로 폐수수탁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폐수를 위탁하여 처리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 매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위탁처리폐수에 대한 폐수성상별 위탁물량 및 폐수수탁처리업소 등에 관한 사항을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로서 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이하 이 표에서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자. 유해성·위해성이 우려되는 폐수(폐산, 폐알칼리,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수 등) 또는 수질오염물질이 고농도로 함유된 폐수를 위탁하려는 경우 폐수수탁처리업자가 해당 폐수를 충분히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위탁해야 한다.

3. 영 제3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가. 폐수(폐수처리업자등에게 위탁처리하는 폐수 및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하는 폐수는 제외한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4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사업장 외부에서 사용하려는 경우[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수 재이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수재이용업자”라 한다)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사전에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아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

나. 시설의 고장이나 수리 등으로 폐수가 외부로 배출되는 경우와 공정 중에 순환 재이용하다가 재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폐수 등 액상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거나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다. 매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폐수처리상황 등의 실적을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42조제1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라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로서 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인계·인수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

2) 제42조제3호에 따라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로서 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경우

라. 지정폐기물처리업자와 폐수를 인계인수하는 경우로서 제42조제3호에 따라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여 서로 기명날인한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마. 제42조제3호에 따라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 폐수수탁처리 계약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바. 가목 단서에 따라 폐수를 사업장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로서 폐수재이용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호 마목 및 바목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반출일자별로 반출처, 반출폐수량 등을 기록한 기록부를 작성하여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선사유서 제출 대상 및 시기(제52조의2제1항 관련)

구 분		내 용	제출시기
자료 수집기 및 측 정 기기	점검	일반 점검 · 측정기기 및 부대장비의 점검 또는 청소 · 측정기기 교정 · 단순 부품의 교체 또는 수리 (측정결과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센서류 및 검출부의 부품은 제외)	사전
		긴급점검 · 고장 발견과 간단한 수리 · 원인규명과 수리	사후
	상태 정보 발생	가동중지 · 점검중 · 수리·교환을 위한 부품 수급	사후
		통신불량 동작불량 · 특정 또는 불특정 원인으로 자동발생	
	자동측정자료의 미수신	· 자료수집기(중간자료수집기) 점검, 전기설비 자체점검, 수전설비 보완공사, 전기안전 점 검 등	사전
기타	정도 검사	· 검사를 위한 사전 준비 등 · 정도검사 기간	사전
	그 외 비정상 자동측정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시료펌프 순간 정전 후, 자동교정 후, 기타 불특정 원인으로 인한 이상 자료 및 비정상 상태정보 등)		사후

비고 : 개선사유서를 사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전자문서·팩스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즉시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52조의5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법제38조의9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처음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4차 이상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법 제38조의9 제1항제1호	등록 취소			
2) 법 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38조의9 제1항제5호				
가) 시설·장비의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등록 취소
나) 기술인력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30일 이상 갖추지 못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등록 취소
3) 법 제38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8조의9 제1항제6호	경고	경고	영업 정지 10일	
4) 법 제38조의7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8조의7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8조의9 제1항제3호	등록 취소			
5) 법 제38조의8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8조의9 제1항제7호				
가)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하거나 대행받은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다른 자에게 대행하도록 한 경우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등록 취소	
나)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		경고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다) 전년도 측정기기 관리대		경고	경고	영업	

<p>행 실적을 매년 1월 31일 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p>				정지 10일	
<p>라) 등록된 기술인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8조의 8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 지 않은 경우</p>		경고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p>6) 업무정지 기간에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를 한 경우</p>	법 제38조의9 제1항제2호	등록 취소			
<p>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 정기기의 관리대행 업무를 부 실하게 한 경우</p>	법 제38조의9 제1항제4호	영업 정지 1개월	등록 취소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량조사 방법(제63조제4항 관련)

1. 조사 항목: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특정수질유해물질
2. 조사 방법: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농도와 유량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
3. 조사 횟수

조사대상별 구분	측정횟수
가. 영 별표 13의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사업장	분기 1회
나. 가목에 따른 사업장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1.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사업장 2. 공동방지사설에서 처리하는 사업장 3.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하는 사업장	반기 1회
다. 영 별표 13의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에 따른 제3종 사업장	반기 1회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기준(제71조 관련)

1. 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개선 등 조치명령을 받지 아니한 운영자가 부득이하게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개선사유, 개선기간, 개선하려는 내용, 개선기간 중의 수질오염물질 예상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을 적은 개선계획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고 처리시설을 개선하여야 한다.
3. 처리시설의 가동시간, 폐수방류량, 약품투입량, 관리·운영자, 그 밖에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사실대로 매일 기록하고 이를 최종기록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자는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법 제38조의2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법 제38조의5에 따라 관제센터로 측정자료가 전송되는 항목은 제외한다)에 대한 방류수 수질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 가.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류수수질검사를 월 2회 이상 실시하되, 1일당 2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은 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생태독성(TU) 검사는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나. 방류수의 수질이 현저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방류수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6. 삭제 <2017. 1. 19.>

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구조기준 등(제72조 관련)

1. 폐수관로는 분류식으로 설치하고, 유입되는 오수·폐수가 전량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되도록 다른 폐수관로·맨홀 또는 오수·폐수받이와 연결되어야 한다.
2. 관 종류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과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폐수관로의 기초 지반은 관로의 종류, 매설토양의 특성, 시공방법, 하중조건 및 매설조건을 고려하여 관로의 침하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수관로를 시공한 경우에는 경사 검사, 수밀(水密) 검사 및 영상촬영 검사를 활용하여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배수관은 폐수관로와 연결되어야 하며, 관경(관지름)은 안지름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6.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빗물이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7. 배수관의 기점·종점·합류점·굴곡점과 관경·관 종류가 달라지는 지점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8.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밀리미터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고,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맨홀 등 악취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는 방취(防臭)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9. 사업장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까지로 폐수를 유입시키는 배수관에는 유량계 등 계량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10. 시간당 최대폐수량이 일평균폐수량의 2배 이상인 사업자와 순간수질과 일평균수질과의 격차가 리터당 100밀리그램 이상인 시설의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폐수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수하여야 한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및 구조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5를 따른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제76조제1항 관련)

1. 공통사항

- 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설치지역의 유역 특성, 토지이용의 특성, 지역사회의 수인가능성(불쾌감, 선호도 등), 비용의 적정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다.
- 나. 시설을 설치한 후 처리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시료채취나 유량측정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침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구조물을 배치하는 등 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 라. 강우가 설계유량 이상으로 유입되는 것에 대비하여 우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마.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지형적 특성, 기상 조건, 그 밖에 천재지변이나 화재, 돌발적인 사고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2호에 따른 시설 유형별 기준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바.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시설 유형별로 적절한 체류시간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 사.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계규모 및 용량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초기 우수(雨水)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1) 해당 지역의 강우빈도 및 유출수량, 오염도 분석 등을 통하여 설계규모 및 용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 2) 해당 지역의 강우량을 누적유출고로 환산하여 최소 5밀리미터 이상의 강우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 처리 대상 면적은 주요 비점오염물질이 배출되는 토지이용면적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비점오염저감계획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외의 비점오염저감대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규모나 용량은 제외할 수 있다.

2. 시설유형별 기준

가. 자연형 시설

1) 저류시설

- 가) 자연형 저류지는 지반을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하여 설치하는 등 경사면의 안전도와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토목공사 기준을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나) 저류지 계획최대수위를 고려하여 제방의 여유고가 0.6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다) 강우유출수가 유입되거나 유출될 때에 시설의 침식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유입·유출구 아래에 옹덩이를 설치하거나 모래와 돌을 깔아야 한다.
- 라) 저류지의 호안(湖岸)은 침식되지 아니하도록 식생 등의 방법으로 경사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 마) 처리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길이 대 폭의 비율은 1.5 :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바) 저류시설에 물이 항상 있는 연못 등의 저류지에서는 조류 및 박테리아 등의 미생물에 의하여 용해성 수질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사) 수위가 변동하는 저류지에서는 침전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유출수가 수위별로 유출될 수 있도록 하고 유출지점에서 소류력이 작아지도록 설계한다.
- 아) 저류지의 부유물질이 저류지 밖으로 유출하지 아니하도록 여과망, 여과용 깻돌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자) 저류지는 퇴적토 및 침전물의 준설이 쉬운 구조로 하며, 준설을 위한 장비 진입도로 등을 만들어야 한다.

2) 인공습지

- 가) 인공습지의 유입구에서 유출구까지의 유로는 최대한 길게 하고, 길이 대 폭의 비율은 2 : 1 이상으로 한다.
- 나) 다양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공습지 전체 면적 중 50퍼센트는 얇은 습지(0~0.3미터), 30퍼센트는 깊은 습지(0.3~1.0미터), 20퍼센트는 깊은 못(1~2미터)으로 구성한다.
- 다) 유입부에서 유출부까지의 경사는 0.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이하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라) 물이 습지의 표면 전체에 분포할 수 있도록 적당한 수심을 유지하고, 물 이동이 원활하도록 습지의 형상 등을 설계하며, 유량과 수위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 마) 습지는 생태계의 상호작용 및 먹이사슬로 수질정화가 촉진되도록 정수식물, 침수식물, 부엽식물 등의 수생식물과 조류, 박테리아 등의 미생물, 소형 어패류 등의 수중생태계를 조성하여야 한다.
- 바) 습지에는 물이 연중 항상 있을 수 있도록 유량공급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 생물의 서식 공간을 창출하기 위하여 5종부터 7종까지의 다양한 식물을 심어 생물다양성을 증가시킨다.

아) 부유성 물질이 습지에서 최종 방류되기 전에 하류수역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출구 부분에 자갈쇄석, 여과망 등을 설치한다.

3) 침투시설

가) 침전물(沈澱物)로 인하여 토양의 틈새가 막히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계한다.

나) 침투시설 하층 토양의 침투율은 시간당 13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동절기에 동결로 기능이 저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설치한다.

다)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 지하수위 또는 기반암으로부터 수직으로 최소 1.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한다.

라) 침투도랑, 침투저류조는 초과유량의 우회시설을 설치한다.

마) 침투저류조 등은 비상시 배수를 위하여 지하 관로 등 비상배수시설을 설치한다.

4) 식생형 시설

길이 방향의 경사를 5퍼센트 이하로 한다.

나. 장치형 시설

1) 여과형 시설

가) 시설의 제거효율,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저장용량, 체류시간, 여과재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여과재 통과수량을 고려하여 여과 면적과 여과 깊이 등을 설계한다.

2) 소용돌이형 시설

가) 입자성(粒子性) 수질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분리하기 위하여 소용돌이가 충분히 형성될 수 있도록 체류시간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나) 입자상 수질오염물질의 침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수면적 부하율을 최대한 낮추어야 한다.

다) 슬러지 준설을 위한 장비의 반입 등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한다.

3) 스크린형 시설

가) 제거대상 물질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크기의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슬러지의 준설을 위한 장비의 반입 등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한다.

4) 응집·침전 처리형 시설

가) 단시간에 발생하는 유량을 차집(遮集)하기 위하여 저감시설 앞 단에 저류조를 설치한다.

5)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

- 가) 미생물 접촉시설에 이들 수질오염물질이 유입하지 아니하도록 여과재 또는 미세 스크린 등을 이용하여 토사 및 협잡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 나) 미생물 접촉시설은 비가 오지 아니할 때에도 미생물정화기능이 유지되도록 설계한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운영기준(제76조제2항 관련)

1. 공통사항

- 가. 설치한 저감시설의 보존상태와 주변부의 여건, 상황 등을 파악하여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어렵게 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 나. 슬러지 및 협잡물 제거
 - 1) 저감시설의 기능이 정상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부 및 여과시설의 슬러지 및 협잡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 2) 유입 및 유출 수로의 협잡물, 쓰레기 등을 수시로 제거하여야 한다.
 - 3) 준설한 슬러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기준에 맞도록 처리한 후 최종 처분하여야 한다.
- 다. 정기적으로 시설을 점검하되, 장마 등 큰 유출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라. 주기적으로 수질오염물질의 유입량, 유출량 및 제거율을 조사하여야 한다.
- 마.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바. 사업자는 제75조제1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설치내용, 운영내용 및 유지관리계획 등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 시설유형별 기준

가. 자연형 시설

1) 저류시설

저류지의 침전물은 주기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2) 인공습지

가)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를 말한다)에는 인공습지에서 말라 죽은 식생(植生)을 제거·처리하여야 한다.

나) 인공습지의 퇴적물은 주기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다) 인공습지의 식생대가 50퍼센트 이상 고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수생 식물을 심어야 한다.

라) 인공습지에서 식생대의 과도한 성장을 억제하고 유로(流路)가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수생식물을 잘라내는 등 수생식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마) 인공습지 침사지의 매몰 정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50퍼센트 이상 매몰될 경우에는 토사를 제거하여야 한다.

3) 침투시설

가) 토양의 틈새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시설 내의 침전물을 주기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나) 침투시설은 침투단면의 투수계수 또는 투수용량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막힘 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식생형 시설

가) 식생이 안정화되는 기간에는 강우유출수를 우회시켜야 한다.

나) 식생수로 바닥의 퇴적물이 처리용량의 2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침전된 토사를 제거하여야 한다.

다) 침전물질이 식생을 덮거나 생물학적 여과시설의 용량을 감소시키기 시작하면 침전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라)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를 말한다)에 말라 죽은 식생을 제거·처리한다.

나. 장치형 시설

1) 여과형 시설

가) 전(前) 처리를 위한 침사지(沈砂池)는 저장능력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협잡물과 침전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여과재를 교체하거나 침전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2) 소용돌이형 시설

침전물의 저장능력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침전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스크린형 시설

망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망 사이의 협잡물 등을 주기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4) 응집·침전 처리형 시설

가) 다량의 슬러지(sludge) 발생에 대한 처리계획을 세우고 발생한 슬러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한다.

나) 자 테스트(Jar-test)를 실시하거나 자 테스트를 통하여 작성된 일람표 등을 이용하여 유입수의 농도 변화에 따라 적정량의 응집제를 투입하여야 한다.

다) 주기적으로 부대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

가) 강우유출수에 포함된 독성물질이 미생물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관리한다.

나) 오염물질 부하량의 변화가 심한 강우유출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미생물의 활성화(活性)을 유지하도록 한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제78조의3 관련)

검사 항목	세부 항목	검사 기준	검사방법
1.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기술적 타당성	가. 오염물질 제거 원리의 적합성	1) 저류, 침전, 여과, 침투 등 비점오염물질의 저감방법이 적합할 것 2)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사용된 장치 및 재료가 적합할 것	서면검사
	나. 설치 방법의 타당성	1) 강우유출수의 비점오염저감시설에의 유입과 비점오염저감시설로부터 유출이 가능할 것 2)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처리효과 확인을 위한 시료 채취나 유량 측정이 가능할 것 3)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유형별로 적절한 체류시간을 가질 것 4) 강우유출수가 설계유량 이상으로 유입되는 것에 대비하여 우회시설을 설치할 것(비점오염저감시설의 외부에서 우회시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비점오염물질저감능력	가. 오염물질 제거효율	비점오염저감시설로 유입된 오염물질량과 비점오염저감시설로부터 유출된 오염물질량을 비교하여 제거 효율을 산정(침투시설 등 제거효율 실험이 불가능한 시설은 제외한다)할 것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 실험
	나. 통수(通水) 능력	오염물질로 인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 내 물의 흐름이 저하되거나 막힘이 발생하는 정도를 손실수두(損失水頭, 물의 흐름에 의해 생긴 에너지, 압력 등의 손실을 물기둥으로 나타낸 값)와 투수속도(透水速度)로 구분하여 산정할 것	
3. 유지관리 방법의 적절성	가. 유지관리 비용의 적정성	1) 전력량, 용수 사용량 등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이 적절할 것 2) 시설 유형별 유지관리 주기가 적절	서면검사

		할 것
	나. 유지관리 방법의 편 의성	1) 유지관리 방법 설명서에 제시된 유 지관리 방법이 적정할 것 2) 시설 내부의 장치, 재료 등의 교체 및 보수가 쉬운 구조일 것 3) 시설 내부의 슬러지 및 협잡물의 제거가 가능한 구조일 것

비고

- 제2호나목의 검사 기준란의 손실수두는 관로를 통해 강우유출수를 연속적으로 유입시키는 시설의 손실수두 및 손실수두 환원 정도를 말한다.
- 제2호나목의 검사 기준란의 투수속도는 시설 표면의 공극(空隙)을 통해 강우유출수를 유입시키는 시설의 단위시간당, 단위면적당 통과유량을 말한다.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자가 하여야 할 조치(제87조 관련)

기타수질오염원의 구분		시설 설치 등의 조치
1.수산물 양식시설	가. 가두리양 식업시설	<p>1) 사료를 준 후 2시간 지났을 때 침전되는 양이 10퍼센트 미만인 물에 뜨는 사료를 사용한다. 다만, 10센티미터 미만의 치어 또는 종묘(種苗)에 대한 사료는 제외한다.</p> <p>2) 「사료관리법」 제10조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사료공정에 적합한 사료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3) 물에 뜨는 사료 유실방지대를 수표면 상·하로 각각 10센티미터 이상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료유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4) 분뇨를 수집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변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집된 분뇨를 육상으로 운반하여 호소에 재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p> <p>5) 죽은 물고기는 지체 없이 수거하여야 하고, 육상에 운반하여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p> <p>6) 물고기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하기 위한 항생제를 지나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나. 육상수조 식 내 수 양 식업시설	<p>1) 시료찌꺼기·배설물과 그 밖의 슬러지 등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면적이 사육시설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이고 깊이가 1미터 내지 1.5미터인 침전시설(배출수가 1.5시간 이상 체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깊이를 1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율이 있는 것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고 1에 따라 배출수의 수질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침전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다르게 설치할 수 있다.</p> <p>2) 양식수조를 청소하거나 양식에 사용되는 기계·기구류를 세척할 때에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은 1)의 침전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거나 별도의 침전시설 등을 설치</p>

	<p>하여 처리하여야 한다.</p> <p>3) 양식수조를 청소할 때에는 청소주기 및 연간 청소횟수를 신고서에 적어야 한다.</p> <p>4) 1) 또는 2)에 따라 설치된 침전시설에 가라앉은 침전물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침전물이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목(細目)여과망·모래여과상 등의 여과시설 또는 침전물 탈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p> <p>5) 죽은 물고기는 지체 없이 수거하여야 하고, 육상에 운반하여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p> <p>6) 물고기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하기 위한 항생제를 지나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다. 육상수조 식해수양 수업시설	나목에 정한 조치의 내용과 같다.
2. 골프장	<p>1) 골프장 안에 초기 빗물 5밀리미터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조정지(調整池)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2) 침전물 등 오염물질을 주기적으로 제거하여 조정지의 기능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p>
3. 운수장비·정비 또는 폐차장 시설	<p>1) 정비가 이루어지는 장소 또는 폐차 시 엔진부분을 취급하는 장소는 가능한 한 지붕을 설치하여야 한다.</p> <p>2) 부득이하게 지붕시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닥을 방수처리하여 수질오염물질이 지하로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p> <p>3) 바닥에 유출된 기름류는 가능하면 흡착제 등으로 흡착·제거하여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p> <p>4) 위 3)의 방법에 따른 처리가 어려워 물로 청소하거나 작업장 바닥을 물로 청소할 경우에는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p> <p>5) 강우 시 작업장 바닥의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침전시설의 규모는 5밀리미터 강우 시 실제 작업을 행하는 모든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p>

	<p>는 초기 강우량을 저류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고, 유수분리기의 성능은 배출수의 노말핵산추출물을 30mg/L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다만, 작업장 전체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고 물로 청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6) 침전시설에 침전되는 침전물은 바닥에서 2센티미터 이상 퇴적되기 전에 이를 제거하여 2차 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p>
<p>4. 농축수산물 단순 가공시설</p>	<p>1) 수면 위의 부유물질을 제거하여 방류하여야 한다.</p> <p>2) 침전물은 침전시설을 설치하여 침전처리하여야 하고, 이 때 침전물이 재차 부유하지 아니하도록 한다.</p> <p>3) 염분 등으로 타인에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5. 사진처리, X-Ray시설,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 및 안경원</p>	<p>1) 별표 1 제5호가목 또는 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하거나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해야 하며, 별표 1 제5호나목 또는 제6호가목의 경우에는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해야 한다. 다만, 별표 1 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13 제2호나목9)에도 불구하고 배출허용기준 항목을 폐놀, 구리(동)함유량, 납함유량, 디클로로메탄, 셀레늄함유량, 클로로포름,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및 폼알데하이드로 한정한다.</p> <p>2)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폐수의 수거·보관·처리 및 수거용기의 표기에 관하여는 별표 14 제2호라목을 준용한다.</p> <p>3) 폐수의 발생량·처리량 및 수탁자에 관한 사항은 이를 기록하되, 최종 기록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p>4) 별표 1 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폐수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하려는 경우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여과 등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p> <p>5) 4)에 따라 여과 처리를 할 때에는 부직포 등의 재질로 제작된 여과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성능을 가진 여과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이 때 발생하는 슬러지를 주기적으로 제</p>

	거하여 여과장치의 기능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6. 복합물류 터미널시설	<p>가. 강우시 사업장 바닥의 비점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침전시설의 규모는 해당 지역의 강우량을 누적유출고로 환산하여 최소 5밀리미터 이상의 강우량을 저류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고, 유수분리기의 성능은 배출수의 노말핵산추출물질 5mg/L 이하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시설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로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의 설치를 대체할 수 있다.</p> <p>나. 비점오염물질의 흘날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사업장내 노면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p>
7. 거점소독시설	<p>1) 소독 조치에 따른 환경부하 감소를 위하여 소독 시 수질오염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독수 저장시설을 설치하여 회수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통행량이 적은 거점소독시설의 경우에는 발생한 소독수를 흡수할 수 있는 매트 등으로 소독수 저장시설의 설치를 대체할 수 있으며, 매트 등을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해야 한다.</p> <p>2) 1)에 따라 회수된 소독수는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거나, 폐수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직접 처리하여 배출해야 한다.</p>

비고 : 1. 시·도지사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기타수질오염원 배출수의 수질기준(위 표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한다)을 정하거나 별도의 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산업단지나 그 밖에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 설치된 기타수질오염원의 경우에는 그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3. 하나의 사업장에 폐수배출시설과 기타수질오염원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기타수질오염원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제89조의3 관련)

1. 수질 기준

가. 측정항목별 수질 기준

검사항목	수질기준
1) 수소이온농도	5.8 ~ 8.6
2) 탁도	4NTU 이하
3) 대장균	200(개체수/100mL) 미만
4) 유리잔류염소(염소소독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0.4 ~ 4.0mg/L

나. 검사 방법 및 주기

- 1) 가목의 측정 항목에 대하여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에게 수질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 2) 시설의 가동 개시일을 기준으로 운영 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시료는 가급적 이용자가 많은 날에 채수하도록 한다. 다만, 천재지변, 강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질 검사주기를 초과한 경우에는 검사주기 초과사유 및 조치계획을 별지 제40호의5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의 수질검사 조치사항 항목에 기재해야 한다.

2. 관리 기준

가. 운영기간 중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심을 30cm 이하로 유지하고, 부유물 및 침전물 유무를 수시로 점검, 제거하여야 한다.

나. 운영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

- 1) 저류조(貯溜槽)의 주 1회 이상 청소
- 2)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사용되는 물의 주 1회 이상 교체
- 3)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사용되는 물의 1일 1회 이상 여과기 통과

다. 운영기간 중 소독제를 저류조 등에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물을 소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을 충족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은 살균·소독제 또는 자외선 소독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라. 운영기간 중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운영자 연락처, 수질검사 일자 및 결과, 이용자 주의사항(음용 금지, 애완동물 출입 금지 등)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마. 해당 연도의 운영기간 중 별지 제40호의5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0일까지 관할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고, 제출한 서류의 사본을 제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바. 운영기간 중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이 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개방을 중지하고, 소독 또는 청소·용수 교체 등의 조치를 완료한 후 수질을 재검사하여 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재개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질 기준의 초과를 확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0호의5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에 수질 검사결과, 초과 원인, 조치 이행 및 재검사 결과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 (제90조제1항 관련)

구분		종류	폐수수탁처리업	폐수재이용업
1. 기술능력			가.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이상 나.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1명 이상	가. 수질환경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중 1명 이상
2. 시설 및 장비	가. 저장시설		1) 폐수저장시설의 용량은 1일 8시간(1일 8시간 이상 가동할 경우 1일 최대가동시간으로 한다) 최대처리량의 3일분 이상의 규모이어야 하며, 반입폐수의 밀도를 고려하여 전체 용적의 90퍼센트 이내로 저장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폐수는 폐수처리방법별로 구분·저장할 수 있도록 구획·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수탁폐수의 혼합으로 인한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저장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저장시설은 저장폐수에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유입폐수와 보관된 폐수의 적산유량을 계측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작업시의 안전을 고려하여 덮개·가스배출구 및 폐수처리시설로 이송하기 위한 고정식 파이프라인의 구조로 설치	1) 원폐수 및 재이용 후 발생하는 폐수의 각각 저장시설의 용량은 1일 8시간(1일 8시간 이상 가동할 경우 1일 최대가동시간으로 한다) 최대처리량의 3일분 이상의 규모이어야 하며, 반입폐수의 밀도를 고려하여 전체 용적의 90퍼센트 이내로 저장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폐수는 성상별로 구분·저장할 수 있도록 구획·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재이용 폐수의 혼합으로 인한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저장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저장폐수에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원폐수 및 재이용 후 발생하는 폐수의 저장시설은 유입폐수의 적산유량을 계측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작업시의 안전을 고려하여 덮개·가스배출구 및 폐수처리시설로 이송하기 위한 고정식 파이프라인의 구조로 설치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p>나. 처리 시설</p>	<p>1) 처리시설은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의 시설 중 하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허가기관에서 인정한 수탁처리대상의 폐수를 물리화학적처리시설 또는 생물화학적처리시설을 이용하여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리시설을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p> <p>가) 증발농축시설 나) 건조시설 다) 소각시설 라) 허가기관이 가)부터 다)까지의 시설과 같은 수준 이상의 효율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p> <p>2) 폐수처리시설의 총 처리능력은 7.5세제곱미터/시간 이상이어야 한다[위 1)의 가)부터 라)까지의 시설의 처리능력 합을 말하며, 증발농축시설의 후처리 과정의 건조시설과 같이 주처리시설의 후처리 과정의 시설은 제외한다].</p> <p>3) 폐수처리시설은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p> <p>가) 증발농축시설</p> <p>(1) 시설의 유입수와 응축수(응축수 발생시설에 한한다)의 적산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p>	<p>1) 재이용하고자 하는 폐수의 재이용품을 생산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p> <p>2) 재이용 후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은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할 수 있도록 증발농축시설, 건조시설, 소각시설 또는 허가기관이 이와 같은 시설과 동등 이상의 효율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p> <p>3) 처리시설 능력은 재이용시설을 최대 가동 시 배출되는 폐수용량이어야 한다.</p> <p>4) 폐수처리시설은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p> <p>가) 증발농축시설</p> <p>(1) 시설의 유입수와 응축수(응축수 발생시설에 한한다)의 적산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p> <p>(2) 증발농축 잔류물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p> <p>(3) 응축수가 발생하는 처리공정의 시설은 응축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p> <p>나) 건조시설</p> <p>(1) 건조 잔류물의 수분 함량이 75퍼센트 이하의 성능이어야 한다.</p> <p>(2) 건조 잔류물이 외부로</p>

(2) 증발농축 잔류물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응축수가 발생하는 처리공정의 시설은 응축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건조시설

(1) 건조 잔류물의 수분 함량이 75퍼센트 이하의 성능이어야 한다.

(2) 건조 잔류물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소각시설

(1) 처리능력은 2세제곱미터/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 소각시설의 연소실 출구 배출가스 온도조건은 최소 850℃ 이상, 체류시간은 최소 1초 이상이어야 한다.

(3)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일정시간 체류할 수 있고 충분히 혼합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연소실의 공기 및 폐수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폭발·화재 등의 사고에 대비한 안전구조로 설치하여야 하고, 소화기 등 소화 장비를 갖추

누출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소각시설

(1) 소각시설의 연소실 출구 배출가스 온도조건은 최소 850℃ 이상, 체류시간은 최소 1초 이상이어야 한다.

(2)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일정시간 체류할 수 있고 충분히 혼합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연소실의 공기 및 폐수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폭발·화재 등의 사고에 대비한 안전구조로 설치하여야 하고 소화기 등 소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5) 배출가스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과 배출가스의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구를 갖추어야 한다.

(6) 온도를 자동 계측·기록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7) 시설 유입폐수의 적산유량을 계측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기타 부대시설

(1) 저장시설 및 처리시설

어야 한다.

(6) 휴대용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산소측정기를 비치하고, 온도를 자동계측·기록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7) 시설 유입폐수의 적산유량을 계측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물리화학적처리시설[1)의 가)부터 라)까지의 시설의 전 처리 또는 후 처리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1) 처리능력은 4세제곱미터/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 대상폐수는 허가기관에서 물리화학적처리시설을 이용하여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수탁처리대상의 폐수로 한정한다.

(3) 삭제 <2014.1.29>

(4) 폐수처리약품의 양이 일정하게 주입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생물화학적처리시설[1)의 가)부터 라)까지의 시설의 전처리 또는 후처리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1) 처리능력이 4세제곱미터/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 대상폐수는 허가기관에서 생물화학적처리시

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 및 대기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방지시설과 측정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처리시설의 잔류물·슬러지 등 폐기물을 적정 보관할 수 있는 보관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 토양오염 및 빗물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5) 작업시 안전을 위한 보호구 및 소화기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6) 처리시설 전면에 처리공정도 및 폐수배관도를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부착하여야 하고,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아니한 배관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7) 폐수를 처리하여 최종 배출하는 방류구는 외부에서의 방류상태 관찰 및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설을 이용하여 배출허용 기준 이내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수탁처리대상의 폐수로 한정한다.

(3) 삭제 <2014.1.29>

(4) 생물화학적처리에 필요한 약품류 등의 양이 일정하게 주입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기타 부대시설

(1) 저장시설 및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 및 대기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방지시설과 측정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처리시설의 잔류물·슬러지 등 폐기물을 적정 보관할 수 있는 보관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 토양오염 및 빗물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작업 시 안전을 위한 보호구 및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5) 처리시설 전면에 처리공정도 및 폐수배관도를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부착하여야 하고,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아니한 배관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폐수를 처리하여 최종 배출하는 방류구는 외부에서의 방류상태 관찰 및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 운반장비	1) 폐수운반장비는 용량 2세제 공급미터 이상의 탱크로리, 1세제 공급미터 이상의 합성수지제 용기가 고정된 차량이어야 한다. 다만, 지식산업센터 내에서 수집하는 경우에는 고정식 파이프라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폐수운반장비는 운반폐수에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로서 운반 도중 폐수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3) 폐수운반 장비는 내부용량을 계측할 수 있는 구조 또는 그 양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4) 폐수운반차량은 청색[색번호 10B5- 12(1016)]으로 도색하고, 양쪽 옆면과 뒷면에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폐수운반차량, 회사명, 허가번호, 전화번호 및 용량을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5) 운송 시 안전을 위한 보호구, 중화제 및 소화기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폐수운반장비는 용량 2세제 공급미터 이상의 탱크로리, 1세제 공급미터 이상의 합성수지제 용기가 고정된 차량, 18리터 이상의 합성수지제용기(유가품인 경우만 해당한다)이어야 한다. 다만, 지식산업센터 내에서 수집하는 경우에는 고정식 파이프라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폐수운반 장비는 운반폐수에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로서 운반 도중 폐수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3) 폐수운반 장비는 내부용량을 계측할 수 있는 구조 또는 그 양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4) 폐수운반차량은 청색[색번호 10B5- 12(1016)]으로 도색하고, 양쪽 옆면과 뒷면에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폐수운반차량, 회사명, 허가번호, 전화번호 및 용량을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5) 운송시 안전을 위한 보호구, 중화제 및 소화기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3. 실험실 및 실험기	가. 실험실	1) 공장 안에 설치하고 구획되어 있을 것 2) 바닥과 내면은 불연성 자재로서 실험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기·기구	3) 급수수도전과 세척시설에는 배수시설이 되어 있을 것 4) 위 3)에서의 배수시설을 통한 실험폐수는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유입될 수 있을 것 5) 환기장치가 되어 있을 것 6) 항상 실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7) 실험실에서 발생된 폐수를 제2호가목의 저장시설로 유입처리할 수 있도록 고정식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거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나. 실험기 기·기구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기구 및 시약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소이온농도(pH) 2)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3) 총유기탄소량(TOC) 4) 부유물질(SS) 5) 페놀 6) 시안 7) 총크롬 및 6가크롬 8) 아연 9) 구리 10) 카드뮴 11) 비소 12) 납 13) 용해성 망간 14) 플루오르 15) 수은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기구 및 시약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소이온농도(pH) 2) 총유기탄소량(TOC) 3) 부유물질(SS) 4) 재생·이용 폐수에 함유된 특정수질유해물질 성분

- 비고 : 1. 하나의 시설 또는 장비가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가질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폐수수탁처리업, 폐수재이용업을 함께 하려는 때는 같은 요건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3. 수질오염물질 각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기구 및 시약을 보유한 측정대행업자 또는 대학부설 연구기관 등과 측정대행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실험기기·기구의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실험기기·기구 또는 시약을 갖추지

않을 수 있으며, 수질오염물질 항목 전부에 대하여 측정대행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중에는 실험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4. 폐수처리업자 또는 폐수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되는 환경관련사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실험실·실험기기 및 기구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5. 기술능력이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자격요건 이상이고 폐수처리시설과 폐수배출시설이 동일한 시설인 경우에는 환경기술인을 중복하여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

폐수 간 반응여부 등의 확인방법(제91조제2항 관련)

1. 공통사항

- 가. 폐수처리업자는 수탁받은 폐수(이하 "수탁폐수"라 한다)를 다른 수탁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폐수가 발생한 공정과 폐수의 성분·성상 등을 파악한 후, 혼합 처리 과정에서의 부식성, 폭발성, 자연발화성, 유해성(이하 "유해성등"이라 한다)을 확인(이하 "혼합확인"이라 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폐수처리업자는 수탁폐수의 혼합확인을 위해 필요하면 위탁자에게 수탁폐수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나. 수탁폐수의 혼합확인 결과 유해성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성을 고려하여 처리방법 등을 결정해야 한다.
- 다. 혼합확인을 위한 시료의 혼합비율은 수탁폐수와 혼합하려는 폐수의 양의 비율로 한다.
- 라. 폭발성 가스를 측정할 경우에는 주변에 전기, 불꽃, 화염, 마찰열 등 발화 원인이 없는지 확인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시행한다.
- 마. 혼합확인을 하는 자는 보호장갑, 보호경 등 개인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2. 수탁폐수 간 혼합확인 시 확인사항

- 가. 폐수처리업자는 수탁폐수를 다른 수탁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려는 경우 유해성등을 확인해야 하며, 확인사항 및 확인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확인사항	확인기준
1) 부식성	수소이온농도	pH 2.0 이하 강산성 또는 pH 11.5 이상 강염기
2) 폭발성	가연성가스농도	메탄 10% 이상
3) 자연발화성	자연발화 여부	5분 이내 자연발화 여부
4) 유해성	황화수소농도	10ppm 이상
	이산화탄소농도	1.5% 이상
	산소농도	18% 미만 또는 23.5% 이상

- 나. 가목에 따른 확인사항을 확인할 때에 유해성등의 확인기준을 초과하여 폭발,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혼합하지 않고 별도로 처리해야 하며, 그 밖에 작업자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폐수처리업자의 시설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폐수의 처리를 위탁한 자에게 반송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다. 수탁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할 때 10°C 이상의 급격한 온도 상승이나 가스·연기·악취 등의 이상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 혼합 처리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3. 확인사항별 확인방법

가. 부식성

- 1) 혼합확인을 위한 시료는 내부식성(부식을 견디는 성질) 용기에서 혼합한다.
- 2) 혼합 직후의 수소이온농도(pH)와 10분간 교반(휘저어 섞음) 후 수소이온농도를 측정하여 측정값의 변화를 관찰한다.
- 3) 수소이온농도의 측정은 pH 측정기기를 활용해야 한다.

나. 폭발성 및 유해성

- 1) 혼합확인을 위한 시료는 밀폐용기에서 혼합한다.
- 2) 밀폐용기의 공기층에 흡입용 호스를 삽입한 후 가스농도측정기로 혼합직후의 가스농도와 30분 후의 가스농도를 측정하여 측정값의 변화를 관찰한다.

다. 자연발화성

- 1) 혼합 직후의 온도와 10분간 교반 후의 온도를 측정하여 측정값의 변화를 관찰한다.
- 2) 혼합폐수를 규조토 또는 실리카겔을 채운 500ml 용량의 자기(瓷器)로 된 용기에 부어 5분 이내에 발화하는지를 확인한다.

4. 기타

가. 수탁폐수의 혼합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이후 같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같은 성상의 수탁폐수에 대해서는 혼합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배출공정 등의 변경으로 수탁폐수의 성상이 변경되었거나 성상이 변경될 수 있는 경우에는 혼합확인을 해야 한다.

나. 수탁폐수 중 사진현상 등과 관련된 폐수(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 폐수부호 중 P-1부터 P-6까지의 폐수를 말한다. 이하 "사진폐수"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른 종류의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지 않고 해당 사진폐수만을 별도로 수거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혼합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다. 혼합확인에 사용되는 측정기기는 공인기관의 검정·교정을 받아야 하며, 검정·교정 성적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라. 폐수처리업자는 혼합확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결과를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폐수처리시설의 검사기준(제91조의2제1항 관련)

1. 저장시설

- 가. 저장용량은 최대 처리량의 3일분 이상일 것
- 나. 폐수처리방법별로 구분·저장할 수 있도록 구획·표시되어 있을 것
- 다. 저장폐수에 부식되지 않는 재질일 것
- 라. 유입폐수와 보관된 폐수의 적산유량을 계측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마. 그 밖에 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에 맞는 구조·성능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2. 처리시설

- 가. 개별 처리시설의 처리능력 및 처리시설의 합계 처리능력 기준을 준수할 것
- 나.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 구조와 부대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을 것
- 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것
- 라. 작업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구 및 안전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 마.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않은 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것
- 바. 그 밖에 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에 맞는 구조·성능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91조제3항 관련)

1. 기술인력을 그 해당 분야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폐수처리시설을 16시간 이상 가동할 경우에는 해당 처리시설의 현장근무 2년 이상의 경력자를 작업현장에 책임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삭제 <2015.12.22.>
3. 삭제 <2015.12.22.>
4. 폐수처리를 수탁요청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수거를 지연하여 위탁자의 사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5. 삭제 <2014.1.29>
6. 폐수는 처리방법별(재이용업의 경우 성상별)로 분리하여 수거·운반 및 저장하여야 하고, 그 처리와 관련한 각종 기록을 정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그 기록문서 또는 전산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7. 폐수를 수탁받은 때에는 한국산업수처리협회에서 일련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44호서식의 폐수(위)수탁확인서를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입력하고 확인해야 하며, 거짓으로 입력해서는 안 된다.
8. 폐수처리업자가 휴업·폐업 또는 행정처분에 의한 영업정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위탁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수탁한 폐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상 보관할 수 없으며, 보관폐수의 전체량이 저장시설 저장능력의 90퍼센트 이상 되게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반기별로 수탁폐수(재이용폐수를 포함한다)의 위탁업소별·성상별 수탁량·처리량(재이용량을 포함한다)·보관량 및 폐기물처리량 등을 다음 반기의 시작 후 10일 이내에 시·도지사, 관할 등록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1. 허가를 받은 폐수운반장비로 수탁폐수 외의 다른 화물을 운반하는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2. 운반장비·저장시설 및 처리시설은 항상 허가요건에 맞게 유지하여야 한다.
13. 별표 13의 “나지역”에 입지한 시설 중 하수처리구역 또는 공공폐수처리구역 외의 지역에 입지한 시설은 별표 13에도 불구하고 “가지역”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14. 처리 후 발생하는 슬러지의 수분 함량은 85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15. 별표 20 제2호나목3)라) 및 마)에 따른 물리화학적처리시설 및 생물화학적처리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관에서 인정한 수탁처리대상의 폐수에 한정하여 수탁해야 하며, 그 폐수는 해당 처리방법별로 분리·저장해야 한다.

16. 소각시설의 악취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의 제거를 위해 연소실 출구 배출가스 온도는 최소 850℃ 이상, 체류시간은 최소 1초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초기 승온은 850℃ 이상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처리대상 폐수를 투입하여야 한다.
17. 증발농축시설, 건조시설, 소각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매월 1회 자가측정하여야 하며, 분기마다 악취에 대한 자가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18. 별표 20 제2호나목3)라) 및 마)에 따른 물리화학적처리시설 및 생물화학적처리시설의 처리수에 대하여는 별표 20 제3호나목1)부터 15)까지 중 수탁폐수에 함유된 항목을 주 1회 이상 수질오염물질 분석을 실시하여 적정 운영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방법(제92조의2 관련)

1.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입력하려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산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 가. 컴퓨터
 - 나. 이동형 통신수단
 - 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장비
2. 한국환경공단은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또는 통신망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와 복구시간을 지체 없이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사용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사용자는 장애기간동안 입력하지 못한 인계·인수 내용을 장애복구 후 입력해야 한다.
3.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기한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가. 인계내역 입력 : 폐수를 위탁하기 전까지. 다만, 인계내역을 입력하려는 자가 수탁처리폐수의 양을 정확히 알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인계일부터 4일 이내에 인계내역을 확정하여 입력해야 한다.
 - 나. 인수내역 입력 : 폐수 인수일로부터 3일 이내
4. 그 밖에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폐수의 인계·인수 내용을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과 절차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행정처분기준 (제10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다만,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사목의 처분기준이 모두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처분기간이 긴 처분기준에 따르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준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처분기간이 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최근 1년(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2. 개별기준

- 가. 폐수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하고, 아래 표 중에서 8), 9), 14)의 경우에는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을 포함한다) 및 방지시설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를 하고 조업 중인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폐수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결함·고장 또는 운전미숙 등으로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가)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법 제39조, 법 제40조, 법 제42조제1항제1호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5일
				나)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안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조업정지 10일
2) 거짚이나 그 밖의 부정확한 방법으로 법 제33조제1항부	법 제42조 제1항제2호	허가취소 또는			

<p>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경우</p>		폐쇄명령			
<p>3) 법 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법 제42조제2항제1호</p>	경고	경고	<p>조업정지 5일</p>	<p>조업정지 10일</p>
<p>4) 법 제35조에 따른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행정처분</p>	<p>법 제42조제1항제7호</p>				
<p>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p>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p>나) 영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방지시설을 변경하여 가동한 경우</p>		개선명령	조업정지 10일	<p>조업정지 20일</p>	<p>조업정지 30일</p>
<p>5)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시작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한 경우</p>	<p>법 제42조제1항제9호</p>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p>6)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p>	<p>법 제42조제1항제10호</p>				
<p>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한 경우</p>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p>(1)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의 경우</p>		3개월			
<p>(2) (1) 외의 경우</p>		10일	조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p>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p>					

<p>을 설치한 경우 (1)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의 경우</p>	<p>조업정지 3개월</p>	<p>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p>		
<p>(2) (1) 외의 경우</p>	<p>조업정지 10일</p>	<p>조업정지 30일</p>	<p>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p>	
<p>다) 방지사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배관·장치 등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p>	<p>조업정지 3개월</p>	<p>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p>		
<p>(1)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의 경우</p>	<p>조업정지 10일</p>	<p>조업정지 30일</p>	<p>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p>	
<p>(2) (1) 외의 경우</p>	<p>조업정지 10일</p>	<p>조업정지 30일</p>	<p>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p>	
<p>라)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수질오염물질을 희석하여 배출한 경우</p>	<p>경고</p>	<p>조업정지 10일</p>	<p>조업정지 20일</p>	<p>희석인정 취소</p>
<p>마)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인정을 받은 희석배출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p>	<p>조업정지 3개월</p>	<p>허가취소 또는</p>		
<p>바) 그 밖에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사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p>	<p>조업정지 3개월</p>	<p>허가취소 또는</p>		
<p>(1)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배출시설</p>				

의 설치제한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2) (1) 외의 경우			폐쇄명령			
사) 가)부터 바)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중대한 수질오염을 일으켜 취수중단 또는 사람·가축에 대한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7)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보존·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2조제2항제2호	경고	경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8) 다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법 제4조의6제4항, 법 제40조 및 법 제42조에 따른 조업정지 명령을 받은 자가 조업정지일 이후에 조업을 계속한 경우	법 제4조의6제4항, 법 제42조제1항제14호 법 제4조의6제4항, 법 제42조제1항제13호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9)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기간(연장기간을 포함한다)내에 이행 보고를 하였으나 검사 결과 할당부하량등을 계속 초과하거나 개선명령을 받은 원인이 되는 같은 항목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4조의6제4항, 법 제40조	개선명령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10) 법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						

<p>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p>						
<p>가) 그 지역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 경우</p>	<p>법 제44조 본문</p>	<p>사용중지</p>				
<p>나) 폐수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p>	<p>법 제44조 단서</p>	<p>폐쇄명령</p>				
<p>다) 그 지역이 다른 법률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p>	<p>법 제44조 단서</p>	<p>폐쇄명령</p>				
<p>라) 그 지역이 법 제33조제8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인 경우</p>	<p>법 제42조 제1항제6호</p>	<p>폐쇄명령</p>				
<p>1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p>	<p>법 제42조제1항제3호</p>	<p>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p>				
<p>12)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던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철거한 경우</p>	<p>법 제42조제1항제15호</p>	<p>허가취소</p>				
<p>13) 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과 관련된 행정처분</p>	<p>법 제42조 제2항제3호</p>					
<p>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p>		<p>환경기술인 선임명령</p>	<p>경고</p>	<p>조업정지 5일</p>	<p>조업정지 10일</p>	
<p>나) 환경기술인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된 경우</p>		<p>경고</p>	<p>경고</p>	<p>경고</p>	<p>조업정지 5일</p>	

다) 환경기술인이 비상근인 경우		경고	경고	경고	조업정지 5일
14) 법 제5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0조 제4항	경고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 비고: 1.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1) 또는 9)의 개선명령 기간은 8개월 이상 부여하여야 한다.
- 2) 8)의 나)의 조업정지일수는 조업정지기간 중 조업일수의 4배로 한다.
 3. 조업정지(사용중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기간은 조업정지처분서에 명시된 조업정지일부터 4)의 가)의 경우에는 방지시설설치 완료일까지, 8)의 가)의 경우에는 그 시설의 조치 또는 개선 완료일까지, 5)와 10)의 가)의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 가동시작 신고일까지로 한다.
 4. 6)의 가)부터 바)까지의 위반행위 중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다시 6)의 가)부터 바)까지의 위반행위 중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위반행위 차수는 합산하여 산정한다.
 5. 2), 4), 5), 6), 8)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의 경우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허가취소를 적용하고,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폐쇄명령을 적용한다.
 6.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1) 또는 9)의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50퍼센트(특정수질유해물질인 경우에는 3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처분기준보다 1단계 낮은 차수의 기준(해당 위반이 최초 또는 5회차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200퍼센트 이상 600퍼센트 미만(특정수질유해물질인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처분기준보다 1단계 높은 차수의 기준을 적용하며,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600퍼센트 이상(특정수질유해물질인 경우에는 30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보다 2단계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7. 비고 6에도 불구하고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1) 또는 9)의 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 위반횟수가 2회차 이상인 경우에는 1단계 낮은 차수의 기준을 적용한다.
 8.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에는 1)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최근 1년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3)·7) 또는 13)의 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 1단계 낮은 차수의 기준을 적용한다(해당 위반이 최초 또는 5회차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10. 법 제38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 중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자가 1)의 조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개선명령을 적용한다.
 11. 법 제38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은 정상적으로 측정된 24시간 평균치가 1회 이상 배출허용기준(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적용한다. 이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은 법 제50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제25조에 따른다.

나. 측정기기 설치·운영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 차	2 차	3 차	4 차
1)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사업장 안의 일부 측정기기 미부착 나) 사업장 안의 모든 측정기기 미부착	법 제42조제1항제11호	경 고	경 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경 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2) 법 제3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가동시에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2호	경 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3) 법 제3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부식·마모·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여 측정항목별 상태정보(동작불량·통신불량·일시정지)가 1일 2회 이상 나타나는 경우가 연속 7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2호	경 고	경 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4) 법 제38조의3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 결과를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작성하는 경우 가) 측정 관련 프로그램이나 전류의 세기 등 측정기기를 조작하는 경우 나) 표준액의 표준값을 거짓	법 제42조제1항제12호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경 고	경 고	조업정지	조업정지

으로 입력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5일	10일
5) 법 제38조의3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측정기기 관리 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2호	경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6) 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8조의3제2항				
가) 측정기기가 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부합하지 아니 하도록 한 경우		경고	조치명령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나) 영 제37조에 따른 수질 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에 측정자료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조치명령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7)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38조의4제2항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조업정지 30일
8)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3호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		

- 비고: 1. 1), 4), 7)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의 경우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허가취소를 적용하고,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폐쇄명령을 적용한다.
2. 8)의 조업정지일수는 조업정지기간 중 조업일수의 4배로 한다.
3.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에는 6)의 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법 제38조의2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조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적용한다.

다. 법 제3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1) 영 제33조제1호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사유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p> <p>가)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p> <p>(1)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의 경우</p> <p>(2) (1) 외의 경우</p> <p>나) 폐수배출시설의 변경 없이 사용원료·부원료 등을 변경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p> <p>(1)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의 경우</p> <p>(2) (1) 외의 경우</p>	<p>법 제35조제3항, 법 제39조, 법 제42조</p>	<p>조업정지 3개월</p> <p>개선명령</p> <p>조업정지 3개월</p> <p>개선명령</p>	<p>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p> <p>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p> <p>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p> <p>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p>		
<p>2)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위탁처리한다는 사유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p>	<p>법 제35조제3항, 법 제42조</p>				

가) 폐수를 위탁하지 아니하고 그냥 배출한 경우	조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1)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2) (1) 외의 경우	경고	경고	폐쇄명령 허가취소 또는
나) 폐수성상별 저장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경고	폐쇄명령 허가취소 또는
다) 제38조제2항제4호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수처리업자를 변경한 경우	경고	경고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라) 폐수수탁처리계약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경고	경고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마) 폐수위탁처리시 실적을 기간 내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경고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바) 성상이 서로 다른 폐수를 혼합보관한 경우	경고	경고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사) 그 밖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경고	경고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3) 영 제33조제3호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으로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한다는 사유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법 제35조제3항, 법 제39조, 법 제40조		
가) 폐수(위탁처리폐수 및 배출해역을 지정받아 해역에 배출하는 폐수는 제외한다)가 외부로 배출된		경고	경고

경우 (1)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2) (1) 외의 경우	조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나) 폐수처리 실적을 기간 내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경고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다)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폐수등 액상 수질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한 경우	경고	경고	경고		
라) 그 밖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개선명령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경고	경고	경고	경고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비고: 1. 위 표 중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의 경우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허가취소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폐쇄명령을 적용한다.

2. 삭제 <2024. 11. 7.>

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2호	허가취소			
2) 법 제35조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행정처분	법 제42조				
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무방류배출시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p>설을 가동한 경우</p> <p>나)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31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의 변경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하여 가동한 경우</p>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p>3)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한 경우</p>	법 제42조	조업정지	허가취소		
<p>4)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p> <p>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한 경우</p> <p>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사업장밖으로 반출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p> <p>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폐수배출시설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한 경우</p> <p>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폐수배출시설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p> <p>마)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폐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거나 화장실 용수·조경용수 또는</p>	법 제42조	조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조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조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한 경우					
5) 4)의가)부터 마)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취수중단 또는 사람·가축에 대한 피해발생 등 중대한 수질오염을 일으킨 경우		허가취소			
6)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보존·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2조 제2항제2호	경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조업정지 30일
7)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착한 기기의 고장을 방지한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11호 및 제12호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허가취소	
8) 법 제42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조업정지일 이후에 조업을 계속한 경우	법 제42조	조업정지	허가취소		
9)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4호				
가) 그 지역이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 경우		사용중지			
나) 방지시설의 개선 등에도 불구하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폐쇄명령			
다) 그 지역이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인 경우		폐쇄명령			
10) 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과 관련된 행정처분	법 제42조제2항제3호				

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환경기술인 선임명령	경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나) 환경기술인의 자격이 기 준에 미달된 경우	경고	경고	경고	조업정지 5일
다) 환경기술인이 비상근무 인 경우	경고	경고	경고	조업정지 5일

비고: 1. 사용중지기간은 해당 시설의 개선 완료일까지로 한다.

2. 4)가)부터 마)까지의 위반행위 중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다시 4)가)부터 마)까지의 위반행위 중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위반행위차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3. 3)의 조업정지기간은 폐수배출시설 가동시작신고일까지로 한다.

4. 8)의 조업정지일수는 조업정지기간 중 조업일수의 4배로 한다.

마. 비점오염원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법 제53조제5항 및 영 제75조에 따른 저감시설의 관리·운영의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저감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나) 저감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법 제53조제7항	저감시설 설치명령 저감시설 개선명령			

바. 기타 수질오염원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법 제60조제9항	경고	사용중지		
		경고	경고	사용중지	

경우					
2) 법 제6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조치가 부적합한 경우	법 제60조제7항·제8항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비고: 조업정지(사용중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비고에서 같다)기간은 조업정지처분서에 명시된 조업정지일부터 1)의 경우에는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신고·변경신고일까지, 2)의 경우에는 조치를 끝낸 날까지로 한다.

사. 폐수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1호 본문	허가취소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2호	허가취소			
3) 허가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영업활동에 사용하게 한 경우	법 제64조 제2항제1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4)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3호	허가취소			
5)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가 허가요건에 미달된 경우	법 제64조 제3항제2호				
가) 허가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나) 1월 이상 실험실이 없는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다) 구비하여야 할 시약 또는 초자류가 부족한 경우		경고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라) 구비하여야 할 시약 또는 초자류가 전혀 없는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마) 구비하여야 할 실험기기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및 장비가 부족한 경우			10일	20일	1개월
바) 구비하여야 할 실험기기 및 장비가 없는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사) 저장시설이 허가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아) 처리시설이 허가요건에 위반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자) 그 밖의 허가요건에 미달된 경우		경고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0일
6) 처리시설 또는 처리방법을 무단변경한 경우	법 제64조 제3항제1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7) 운반차량과 관련하여	법 제64조				
가) 운반차량이 전혀 없는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운반차량에 표시가 없는 경우		경고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다)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반차량을 증차 또는 감차한 경우		경고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라) 타인의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폐수를 운반하거나 성상별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혼합하여 운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8) 폐수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방류한 경우	법 제64조 제2항제3호				
가) 취수중단 또는 사람 및 가축에 대한 피해발생 등 중대한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경우		영업정지 3개월 또는 허가취소	허가취소		
나) 그 밖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9) 방지시설의 결함, 가동요원의 기술미숙 등으로 처리한 폐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64조	경고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10) 폐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64조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타인에게 위탁처리한 경우						
11)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한 경우	법 제64조제3항제1호	경고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12) 휴업·영업정지사항을 위탁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여 위탁자가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4조	경고	10일 10일	1개월 1개월	2개월 2개월	
13) 반기별 처리실적 보고를 지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법 제64조	경고	경고	영업정지 10일		
14)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제3항제1호	경고	경고	영업정지 10일		
15) 폐수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 기한까지 입력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16) 폐수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법 제64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7) 배출해역 지정기간이 끝난 경우	법 제64조	허가취소				
18) 「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법 제64조	허가취소				
19) 기술요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67조에 따른 교육에 불참하게 한 경우	법 제64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0) 영업정지처분기간 중에 폐수처리업 영업을 한 경우	법 제64조	영업정지	영업정지	허가취소		
21)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아니한 배관을 설치한 경우	법 제64조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22) 폐수방류구를 외부에서 볼 수 없도록 하거나, 시료채취가 쉽지 아니하도록 설치한 경우	법 제64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30일	허가취소	
23) 허가기관에서 인정한 수탁처리대상이 아닌 폐수를 수탁한 경우	법 제64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4) 자가측정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64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5) 측정기기(하수·폐수적산유량계)의 고장을 방치하거나 측정자료를 고의로 조작하는 경우	법 제64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6) 폐수처리업의 정기검사 기한 내에 받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제3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7)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제3항제4호				
가) 폐수처리업자가 정기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지 않은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나) 폐수처리업자가 정기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지 않은 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8) 그 밖에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제3항제2호	경고	경고	영업정지 10일	

비고: 폐수처리업자의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제2호 가목의 처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이 병행될 때에는 그 기준 중 제2호 사목의 처분기준에서 정한 행정처분과 병행하여 처분한다.

위임업무 보고사항(제107조제1항 관련)

업무내용	보고횟수	보고기일	보고자
1.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상황검사,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	연 4회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시·도지사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현황	수시	허가(변경허가) 후 10일 이내	시·도지사
3. 기타 수질오염원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시·도지사
4. 폐수처리업에 대한 허가·지도단속실적 및 처리실적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시·도지사
5. 폐수위탁·사업장 내 처리현황 및 처리실적	연 1회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시·도지사
6. 환경기술인의 자격별·업종별 현황	연 1회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시·도지사
7. 배출업소의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	연 4회	매분기 종료후 15일 이내	시·도지사
8. 배출부과금 부과 실적	연 4회	매분기 종료후 15일까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9. 배출부과금 징수 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10. 배출업소 등에 따른 수질오염사고 발생 및 조치사항	수시	사고발생시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11. 과징금 부과 실적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	시·도지사
12. 과징금 징수 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	시·도지사
13.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및 방지시설 설치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	연 4회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14. 골프장 맹·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 확인 결과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	시·도지사
15. 측정기기 부착시설 설치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16. 측정기기 부착사업장 관리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17. 측정기기 부착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18.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대한 등록·변경등록, 관리대행능력평가·공시 및 행정처분 현황	연 1회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19. 수생태계 복원계획(변경계획) 수립·승인 및 시행계획(변경계획) 협의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20. 수생태계 복원 시행계획(변경계획) 협의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 명세서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 오염부하량 할당, [] 배출량 지정 내용을 통보합니다.

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 내용

사업장명	시설명			
할당된 오염부하량 및 지정된		년	월	일부터
배출량 이행시기				
최종방류구	오염부하량 할당량	배출량 지정량		
분류기호 및 위치	(kg/일)	(L/일)		
최종방류구	오염부하량 할당량	배출량 지정량		
분류기호 및 위치	(kg/일)	(L/일)		
최종방류구	오염부하량 할당량	배출량 지정량		
분류기호 및 위치	(kg/일)	(L/일)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배출량 추가 지정서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5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배출량을 지정합니다.

배출량 추가지정 내용

사업장명	시설명	
최종방류구 분류기호 및 위치	추가 배출량 지정량	(L/일)
최종방류구 분류기호 및 위치	추가 배출량 지정량	(L/일)
최종방류구 분류기호 및 위치	추가 배출량 지정량	(L/일)
최종방류구 분류기호 및 위치	추가 배출량 지정량	(L/일)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조치
 조업정지
 폐쇄 명령 이행보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허가(신고)번호	제	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4일(검사기간 제외)
----------	---	---	------	------------------

보고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보고 내용	사업종류			
	오수·폐수시설명			
	개선(조치·조업중지·폐쇄) 사항			
	개선(조치·조업중지·폐쇄) 이행일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6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
 조업정지 명령을 이행하였음을
 폐쇄
보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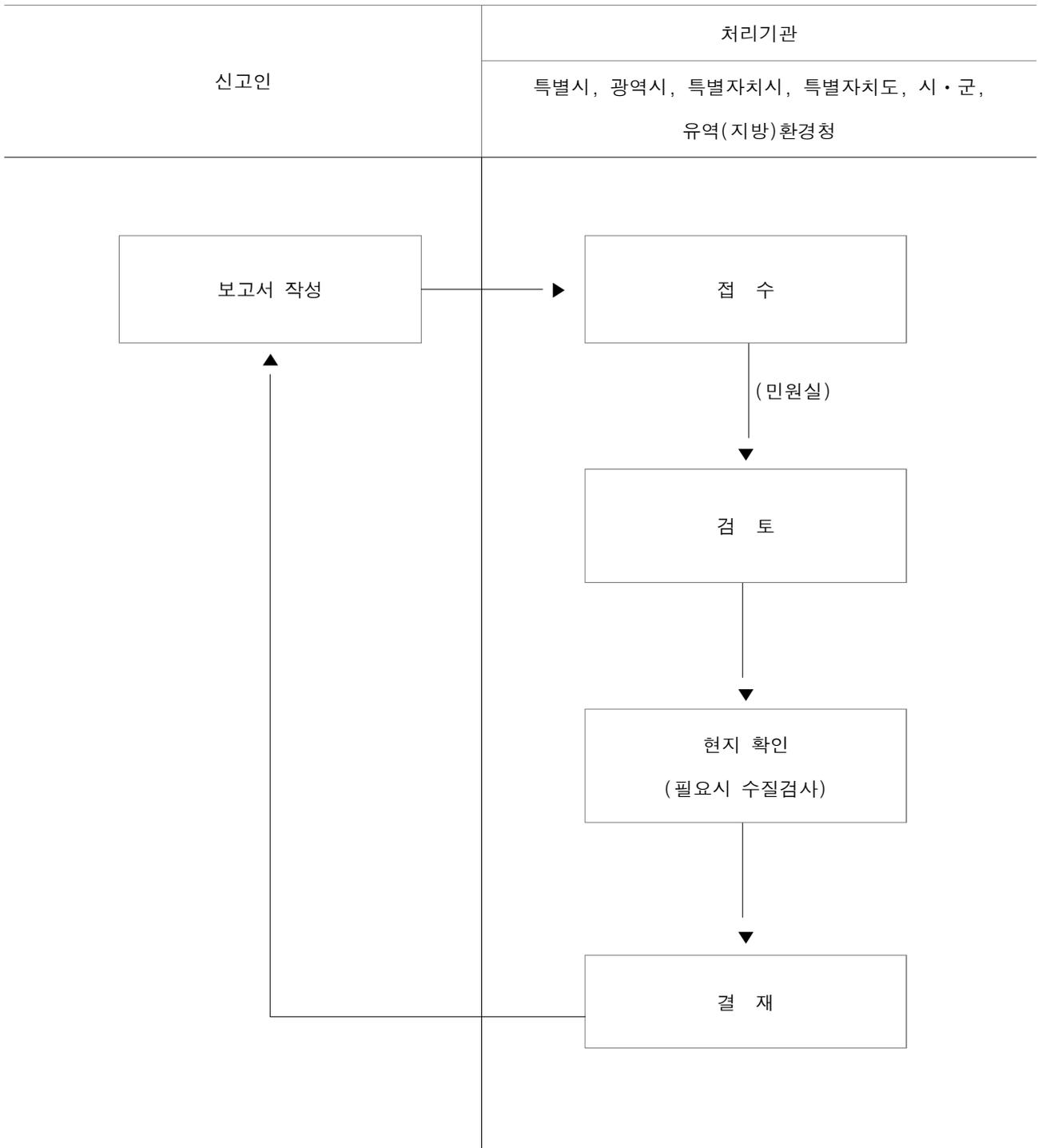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고지서원부(세입징수관용)

발행번호				납기일자			
회계연도				고지일자			
납입자	성명·상호 납입자번호 주소			세입징수관명 국고계좌:			
회계		소관		관	항	목	
과목				년 월			
납기 내 금액				징수금 산출근거			
가산금							
납기 후 금액 (납기)							

세입징수관:

직인

170mm×105mm(전산용지)

고지서 겸 영수증(납입자)

발행번호				납기일자			
회계연도				고지일자			
납 입 자	성명·상호				세입징수관명 국고계좌:		
	납입자번호 주소						
회 계		소 관		관	항	목	
과 목					년 월		
납기 내 금액		징수금 산출근거					
가 산 금							
납기 후 금액 (납 기)							

위 금액을 정히 징수합니다.

위 금액을 납입기한까지 한국은행·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은행 ()점
 ()우체국
 ()출납공무원

영수인

세입징수관:

직 인

영수증명 통지서(세입징수관용)

발행번호				납기일자			
회계연도				고지일자			
납입자	성명·상호 납입자번호 주소			세입징수관명 국고계좌:			
회계		소관		관	항	목	
과목				년 월			
납기 내 금액				세입징수관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가산금							
납기 후 금액 (납기)							

()은행 ()점
 ()우체국
 ()출납공무원

영수인

납부서(한국은행용)

발행번호				납기일자			
회계연도				고지일자			
납입자	성명·상호	세입징수관명			국고계좌:		
	납입자번호 주소						
회계		소관		관	항	목	
과목				년	월		
납기 내 금액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은행장 귀하 위 금액을 수납·납부합니다. 년 월 일</p>					
가산금							
납기 후 금액 (납기)							

()은행 ()점
()우체국
()출납공무원

영수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

1. 일반 현황

- 업 소 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2.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

오 염 물질명	배출농도 (mg/L)	할당 오염부하량 (kg/일)	지정 배출량 (L/일)	일일유량 (L/일)	지역별 부과 계수	배출기간 (일)	오염총량 초과과징금 부과에 따른 위반횟수

◦ 시료채취일: ◦ 개선완료일: (개선기간 중 휴무일: 일)

가. 수질오염물질 1kg당 연도별 부과단가: _____ 원(A)

나. 초과오염배출량(일일초과오염배출량×배출기간): _____ kg(B)

일일초과오염배출량: _____ kg

※ 일일오염배출량이 할당 오염부하량을 초과하는 경우: (일일유량×배출농도×10⁻⁶ - 할당 오염부하량)값과 [(일일유량-지정배출량)×배출농도×10⁻⁶]값 중 큰 값

다. 초과율별 부과계수: _____ (C)

라. 지역별 부과계수: _____ (D)

마.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_____ (E)

바. 감액: _____ (F)

사. 오염총량초과과징금=(A)×(B)×(C)×(D)×(E)-(F) _____ 원

가산금: 오염총량초과과징금×3/100 _____ 원

납기 후 과징금: 오염총량초과과징금+가산금 _____ 원

※ 비고: 바목의 감액이란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7제4항에 따른 배출부과금 또는 과징금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작성일자: 년 월 일

작 성 자: (서명 또는 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당초 부과명세	납부통지서 수령일	납부통지서 코드번호
	부과일시	부과금액
	납부기한	
환급금수령 계좌번호		
조정 신청사유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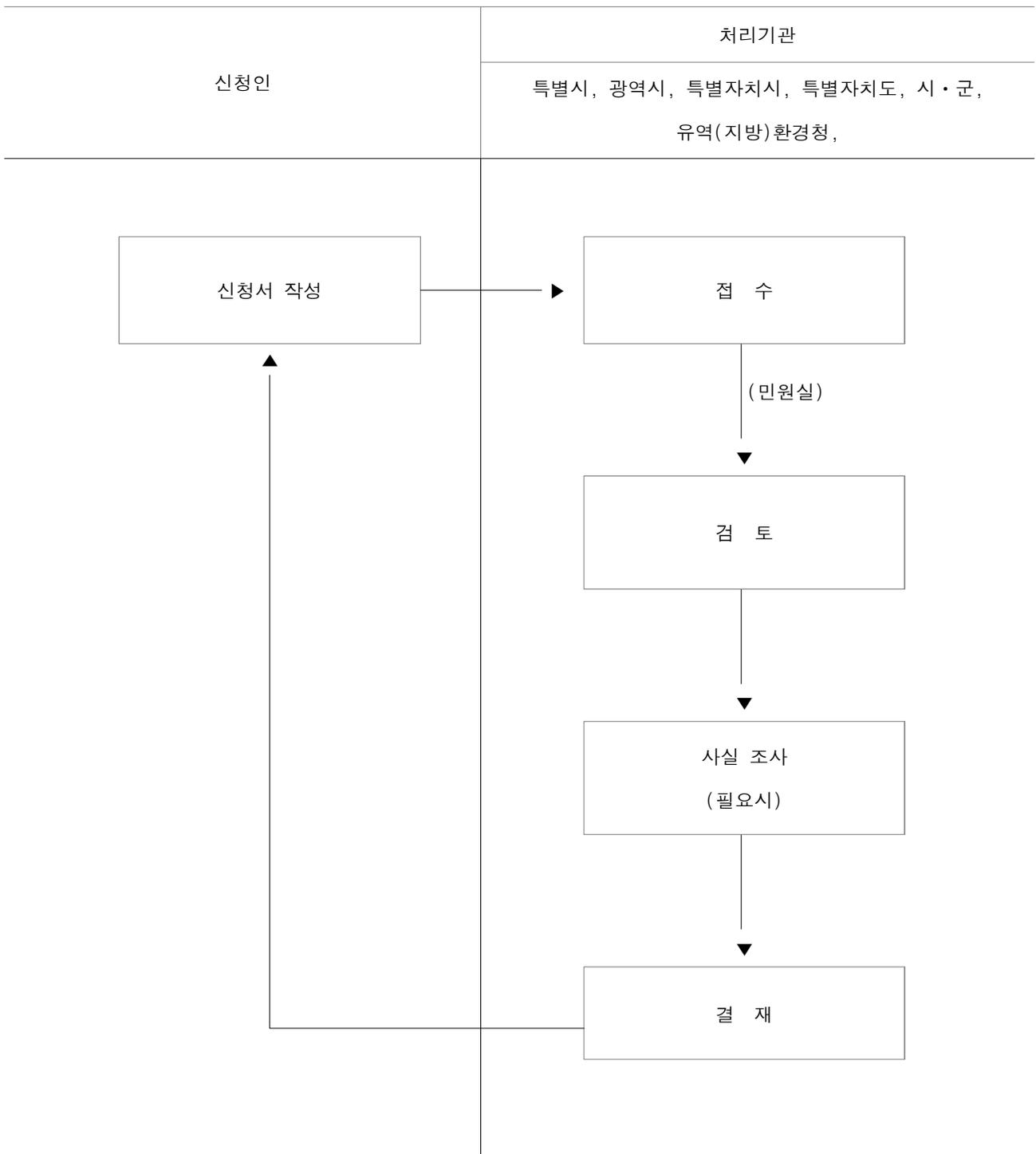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오염총량초과과징금 [] 조정 부과 통지서
[] 환 급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 부과, []환급함을 알려드립니다.

통지내용		[] 조정 부과 [] 환 급				
계	과징금	미 수 과징금	[]조정부과 []환 급 과징금	[]조정부과 []환 급 결정일자	[]수 급 []환 급 은행 및 계좌번호	기 타

사 유 ([] 조정 부과 [] 환급):

납부통지서 코드번호:

끝 .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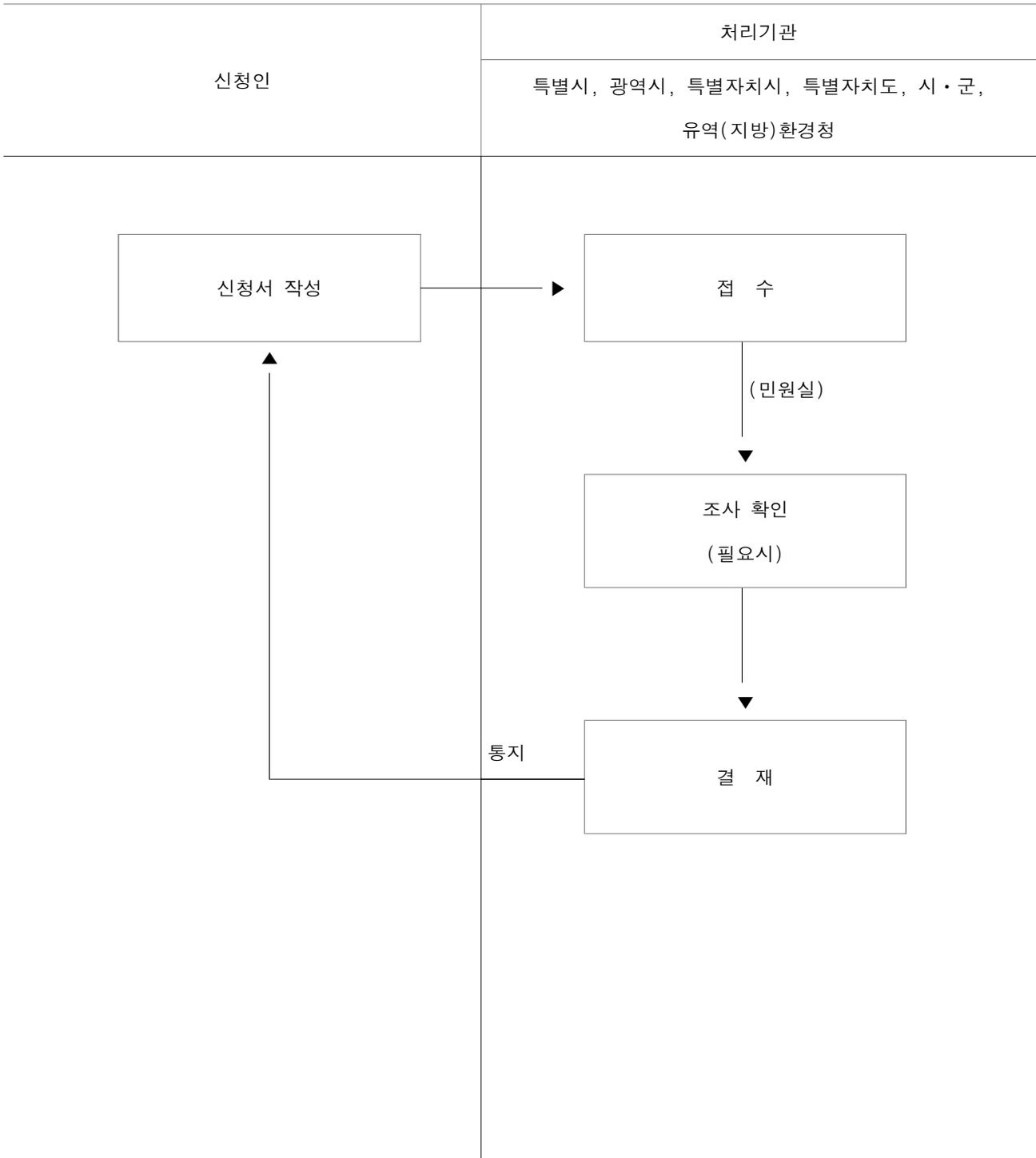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처 리 절 차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통행제한 도로·구간 통행증

The diagram shows a circular yellow permit with a diameter of 100mm. The permit is divided into three horizontal sections. The top section is 30mm high and contains the text "No. _____". The middle section is 70mm high and contains the text "통행증" in large blue characters. The bottom section contains the following text: "1. 자동차 등록번호 :", "2. 통행기간 : ~ (년)", "3. 대상도로 (호)", "가. 시점:", "나. 종점:", "년 월 일", and "○○○○ 인".

- 비고: 1. 바탕색은 노란색으로 합니다.
2. "통행증" 글씨는 청색으로 하고 그 밖의 글씨는 검은색으로 합니다.

100mm × 100mm(부착용 특수가공지 70g/m²)

통행증발급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주소	
소유자	성명	
	주소	
자동차	종류(명칭)	
	등록번호	
	용도	
차의 운행	통행기간	
	대상도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통행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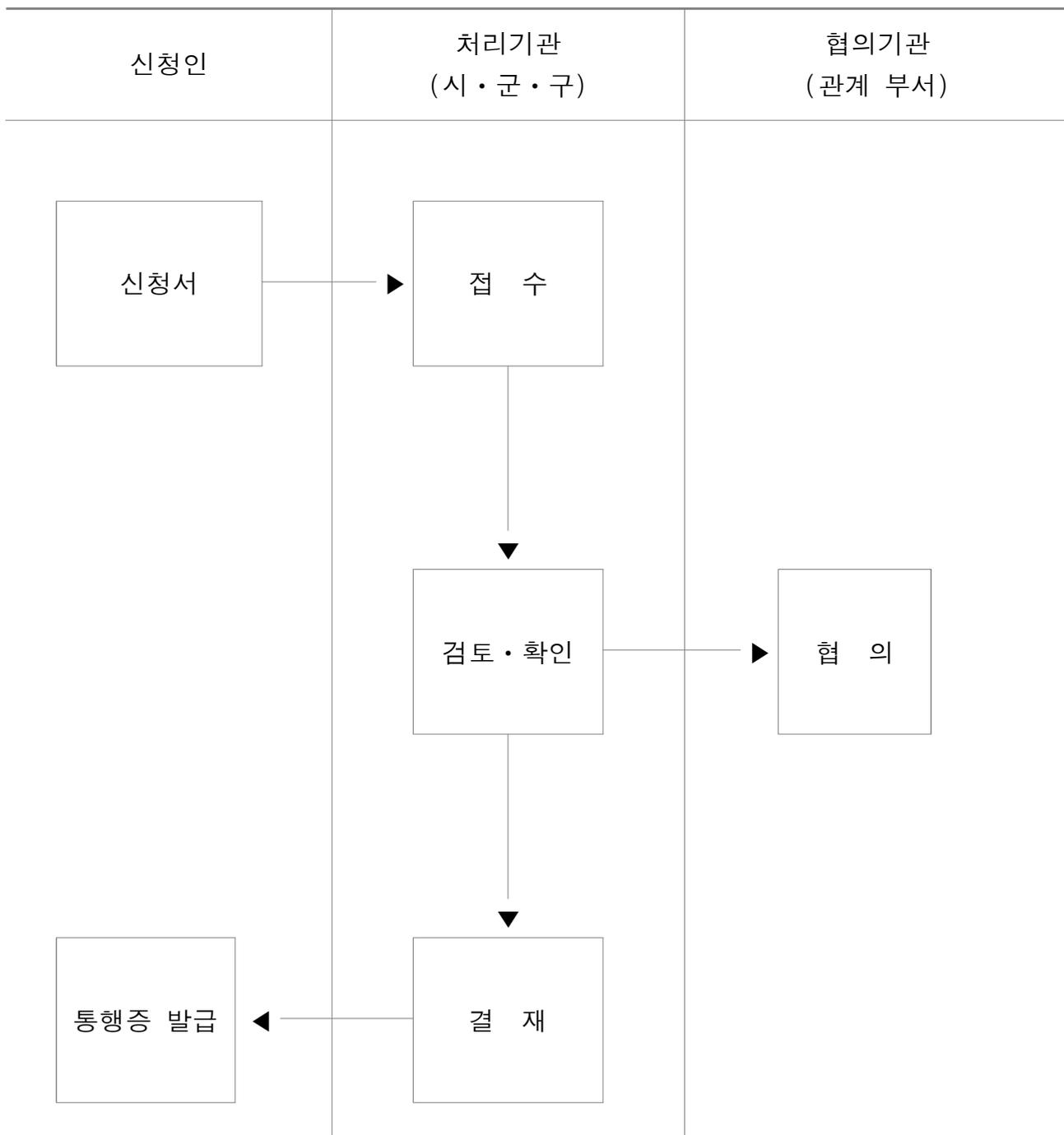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1.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이 법인일 경우는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적으십시오.
2. 통행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통행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토지등의 매수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외의 물건	종류
		등기 설정 여부
희망가격(백만원)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입목등록원부 또는 입목등기부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오수·폐수발생량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대리인의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합니다) 4.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5. 지적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폐수배출시설 설치 [] 허가신청서 []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뒤쪽참조
------	------	------	------

신청 (신고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 (신고) 내용	사업종류 (분류번호)	주생산품		
	설치개시 예정일 년 월 일	가동개시 예정일 년 월 일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배출시설명	제품별 생산능력 (/일)	폐수배출량(m ³ /일)	폐수처리의 방법 및 능력
	폐수배출시설의 조업시간 및 연간 가동일 ()시간/일, ()일/년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조업시간 및 연간 가동일 ()시간/일, ()일/년		
	수질오염물질 배출항목			
	측정기기 부착항목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 해당(신고서 제출여부 []제출 []미제출) [] 해당없음		
	사업장 부지면적(m ²)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7조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 설치허가를 신청 [] 설치를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 1만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9,000원)
------	-------	--

첨부서류	<p>1. 일반 제출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p> <p>가.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p> <p>나.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p> <p>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p> <p>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4호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를 증명하는 서류</p> <p>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p> <p>가.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p> <p>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p> <p>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p> <p>3.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p>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p>1.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p> <p>2.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p>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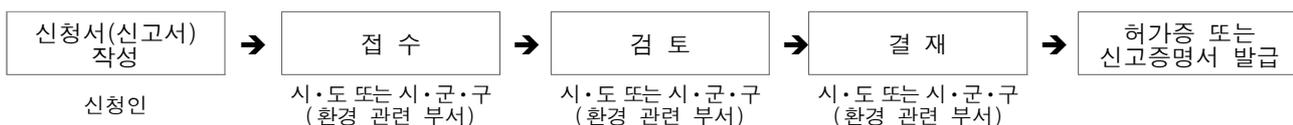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 처리기간: 10일(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60일)

1. 대표자란에는 법인의 경우 성명 대신 직함을 적어도 됩니다.
2.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에는 사업장 내 폐수배출시설의 위치, 용수·폐수의 흐름과 그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의 부착위치 및 종류를 표시하고, 폐수배출공정흐름도에는 원료의 최초 투입부터 최종제품이 생산될 때까지의 전 공정에 대하여 원료·부원료·첨가물, 용수의 투입점과 폐수·폐기물 및 제품의 배출점(정비 시의 배출점은 제외합니다)을 나타내야 하며, 복수 또는 다수의 공정인 경우에는 이를 각각 나타내야 합니다.
3.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 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 원료·부원료·첨가물의 사용량 및 제품생산량은 월간 및 연간 최대량·평균량을 적되, 다수의 폐수배출시설이 일련의 연속공정인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나. 용수는 공급원(지하수·하천수 등)별 및 사용목적(공정용수·간접냉각수 등)별 일일 최대량·평균량을 적어야 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제출하는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수질오염물질 발생예측서에는 발생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오염도, 폐수량, 폐기물량에 대한 최대·평균 예측치 및 산출방법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4. 수질오염방지시설설치명세서는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방법, 처리능력, 처리효율, 시설명칭 및 용량, 운전요령과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재생방법, 이용방법, 사업장 안에서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처리하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도면에는 방지시설업 등록사항 및 설계자, 최종 방류수량 및 방류수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의 부착 위치(해당 사업장으로 한정합니다), 최종방류구의 위치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5.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세부 설치기준 이행계획서에는 처리수의 재이용방법이 포함되어야 하고, 재이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의 부착 위치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6.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2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제2호에서 정하는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비점오염원 신고대상란에 표기하고, 신고대상인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처리 절차



폐수배출시설 변경 [] 허가신청서 [] 신고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허가(신고)번호	제 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뒤쪽참조
----------	-----	------	------	------

신청인 (신고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설치개시 예정일	가동개시 예정일
----------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 해당(신고서 제출여부 []제출 [] 미제출) [] 해당없음
	사업장 부지면적(㎡)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본문,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물환경보전법」 [] 제33조제2항 단서 []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등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변경허가신청) 5,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4,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2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제2호에서 정하는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비점오염원 신고대상란에 표기하고, 신고대상인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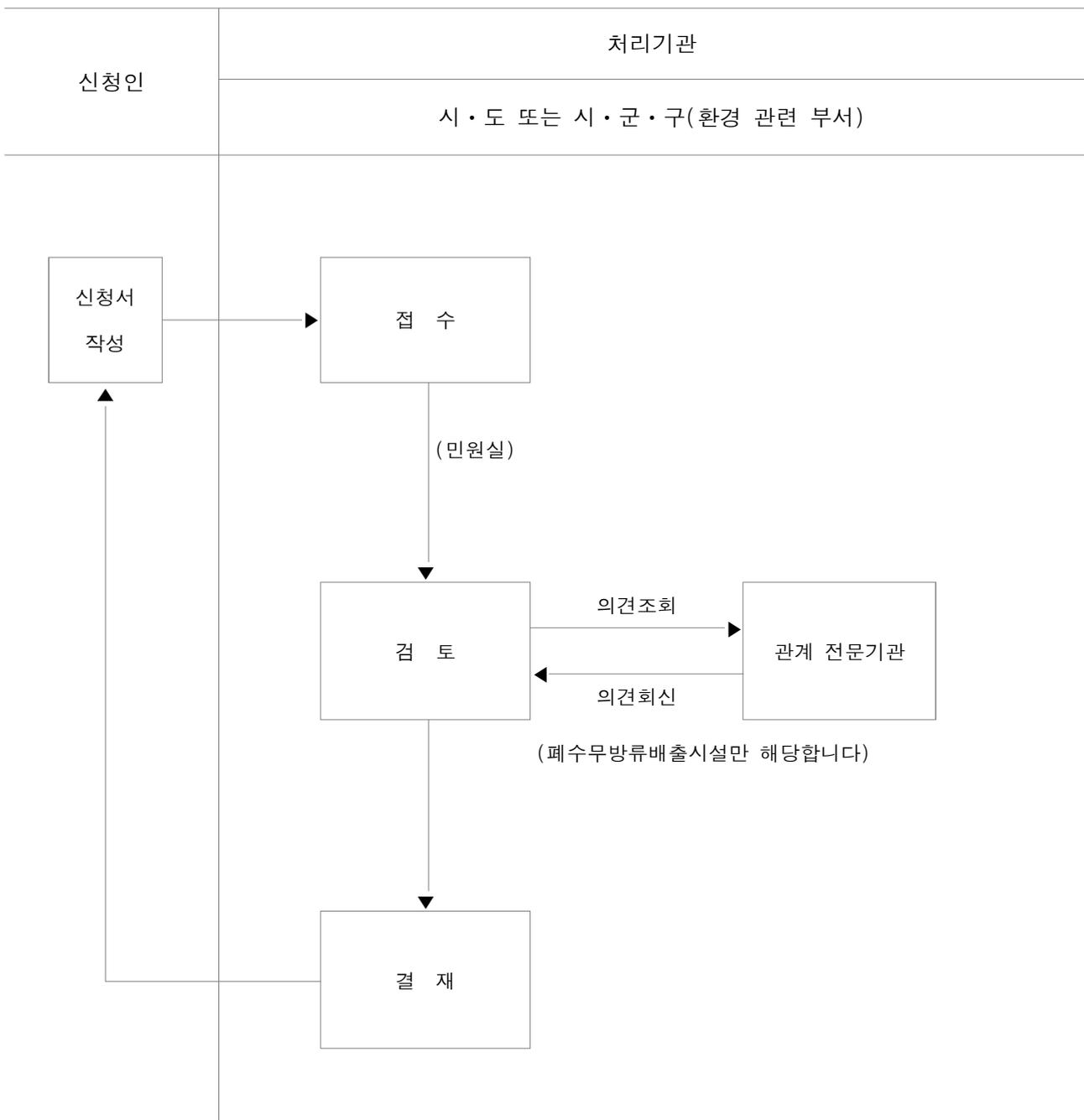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처리기간

- 변경허가 : 7일(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60일)
- 변경신고 : 5일. 다만, 시설의 전부 폐업, 사업장의 명칭변경, 대표자 변경의 경우에는 즉시 처리됩니다.

처 리 절 차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 허가증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폐수배출시설 설치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 신고증명서 </div>				
제 호					
① 사업장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④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 사업종류	(분류번호)	⑥ 종류	종		
⑦ 폐수배출시설 일일 조업시간 및 연간 가동일	⑧ 수질오염방지시설 일일 가동시간 및 연간가동일				
⑨ 폐수배출요인명세					
원료명	사용량	생산제품명	생산량		
허가 또는 신고 사항	⑩ 폐수배출공정흐름도: 따로 붙임				
	⑪ 폐수배출 및 처리명세				
	폐수배출시설명	폐수배출량	수질오염물질 배출항목	폐수처리방법	폐수처리능력
⑫ 폐수처리계통도: 따로 붙임					
⑬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조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사업장 부지면적 m ²)		[] 해당 [] 해당없음 ※ 해당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설 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 []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 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별지 제15호 서식] 삭제 <2012.7.5>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허가(신고)번호	제	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사업장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종류					
가동시작 예정일	년	월	일		
설치명세					

「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본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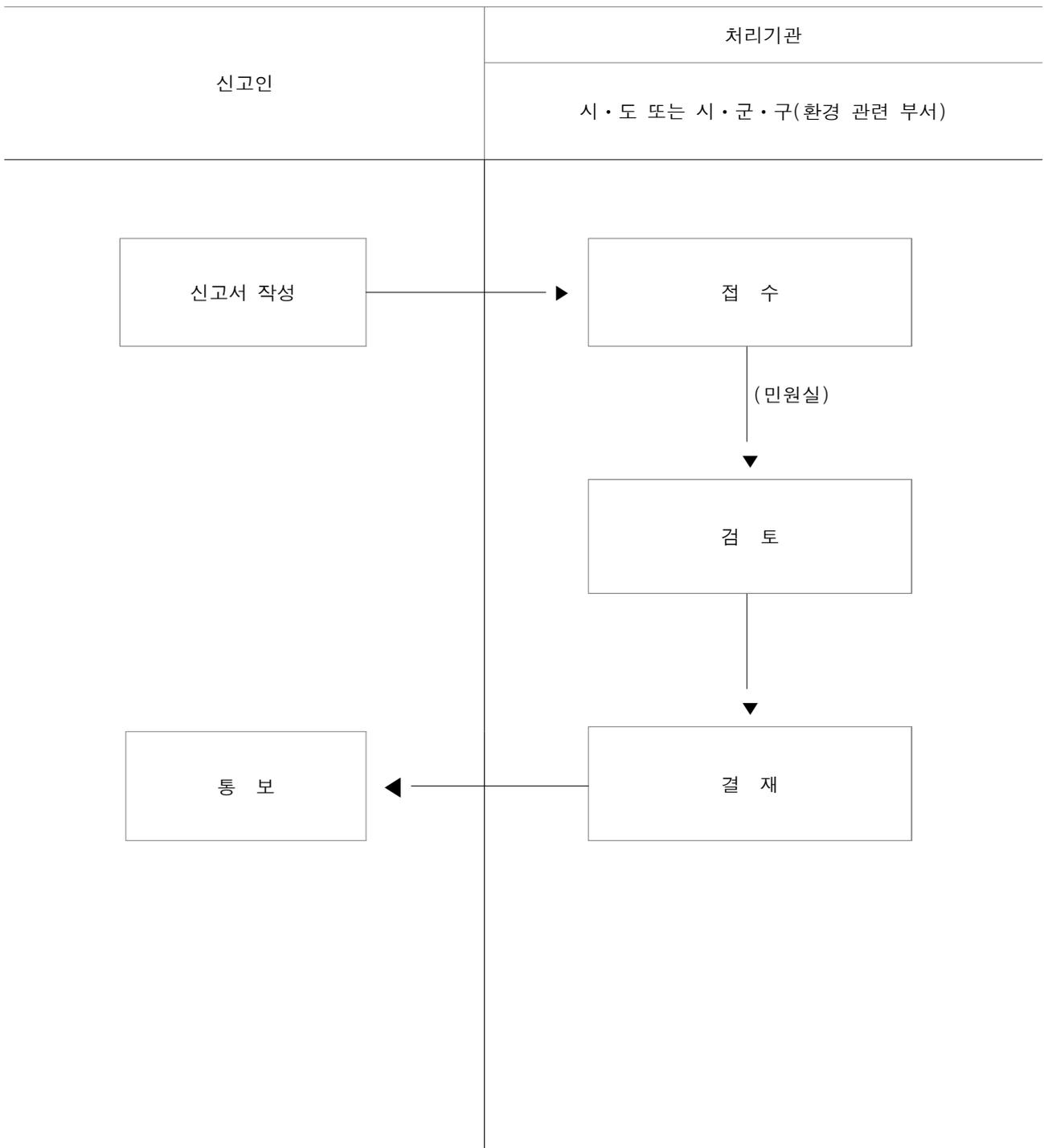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폐수배출(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시작일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허가(신고)번호	제 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사업장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내용	당 초		변 경	
	가동시작 예정일 년 월 일		가동시작 예정일 년 월 일	
변경신고 사유				

「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본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시설 등에 대한 가동시작일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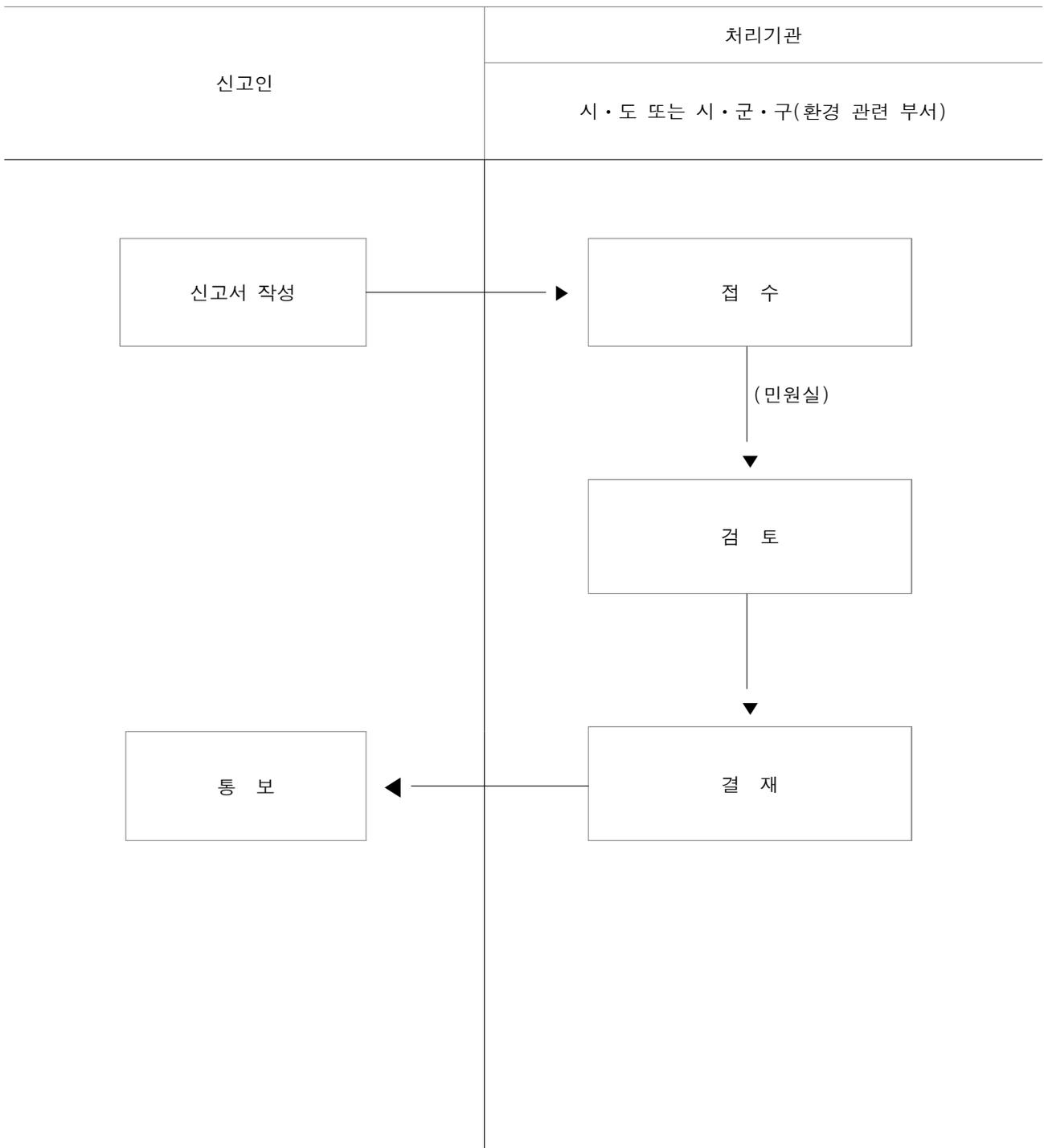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

처 리 절 차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앞 쪽)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결 재	환경기술인	부서장	공장장	대표자

년 월 일 요일

날씨:

온도:

1. 폐수배출시설 가동(조업)시간대

시간대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 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시간대(처리방법:)

시간대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시간대별 근무자 직·성명	※ 시간대 표시는 검은색																							

3. 용수 공급원별 사용량과 폐수배출량

구분	항목	전일 지침 (m³)	금일 지침 (m³)	사용량 (m³/일)	검침 시간대	구분	항목	전일 지침 (m³)	금일 지침 (m³)	배출량 및 사용량(m³/일)
상수 도	1호					폐수배출량				
	2호									
공업 용수	1호					냉각수량				
	2호									
지하 수	1호					소모 (증발량)				
	2호									
하천 수	1호					재사용량				
	2호									
해수 등 기타	1호					생활용수량				
	2호									

4. 슬러지의 발생량 및 처리량

슬러지발생량(m³)	처리량(m³)	보관량(m³)	함수율(%)	보관장소

※ 함수율(%)란은 슬러지를 처리하는 경우 또는 슬러지를 적정하게 관리·처리할 수 있는 주기(월 1회 등)마다 작성합니다.

※ 슬러지를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그 처리장소:

※ 위탁처리를 하는 경우 위탁처리업소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5. 원료 또는 첨가제 등의 사용량

원료 또는 첨가제 등								
사용량(kg)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 또는 공통어로 기재합니다.

6. 전력사용량

가동시간	사용량 (kWh)	금일 폐수 1m ³ 당 소모전력량(kWh/m ³)	검침시간	적산전력계 지침	참고사항

7. 약품사용량

약품명	구입량	약품 소모량	잔량	비고	약품명	구입량	약품 소모량	잔량	비고

8. 폭기조 운전상태(생물화학적 처리시설의 경우)

pH	수온	DO	SV30	MLSS	SVI	폭기시간	주미생물상태

※ 미생물 관찰: 현미경 보유(600배율 이상), 주미생물상태는 양호 또는 불량으로 적습니다.

9. 수질오염방지시설 고장 유무 및 특기사항

10. 수질오염물질 측정내용

항목 구분	pH	BOD	TOC	SS	n-Hex	시안 (CN)	Cu				분석일
원폐수											
방류수											

※ 사업장에서 분석하는 경우 분석자명:

※ 분석을 위탁하는 경우 측정대행업소명:

11. 수질자동측정기기 등의 측정항목별 점검내용

항목 구분	pH	TOC	SS	T-N	T-P	유량계	시료채취조
청소상태							
시료도입[튜브링(tubing: 배관)류] 상태							
시약류 주입상태							
센서류 작동여부							
소모품 교체							

12. 지도·점검을 받은 사항

※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폐수처리방법 등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부분을 반드시 적어야 하며, 제5호부터 제12호까지는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앞 쪽)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결재	환경기술인	부서장	공장장	대표자

년 월 일 요일 날씨: 온도: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 가동(조업)시간대

시간대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 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시간대

시간대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시간대별 근무자 직·성명																								

3. 용수 공급원별 사용량과 폐수배출량

구분	항목	전일지침 (m³)	금일지침 (m³)	사용량 (m³/일)	검침 시간대	구분	항목	전일 지침 (m³)	금일 지침 (m³)	누계 (m³/일)
계						폐수발생량				
상수도	1호					폐수처리량	소계			
	2호						재이용			
공업용수	1호						증발			
	2호						농축			
지하수	1호						건조			
	2호						소각			
하천수	1호									
	2호									
해수 기타	1호						폐수보관량			
	2호									

4. 증발·농축·건조·소각 후 슬러지(폐기물)의 발생량 및 처리량

슬러지발생량(톤)	처리량(톤)	보관량(톤)	함수율(%)	보관장소

※ 함수율(%)란은 슬러지를 처리하는 경우 또는 슬러지를 적정하게 관리·처리할 수 있는 주기(월 1회 등)마다 작성합니다.

※ 슬러지를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그 처리장소:

※ 위탁처리를 하는 경우 위탁처리업소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 쪽)

5. 원료 또는 첨가제 등의 사용량

원료 또는 첨가제 등								
사용량 (kg)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기재하십시오.

6. 전력 사용량

가동시간	사용량 (kWh)	금일 폐수 1m ³ 당 소모전력량(kWh/m ³)	검침시간	적산전력계 지침	참고사항

7. 약품 사용량

약품명	구입량	약품소모량	잔량	비고	약품명	구입량	약품소모량	잔량	비고

8.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개수·보수 현황

시설명	고장내용	개수·보수내용	기간	개수·보수업체	내용

9. 수질오염물질 측정 결과

구분 \ 항목	일반항목						특정수질유해물질					
	BOD	TOC	COD	SS	T-N	T-P						
원폐수												
처리수 (재이용)												

10. 수질오염방지시설 고장 유무 및 특기사항

11. 지도·점검을 받은 사항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9. 12. 20.>

(앞 쪽)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폐수처리업자)

일시	년 월 일 요일
업체명	
환경기술인	

1. 폐수처리업 운영현황

폐수수탁량(L)		폐수처리량(L)		폐기물처리량(kg)				폐수배출량(m³)			
계	전일 처리잔량	금일 수탁량	금일 처리량	금일 처리잔량	전일 잔량	금일 발생량	금일 처리량	금일 처리잔량	발생량	재이용량	방류량

2. 폐수처리현황

폐수종류	합계	H-1	H-2	H-3	H-4	H-5	A-1	K-1	M-1	P-1	P-2	P-3	P-4	P-5	P-6	B-1[B-1	G	EX
		(도금 산화계)	(도금 환원계)	(도금 혼합)	(실험 실패수)	(기타 중금속)	(폐산)	(폐 알칼리)	(기타 금속)	(사진 현상)	(사진 정착)	(사진 세척수)	(인쇄 제판 정착)	(인쇄 제판 현상)	(인쇄 제판 세척수)	보일러 세관(녹제거)]	(보일러 세관(중화))	(귀금속 가공수)	(기타)
전일 처리잔량																			
금일 수탁량																			
금일 처리량																			
금일 처리잔량																			

3. 폐수위탁업소별 수탁량

위탁업체명	폐수부호	수탁량(m³)	위탁·수탁 확인서번호	위탁업체명	폐수부호	수탁량(m³)	위탁·수탁 확인서번호	위탁업체명	폐수부호	수탁량(m³)	위탁·수탁 확인서번호

297mm×210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 쪽)

4. 약품·연료 및 전기 사용량

구분	약품사용량(kg)								연료사용량(L)			전기사용량	
	NaOH	HCl							경유	B-C			
전일 잔량												전일 검침	
금일 입고량												금일 검침	
금일 사용량												사용량	
재고량												비고	

5. 폐수처리시설가동 및 폐기물처리 현황

구분	폐수처리시설가동 현황					구분	폐수처리시설가동 현황 위탁업소명					
	전처리	소각	건조	증발농축	기타		전일 잔량	금일 발생량	금일 처리량	금일 잔량	보관장소	위탁업소명
보유대수						합계						
금일 가동대수						슬릿지						
가동시간(시)						소각재						
폐수처리량(L)						기타						

6. 용수의 사용 및 재이용 현황

처리시설가동사용량(m³)					생활용수량(m³)	폐수배출량(m³)			
계	상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등		폐수발생량	재이용량	증발량	방류량

7. 수질오염물질 측정 현황

항목	pH	COD	n-Hex									
원폐수												
방류수												

8. 처리시설 개수·보수 현황

시설명	고장내용	개수·보수내용	기간	개수·보수업체	내용

9. 지도점검 등 특기사항

측정기기 현황

측정소(사업장)명 : _____ 방류구 : _____ 작성일자 : _____

측정소(사업장) 대표자: _____ 작성자: _____

측정기기

일반사항	모델명				
	제조사				
	제조년월				
	측정항목				
	측정범위				
	제조번호				
출력	출력방식				
	A/D 컨버터 사용여부				
형식 승인	형식승인 번호				
	형식승인 범위				
행정 사항	취 득 일				
	설 치 일				
	행정자료 활용시작 일				
	최초 정도 검사일				
	직전 정도 검사일				

자료수집기(Data Logger) /중간자료 수집기(FEP)

D/L모델명		제조사			
프로그램 버전		설치일자		반영일자	
자체출력 연결여부					

FEP모델명		제조사			
프로그램 버전		설치일자		반영일자	
자체출력 연결여부					

유량계

모델명		제조사	
프로그램 버전		설치일자	
출력방식		A/D컨버터 사용 여부	
측정범위		배율	
D/L 전송	[]순시유량 []적산유량		

측정기기 점검·관리사항

측정소(사업장)명 : _____ 방류구: _____ 작성일자 : _____

점검일자			점검자			
점검항목	<input type="checkbox"/> pH <input type="checkbox"/> BOD <input type="checkbox"/> TOC <input type="checkbox"/> COD <input type="checkbox"/> SS <input type="checkbox"/> T-N <input type="checkbox"/> T-P <input type="checkbox"/> 유량계 <input type="checkbox"/> D/L <input type="checkbox"/> 기타					
점검내역 (복수 측정기기에 대한 점검내역은 각각의 항 목을 기재)	점검시간	시 분 ~ 시 분				
	점검 내용 및 특이사항	수리 및 조치사항				
교정내역 (복수 측정기기에 대한 교정내역은 각각의 항 목을 기재)	교정시간	시 분 ~ 시 분				
	교정 전 상수 값 (측정기기 운영 상수 값 등)					
	교정 후 상수 값 (측정기기 운영 상수 값 등)					
	측정항목별 교정 표준 물질 및 농도	항목	표준물질	제로농도 (mg/L)	스팬농도 (mg/L)	
기타 교정관련 특이사항						
예비 부품 보유현황	품명	수량	부품번호			

측정기기
 폐수배출시설 개선계획서
 수질오염방지시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허가(신고)번호	제	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4일(검사기간 제외)
----------	---	---	------	------------------

사업자	사업장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종류	주생산물		

개선계획	측정기기 · 폐수배출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예정)일					
	개선계획서 제출사유					
	개선완료 · 가동중단 · 위탁처리(예정)일			개선(가동중단 · 위탁)기간		
	부적정 운영명세	측정기기 및 시설명				
		규격	수량			
	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	항목				
		농도				
	폐수위탁처리	위탁처리방법				
위탁업체명		위탁처리량 m³/일				
예상평균 폐수배출량 m³/일			일일 가동 예상시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또는 측정기기의 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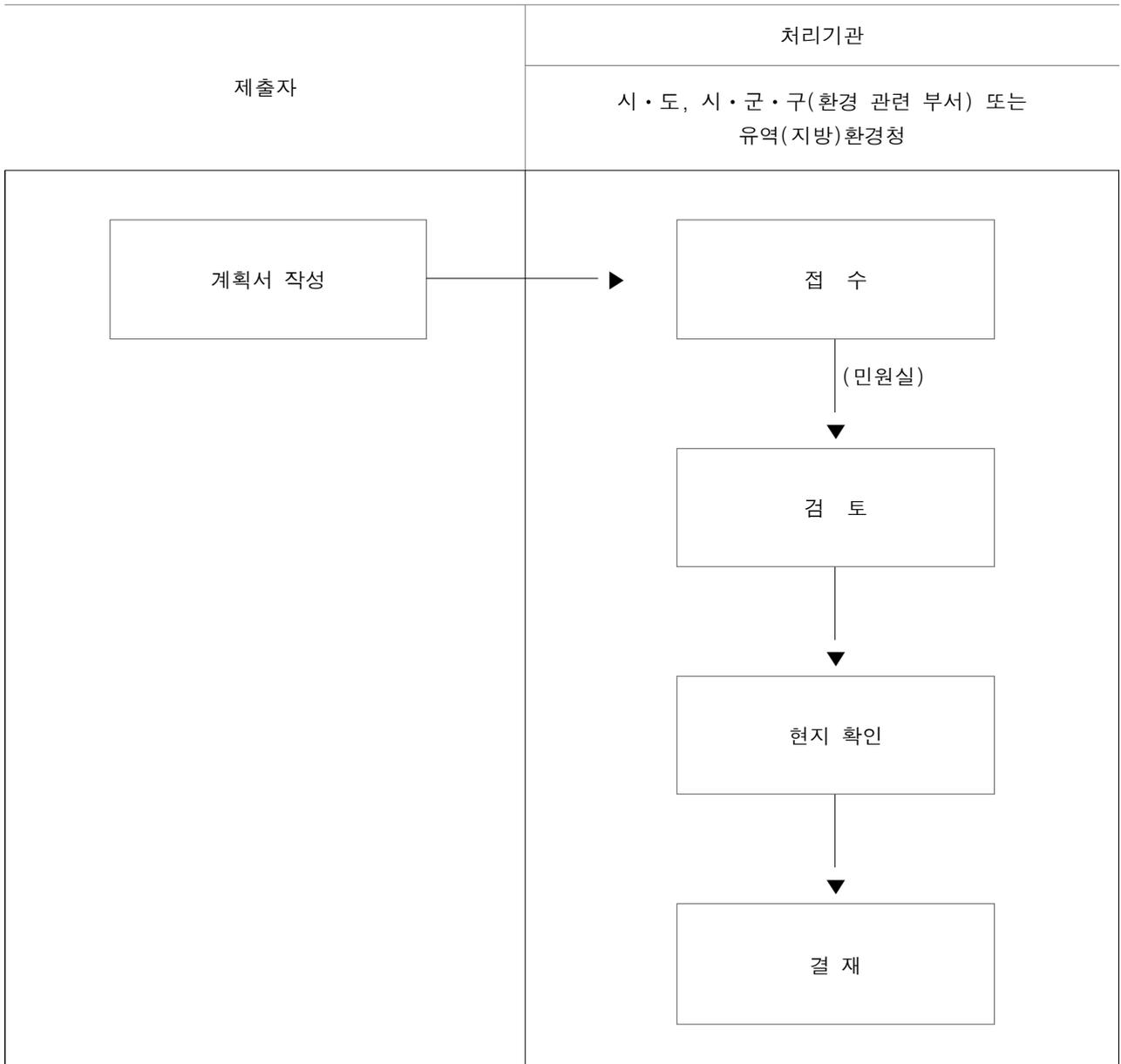
첨부서류	세부 개선명세서 1부	수수료 없음
------	-------------	--------

작성요령

1. 폐수배출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또는 측정기기를 개선·변경 또는 보수하거나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세부 개선명세서에 분명하게 밝히고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공법 등의 개선으로 수질오염물질 등의 배출을 감소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세부 개선명세서에 분명하게 밝히고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측정기기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개선완료보고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허가(신고)번호	제	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4일(검사기간 제외)
----------	---	---	------	------	-------------

보고인	사업장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사업종류	주생산물	
<input type="checkbox"/> 측정기기 <input type="checkbox"/> 폐수배출시설 <input type="checkbox"/> 수질오염방지시설	의	<input type="checkbox"/> 부적정운영 시작일 <input type="checkbox"/> 수질오염물질 채취일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측정기기 <input type="checkbox"/> 폐수배출시설 <input type="checkbox"/> 수질오염방지시설	의	<input type="checkbox"/> 가동중단기간 <input type="checkbox"/> 위탁처리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측정기기 <input type="checkbox"/> 폐수배출시설 <input type="checkbox"/> 수질오염방지시설	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완료일 <input type="checkbox"/> 재가동개시일 년 월 일

부적정 운영 개선명세	측정기기명 또는 시설명	규격	수량	개선내용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의 개선을 완료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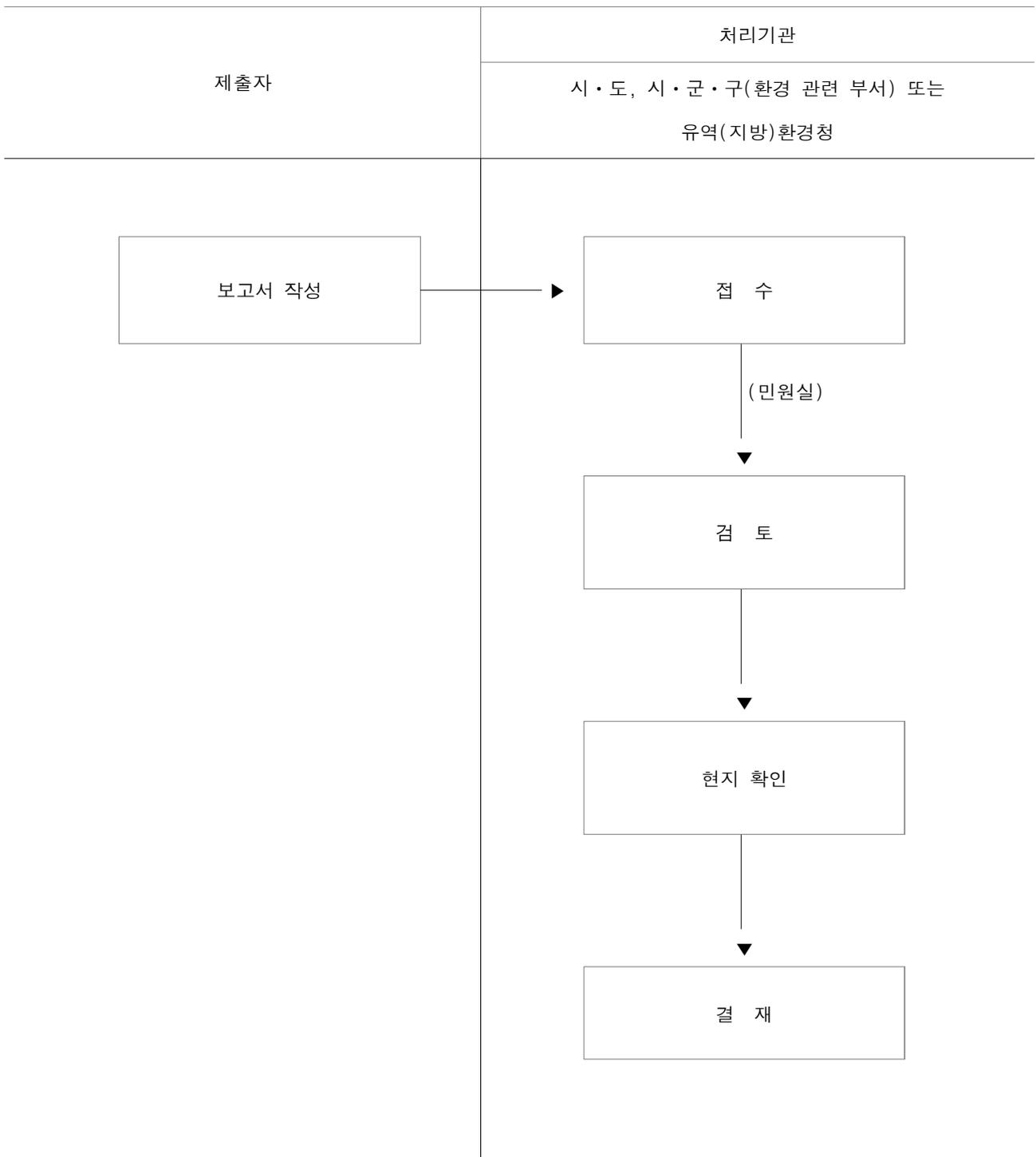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측정기기 개선사유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사업자	사업장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발생시간	시작 시간: 20 년 월 일 시 분 종료 시간: 20 년 월 일 시 분		
조치기간	완료(예정)시간: 20 년 월 일 시 분		
세부내역			
조치내역	조치기간	시작: 20 년 월 일 시 분 종료: 20 년 월 일 시 분	
	내역		
사유내용	측정기	전송장비	시설
	기타		
접수/반송	접수/반송 [] 접수 [] 반송		
	사유(확인 내역)		
	확인자		서명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선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별표 14의2에 따른 경미한 개선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 등록 신청서
[] 등록말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등록신청 : 10일 등록말소 : 즉시
신청인	상호(사업장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실험실 소재지	(전화번호 :)	
	등록(등록말소) 내용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52조의3제1항
[] 제52조의5제2항 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 등록
[] 등록말소 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등록신청 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사업계획서 1부 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등록말소 신청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1부	수수료 등록: 10,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 할 경우 9,0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3. 국가기술자격증	등록말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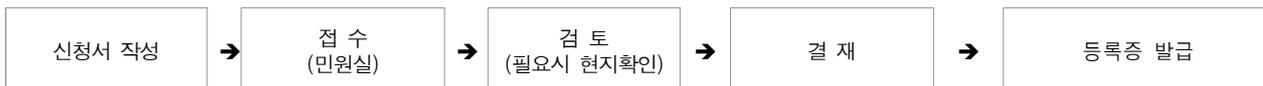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생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 유역(지방)환경청장(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담당부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등록번호	제 호
상호(사업장명칭)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실험실 소재지	(전화번호:)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호(사업장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4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5,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4,000원)
------	--	-------------------------------------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 유역(지방)환경청장(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담당부서)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	-----

신청인	상호(사업자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10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6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 능력의 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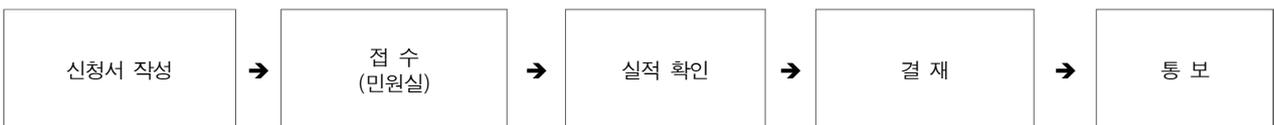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전년도 측정기기 관리대행 실적에 관한 서류 1부 2.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기술인력의 교육이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관련 행정처분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 유역(지방)환경청장(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담당부서)

※ 작성요령

1. 수질오염물질의 측정횟수 또는 오염도검사기관의 검사횟수가 기재하는 칸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칸수를 늘려 작성하거나 별지로 작성합니다.
2.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3. ⑥의 "배출농도" 및 "일일유량"은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등을 기준으로 하여 기재합니다.
4. ⑥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은 "배출농도"에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5. ⑦의 "수질오염물질의 측정에 따른 산출"란에는 ⑥의 "평균"란의 수치를 적습니다.
6. ⑦의 "검사결과에 따른 산출"은 점검기관에서 통보받은 배출농도와 일일유량을 적고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을 제4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7. ⑦의 "평균"은 "검사결과에 따른 산출"란의 각각의 수치와 "수질오염물질의 측정에 따른 산출"란의 수치를 합산한 후 오염도검사기관에서 통보받은 검사횟수에 1을 더한 값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8. ⑦의 "일일평균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 배출량"은 방류수 수질기준농도에 "평균"란의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9. ⑦의 "일일평균기준 이내 배출량"은 "평균"란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에서 "일일평균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 배출량"을 뺀 나머지 양으로 합니다.
10. ⑧의 "유기물질"란에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및 총유기탄소량 중 ⑦의 "일일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으로 배출부과금을 산정한 금액 중 높은 금액이 나오는 항목의 배출량을 적습니다. 다만, 2020년 1월 1일 전에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대상으로 하며, 2020년 1월 1일 전에 「하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사용공고를 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2020년 1월 1일 전에 시설 설치공사를 준공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대상으로 한다.

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

(수 질)

1. 일반현황

- 업소명:
- 소재지:
- 대표자:

2. 초과부과금 부과산정명세

오염 물질명	배출농도 (mg/L)	기준농도 (mg/L)	초과농도 (mg/L)	일일유량 (L/일)	종류	지역 구분	부과기간 (일)	배출부과금 부과에 따른 위반횟수

- 시료채취일:
- 개선완료일:
- (개선기간 중 휴무일: 일)

가. 수질오염물질 1kg 당 부과금액: _____ 원(A)

나. 배출허용기준초과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일일유량×초과농도×10⁻⁶) × 부과기간
_____ kg(B)

다. 초과율별 부과계수: 초과농도 ÷ 기준농도 × 100 = ()% _____ (C)

라. 지역별 부과계수 _____ (D)

마.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_____ (E)

바.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_____ (F)

사. 사업장 규모별 합산금액 _____ 원(G)

아. 초과부과금 = (A) × (B) × (C) × (D) × (E) × (F) + (G) _____ 원

가산금: 초과부과금 × 3/100 _____ 원

납기후 부과금: 초과부과금 + 가산금 = _____ 원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배출부과금 조정 부과 환 급 통지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조정 부과, 환급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지내용		<input type="checkbox"/> 조정 부과 <input type="checkbox"/> 환 급				
계	부과금	미 수 부과금	<input type="checkbox"/> 조정 부과금 <input type="checkbox"/> 환급금	<input type="checkbox"/> 조정부과 <input type="checkbox"/> 환 급 결정일자	<input type="checkbox"/> 수 급 <input type="checkbox"/> 환 급 은행 및 계좌번호	기 타

사 유 (조정 부과 환급)

납부통지서 코드번호:

끝 .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사업장 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당초 부과명세	납부통지서 수령일	납부통지서 코드번호
	부과일시	부과금액
	납부기한	
환급금수령 계좌번호		
조정 신청사유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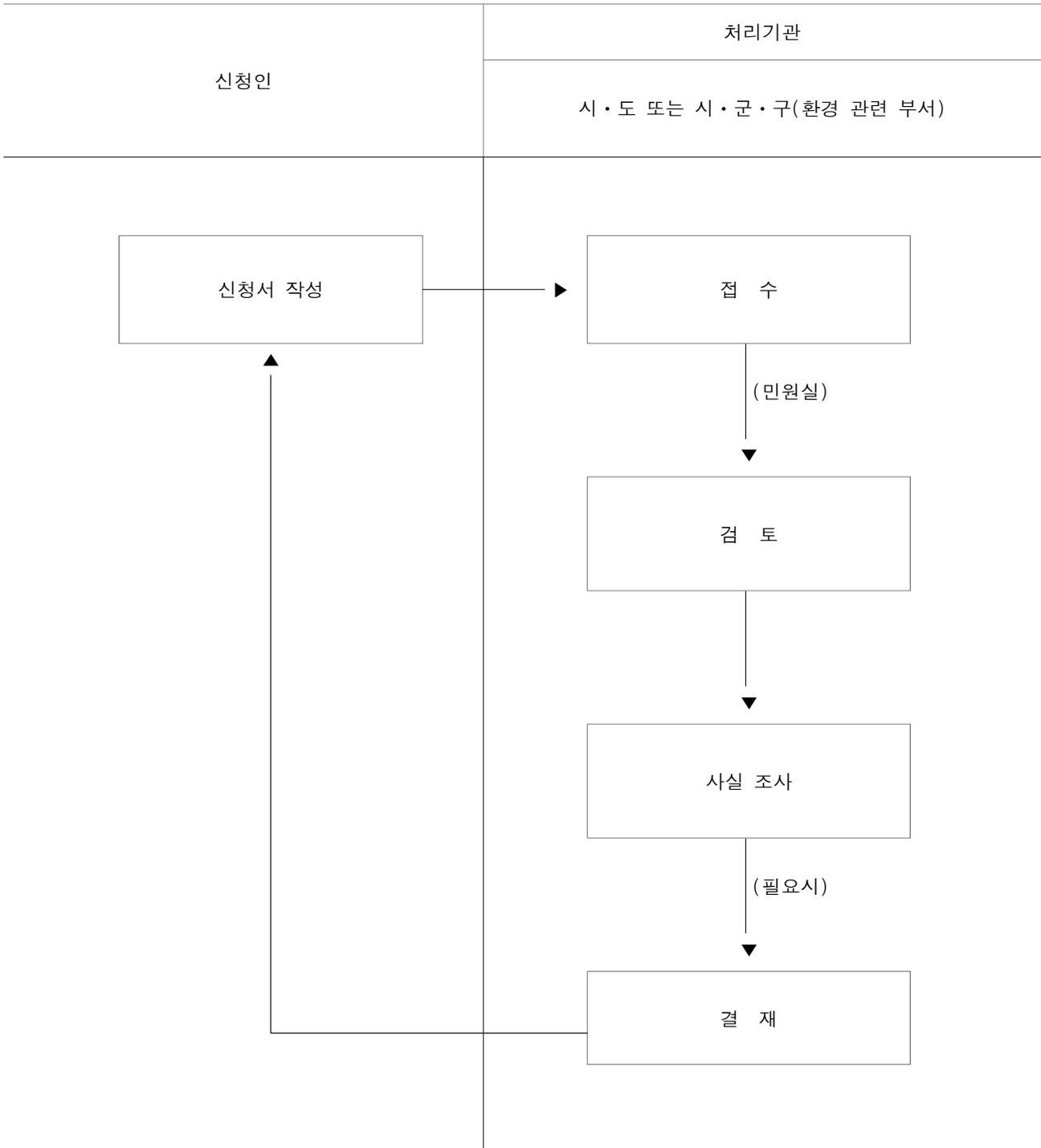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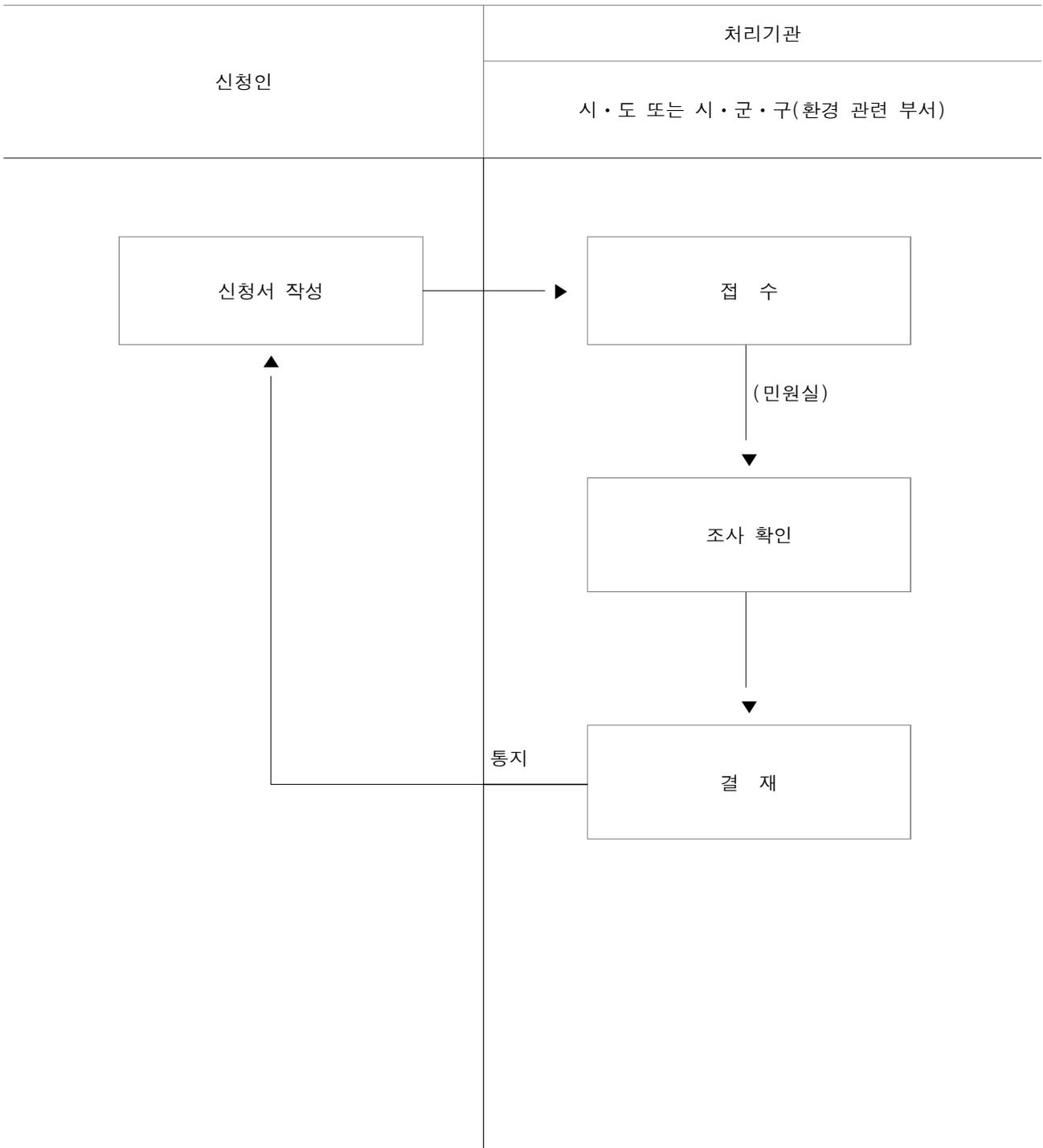
처 리 절 차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절 차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의 개 선
 조업정지
 사용중지
 폐 쇄 명령 이행보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허가(신고)번호	제	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4일(검사기간 제외)
----------	---	---	------	------------------

보고인	사업장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보고 내용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종류
	폐수배출시설명 및 수질오염방지시설명
	개선(조업정지 · 사용 중지 · 폐쇄)사항
	개선(조업정지 · 사용 중지 · 폐쇄) 이행일

「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개 선
 조업정지
 사용중지
 폐 쇄 명령을 이행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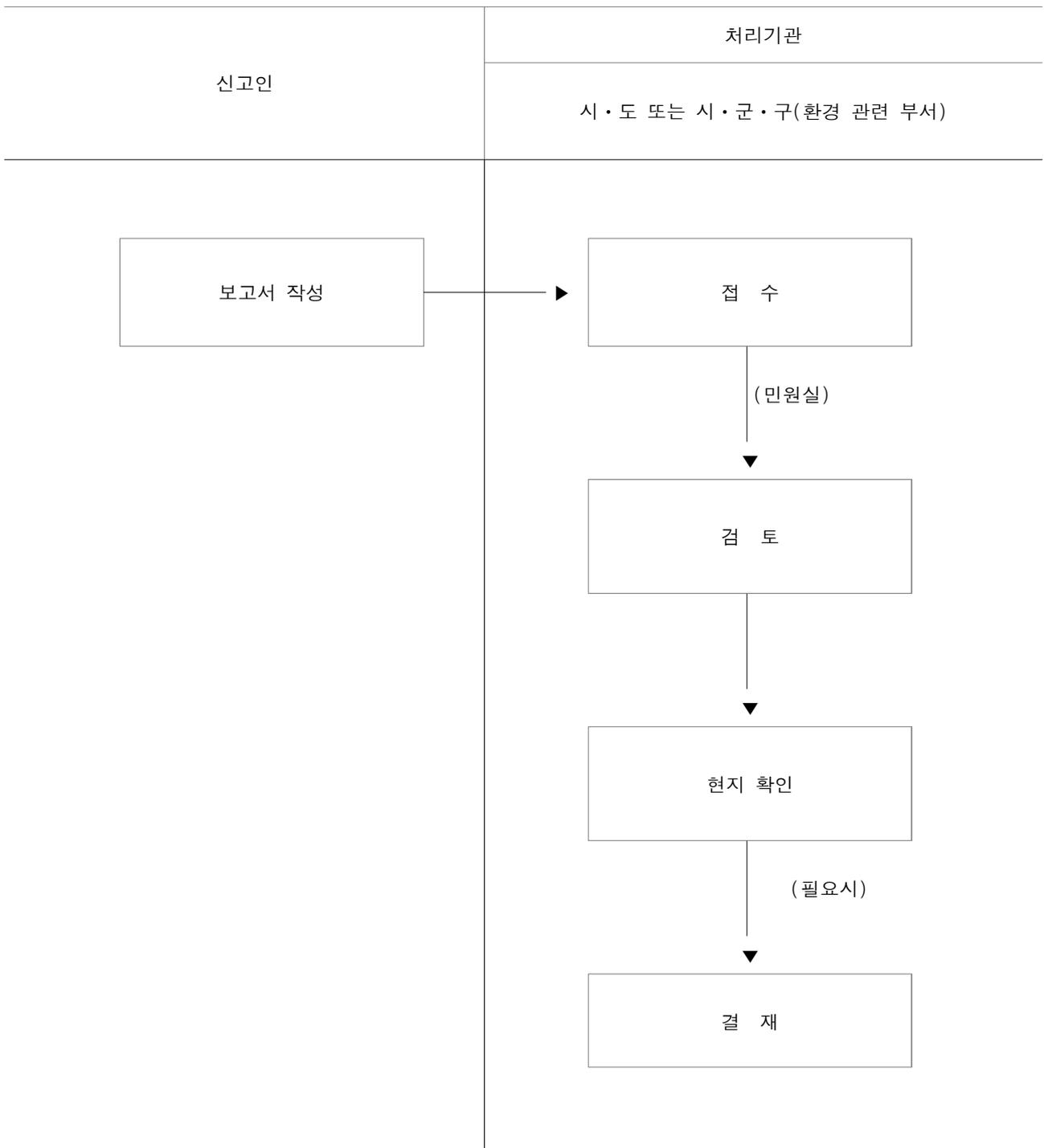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공개계획 통보

환 경 부

수신자

(경유)

제 목 특정수질유해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계획 통보

1. 「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시스템 및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려 합니다.

공개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대상자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공개내용				
소명서 제출기한				

2. 공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통보서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의3제2항에 따른 소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환경부장관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공개에 대한 소명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소명 내용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및 정보의 공개계획 통보에 대해 비공개 요청사항 및 그 사유 등을 적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 및 정보의 공개계획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통지번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공개에 대한 소명서 처리결과 통보서		
제 호				
정보 공개 대상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공개 여부		[]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공개 내용				
공개 방법				
공개 시점		년 월 일부터		
<p>「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의3제3항에 따라 소명서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합니다.</p> <p>이 통보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환경부장관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width: 100px; height: 10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margin: 0 auto;"> 직인 </div>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납부의무자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당초 부과명세	납부통지서 수령일	납부통지서 일련번호
	부과일시	부과금액
	납부기한	
환급금수령 계좌번호		
이의 신청사유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부과된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에 이의가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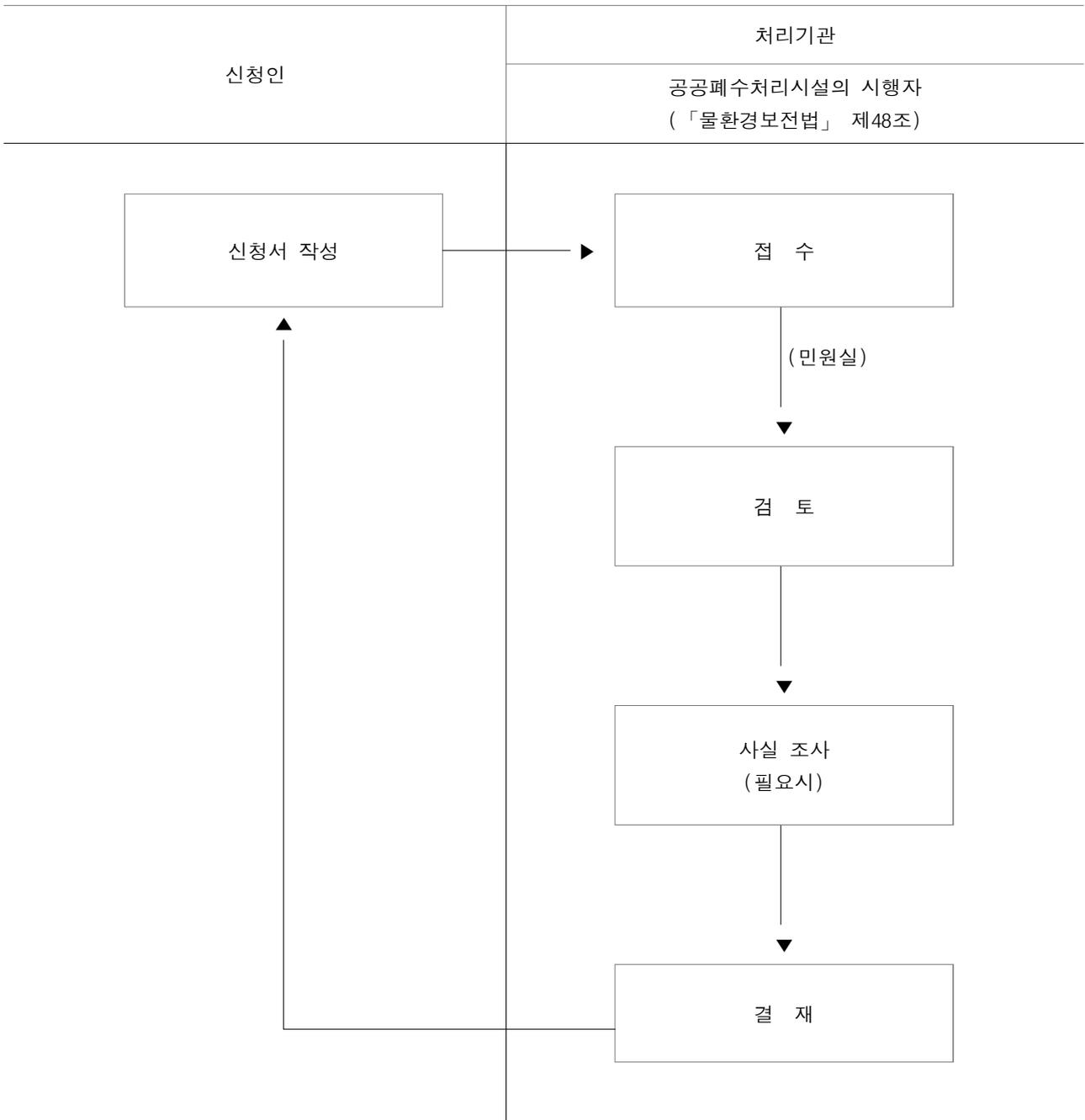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공공폐수처리시설 시행자 귀하

붙임 서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4조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시행자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의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를 []조정 부과, []환급, []이의신청을 미수용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지내용		[] 조정 부과 [] 환 급 [] 미수용				
계	납부통지 금액	미 수 납부통지금액	[]조정 부과금 []환급금	[]조정부과 []환 급 결정일자	[]수 급 []환 급 은행 및 계좌번호	기 타
사 유 ([] 조정 부과 [] 환급 [] 이의신청 미수용):						
납부통지서 일련번호: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설치부담금(사용료) 징수유예(분할납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	------	---------

납부 의무자	업소명
	대표자
	주소 또는 거소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신청 대상	설치부담금	사용료	징수유예	분할납부	신청 사유

신청 내용	납부통지금액의 내용			징수유예(분할징수)신청금액	
	통지금액 의 종류	년/월분	금액	금액	기간

분할납부 신청사항	분납일자	분납금액	분납일자	분납금액	분납일자	분납금액
	1 차		5 차		9 차	
	2 차		6 차		10 차	
	3 차		7 차		11 차	
	4 차		8 차		12 차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 및 분할 납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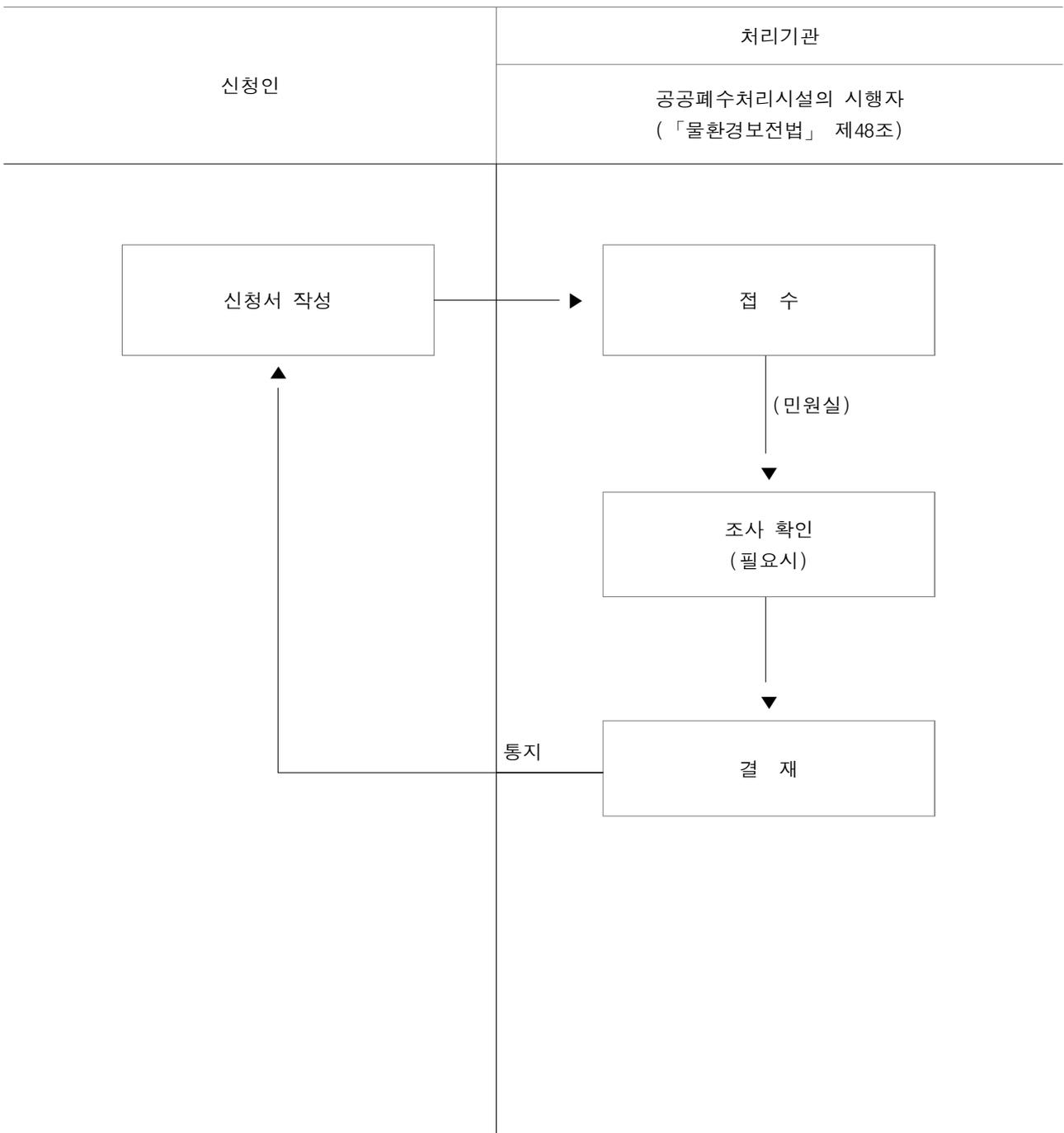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공공폐수처리시설 시행자 귀하

붙임 서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5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처 리 절 차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 승인 [] 변경승인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	------	----------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 계획	사업장 위치	용도지역 지역 지구	
	사업내용	사업종류	사업규모 및 부지면적
		사업비	예산원인자
		사업비 부담자	
	시행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물환경보전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 승인 [] 변경승인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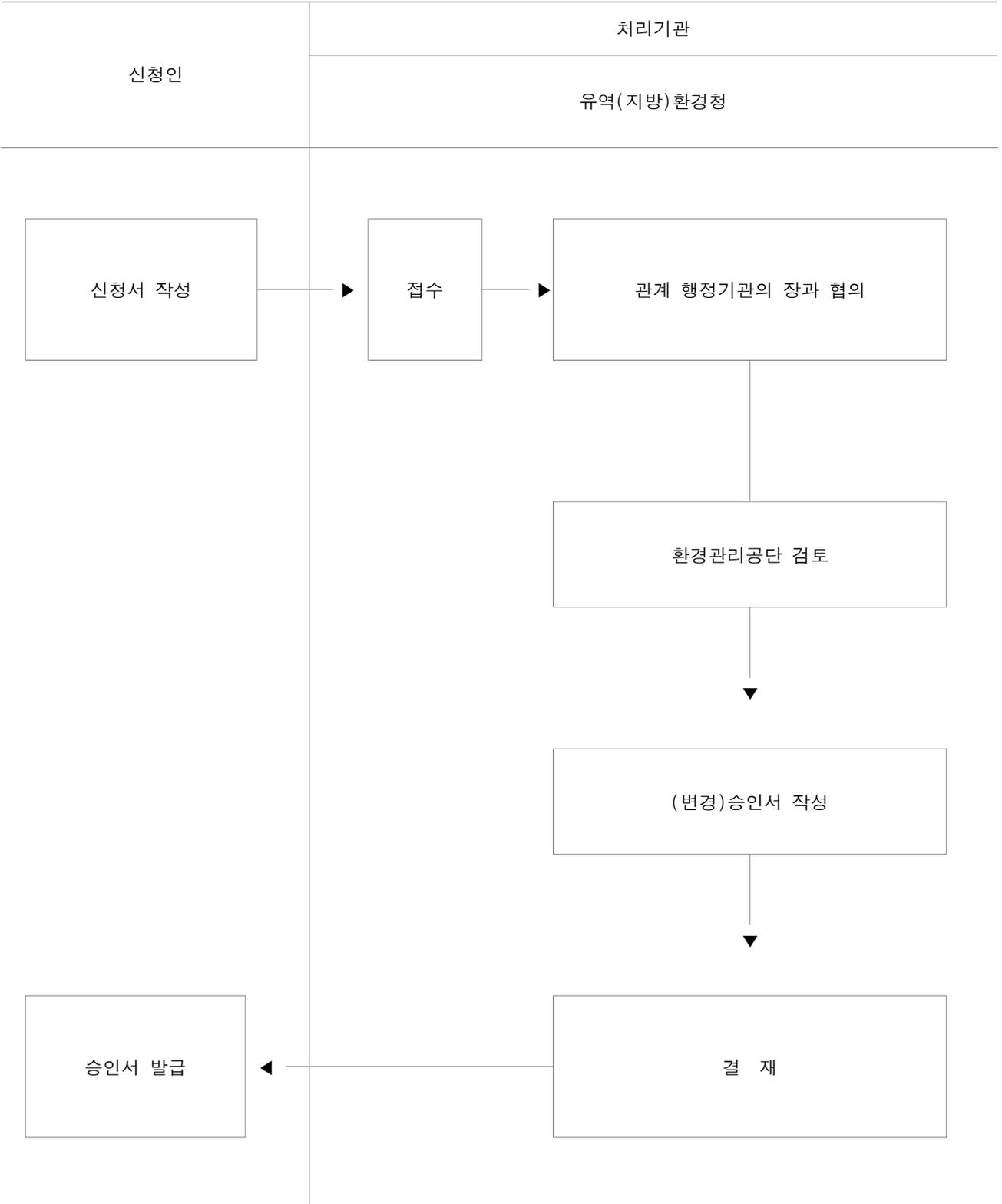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 5부(원본 1부, 사본 4부)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계획 [] 승인 [] 변경승인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 내용	사업장 위치	
	사업종류	지역 지구
	총사업비	시행기간
비용 부담 계획	원인자비용 부담총액	원인자 유형별 사업체수
	원인자 선정 대상 지역	원인자 선정 기준
	비용부담금액 결정기준	

「물환경보전법」 제4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2항·제3항에 따라 비용부담계획
 [] 승인
 [] 변경승인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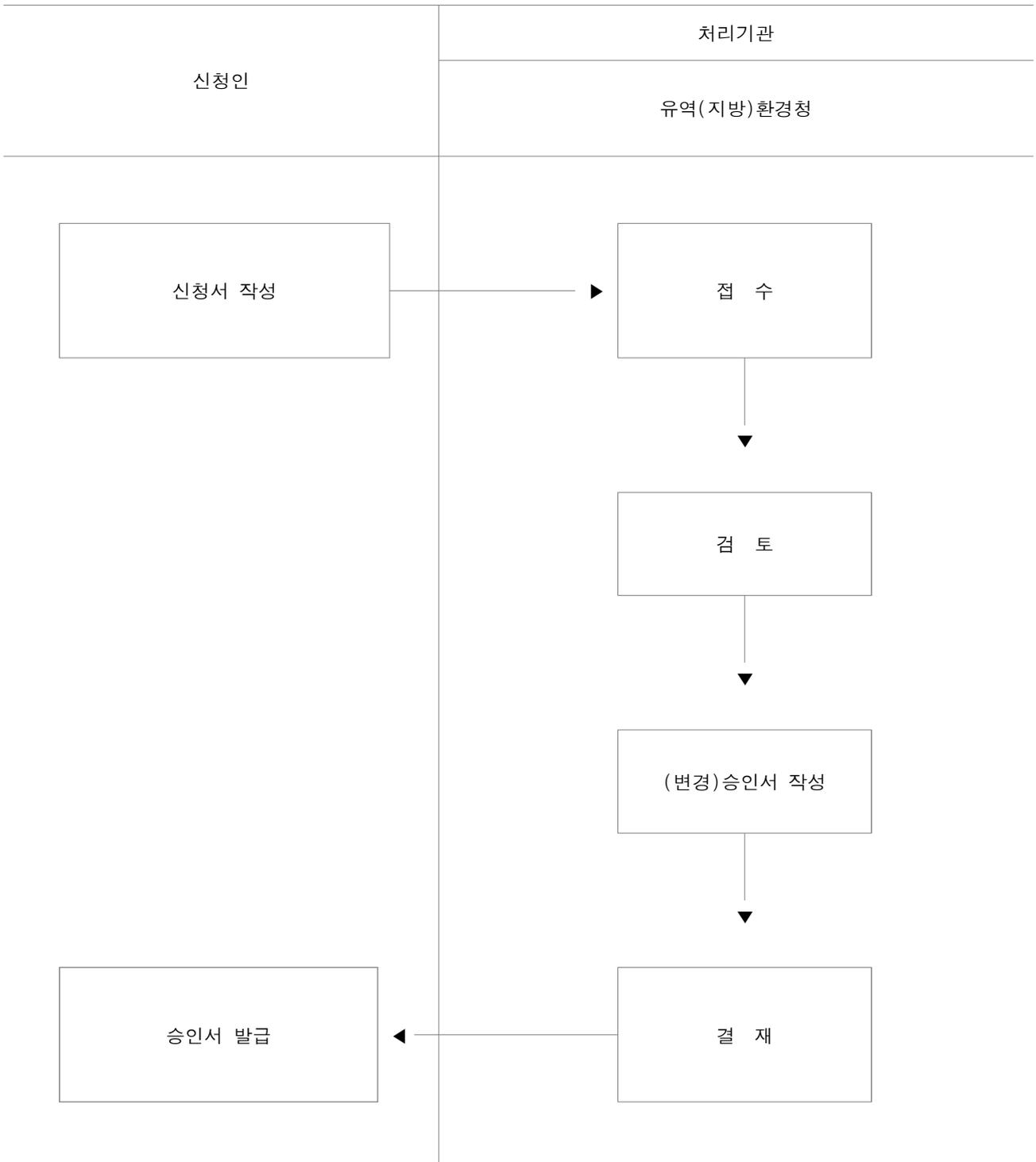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비용부담계획서 2부 2. 원인자별 비용부담 세부 내용에 관한 서류 1부 3. 원인자 등 이해관계인과의 협의결과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뒤쪽참조	
신고인	상호(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 내용	공통	사업명 또는 사업종류 (분류번호:)		
		영향 하천·호소 및 해양의 명칭		
		사업승인(허가 등) 기관		
	개발사업	공사개시(예정)일 년 월 일	사업준공(예정)일 년 월 일	
		총 사업면적 m ²	개발면적 m ²	
		① 토지이용형태별 면적		
		공사 중	공사 후 m ²	
		② 주요 관리대상 비점오염물질		
		공사 중	공사 후	
	사업장	가동개시(예정)일 년 월 일	부지 총면적 m ²	
		③ 강우노출 면적 m ²	④ 주요 관리대상 비점오염물질	
	공통	⑤ 저감시설 종류	⑥ 규모 또는 용량	⑦ 예상처리효율(%)

「물환경보전법」 제5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비점오염원의 설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1. 개발사업등에서 발생하는 주요 비점오염원 및 비점오염물질에 관한 자료
2. 개발사업등의 평면도 및 비점오염물질의 발생·유출 흐름도
3. 개발사업등의 유지관리 및 강우유출수 저감방안 등에 관한 비점오염저감계획서
4.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운영·관리계획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위치도를 포함한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5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요령 및 기준

1. 신고인란 중 성명(대표자)란에는 법인의 경우 성명 대신 직함을 적어도 됩니다.
2. 신고내용란 중 개발사업란은 「물환경보전법」 제53조제1항제1호 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적고, 사업장란은 「물환경보전법」 제53조제1항제2호 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2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적습니다.
3. ①란은 공사 중, 공사 후의 토지이용 형태별 면적을 비점오염물질의 유출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4. ②란은 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공사 중, 공사 후에 관리가 필요한 주요 비점오염물질을 모두 기록합니다.
5. ③란은 강우에 노출되어 비점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공정, 야적시설 등의 면적을 기록합니다.
6. ④란은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관리가 필요한 주요 비점오염물질을 모두 기록합니다.
7. ⑤, ⑥, ⑦란은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공사 중, 공사 후의 강우유출수를 줄이기 위한 시설을 구분하여 모두 기록하고,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모두 기록하며, 비점오염 저감 시설의 종류가 칸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칸수를 늘려 작성하거나 별지로 작성합니다.
8. ⑥란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기준에서 제시한 설계규모 및 용량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9. 첨부서류 중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명세서에는 저감시설의 예상처리효율, 산정근거 및 기준강우강도 등 설계인자를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10. 처리기간: 10일(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20일)

(앞쪽)

신고번호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					
제	호						
① 사업장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④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⑤ 사업명 또는 사업종류		(분류번호:)					
⑥ 영향하천·호소 및 해양명의 명칭							
신고사항	개발사업	⑦ 공사개시(예정)일		⑧ 사업준공(예정)일			
		⑨ 총사업 면적		m ²	⑩ 개발면적		
				m ²			
		공사중	⑪ 토지이용형태별 면적		m ²	⑫ 주요 관리대상 비점오염물질	
			⑬ 저감시설 종류 및 용량		m ³	⑭ 예상처리효율	
				m ³			
	공사후	⑮ 토지이용형태별 면적		m ²	⑯ 주요 관리대상 비점오염물질		
		⑰ 저감시설 종류 및 용량		m ³	⑱ 예상처리효율		
			m ³				
	사업장	⑲ 가동개시(예정)일		⑳ 부지 총면적		m ²	
㉑ 강우노출면적		m ²	㉒ 주요 관리대상 비점오염물질				
㉓ 저감시설 종류 및 용량		m ³	㉔ 예상처리효율				
		m ³					
㉕ 비점오염 발생·유출 흐름도: 따로 붙입니다.							
㉖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명세 및 도면: 따로 붙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제53조제1항 전단에 따른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비점오염원 설치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	------	----

신고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공통	상호		
	대표자		
	사업명 또는 사업종류		
	영향 하천·호소 및 해양의 명칭		
	기타		
개발사업	총사업면적	m ²	m ²
	개발면적	m ²	m ²
	토지이용형태별 면적	m ²	m ²
	주요 관리대상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 종류, 위치, 용량		
	저감시설 예상처리효율	%	%
사업장	공장부지 총면적	m ²	m ²
	강우노출면적	m ²	m ²
	주요 관리대상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 종류, 위치, 용량		
	저감시설 예상처리효율	%	%

「물환경보전법」 제5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4항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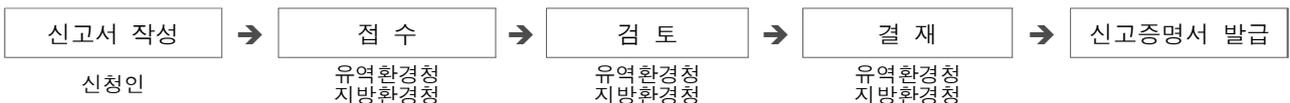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제출서류	1.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40일 (비점오염물질 저감능력 검사 기간 제외)
------	------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주소 (전화번호: _____)	

신청내용	⑤ 신청구분 [] 성능검사 신규 신청 [] 성능검사를 받은 시설의 변경에 따른 성능검사 신청		
	⑥ 성능검사 판정서 번호		
	⑦ 발급일	⑧ 유효기간 만료일	
	⑨ 비점오염저감시설 구분 [] 자연형 시설 [] 저류시설 [] 장치형 시설 [] 여과형 시설 [] 인공습지 [] 소용돌이형 시설 [] 침투시설 [] 스크린형 시설 [] 식생형 시설 [] 응집·침전 처리형 시설 []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 [] 그 밖의 비점오염저감시설 (_____)		
	⑩ 모델명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의4제1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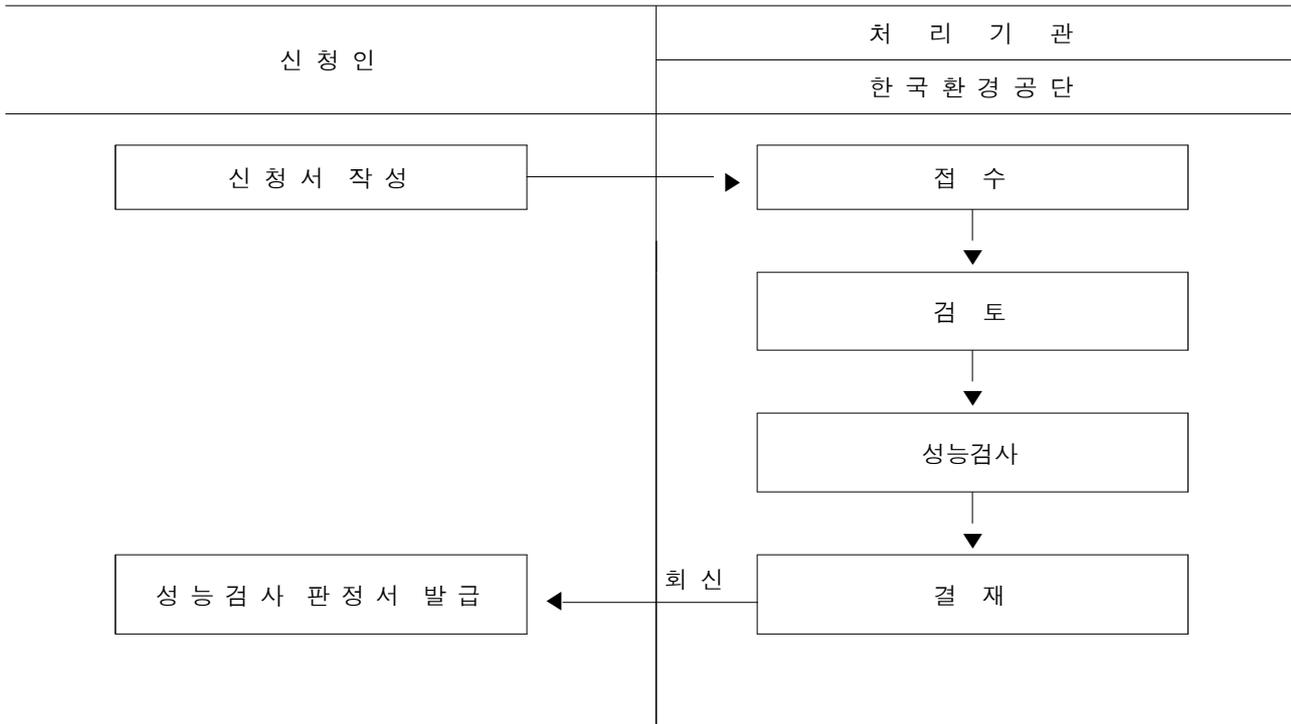
신청인 제출서류	1.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저감 원리, 구조 및 제원 등을 포함한 설명서와 그 도면 1부 2. 비점오염저감시설에 사용된 재료 목록 및 각 재료의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1부 3. 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내부·외부 기기 및 장치의 운전 조건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4.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유지관리 비용 및 재료의 교체 주기를 포함해야 함) 1부	수수료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금액
-------------	--	---

작성방법

1.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2. ④란의 주소에는 도로명 주소를 건물번호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3. ⑤란의 신청구분의 []은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가. ‘성능검사 신규 신청’ 은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신청’ 을 말합니다.
 - 나. ‘성능검사를 받은 시설의 변경에 따른 성능검사 신청’ 은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3 제1항 후단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신청’ 을 말합니다.
4. ⑥ ~ ⑧란은 ⑤란에서 ‘성능검사를 받은 시설의 변경에 따른 성능검사 신청’ 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5. ⑨란의 ‘비점오염저감시설 구분’ 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을 참고하여 해당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 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서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소:												
시설 구분													
시설 명칭 (제품모델명)													
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성능검사 종합 결과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항목</th> <th style="text-align: center;">판 정 내 용</th> <th style="text-align: center;">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비점오염저감 시설의 기술적 타당성</td> <td></td> <td></td> </tr> <tr> <td style="padding: 5px;">비점오염물질 저감능력</td> <td></td> <td></td> </tr> <tr> <td style="padding: 5px;">유지관리 방법 의 적절성</td> <td></td> <td></td> </tr> </tbody> </table>	항목	판 정 내 용	비 고	비점오염저감 시설의 기술적 타당성			비점오염물질 저감능력			유지관리 방법 의 적절성		
	항목	판 정 내 용	비 고										
	비점오염저감 시설의 기술적 타당성												
	비점오염물질 저감능력												
유지관리 방법 의 적절성													
붙임 자료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의 세부 내용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	------	----

신고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공통	사업종류	영향 하천·호소 및 해양의 명칭				
	시설설치완료 예정일 년 월 일	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사업승인(면허)일	사업승인(면허)기관				
	수질오염저감시설					
신고내용	양식어장	면허(신고) 면적 m ²	사용 면적 m ²	수중 용적 m ³	양식수	최대 및 최소 마리 ~ 마리
		면허기간	양식 어종	사료먹이량 kg/일	먹이횟수 회/일	
	골포장	홀수	사업장 총면적 m ²			
등록일		조정지 저장능력 개소 m ³				
기타	설치 시설명	규모	시설수	오염저감시설	규모	시설수

「물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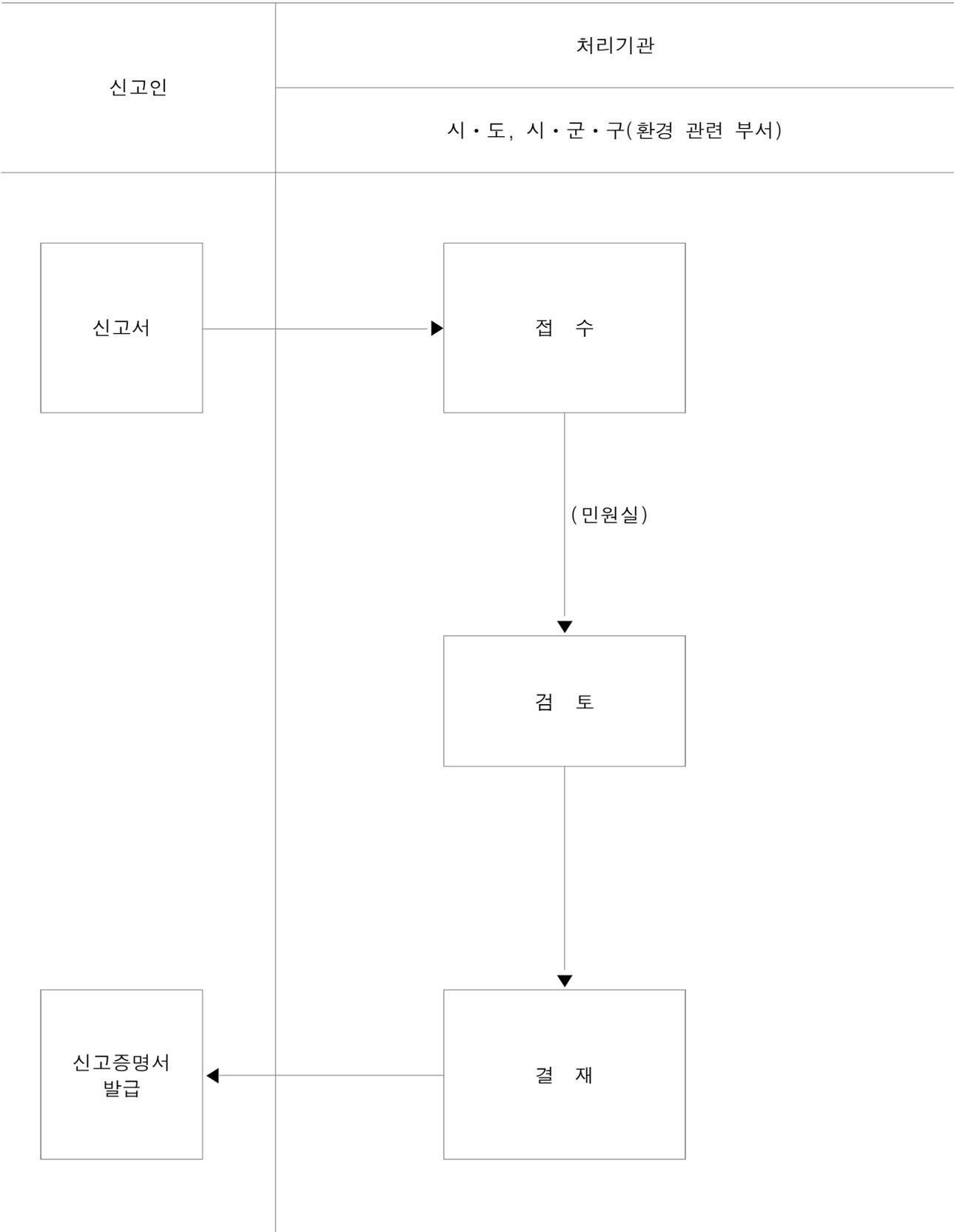
제출서류	1. 기타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2. 원료·사료·약품·농약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1부 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 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	---	-----------

작성요령

신고인란 중 대표자란에는 법인의 경우 성명 대신 직함을 적어도 됩니다.

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번호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						
제 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종류	(주생산품:)						
면허(승인)기간				사업시작(예정)일			
신고사항	양식어장	시설면적	m ²	면허(허가·신고)면적		m ²	
		수중용적	m ³	호소·하천 및 해양의 명칭			
	골프장	총사업장의 면적	m ²		홀수		홀
		조정지	개소			(총 저장능력: m ³)	
	그 밖의 시설	시설명				시설규모(수)	m ³ ()
		약품사용량	kg/일	용수량	m ³ /일	폐수량	m ³ /일
	수질오염저감 시설						
	<p>「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제2항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에 대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p>						

신고번호		기타수질오염원 관리카드					신고 일자	년 월 일
제 호							신고 인자	년 월 일
신고 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특정시설 배치도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면허(승인) 기관						
양식 어장	면허 (신고) 면적	시설 면적	수중 용적	면허 기간	양식 어종	1일 먹이량 및 횟수		
				부터 까지		kg/일 회/일		
골프장	면적	사업장 면적	조정지 용량(m ²)	사업 승인 일자	등록 일자			
	m ²	m ²	(개소)	년 월 일	년 월 일			
기타 시설	시설명	시설 규모(수)	폐수발생량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수질오염저감 시설 및 저감 방법			
		()	m ³ /일	kg/월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일
------	-----	------	----

신고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공 통	상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양식 어장	면허기간		
	면허면적(㎡)		
	사용면적(㎡)		
	수질오염저감시설		
골 프 장	규모(㎡)		
	조정지		
그 밖의 시설	설치시설		
	수질오염저감시설		
	그 밖의 변경내용		

「물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의 변경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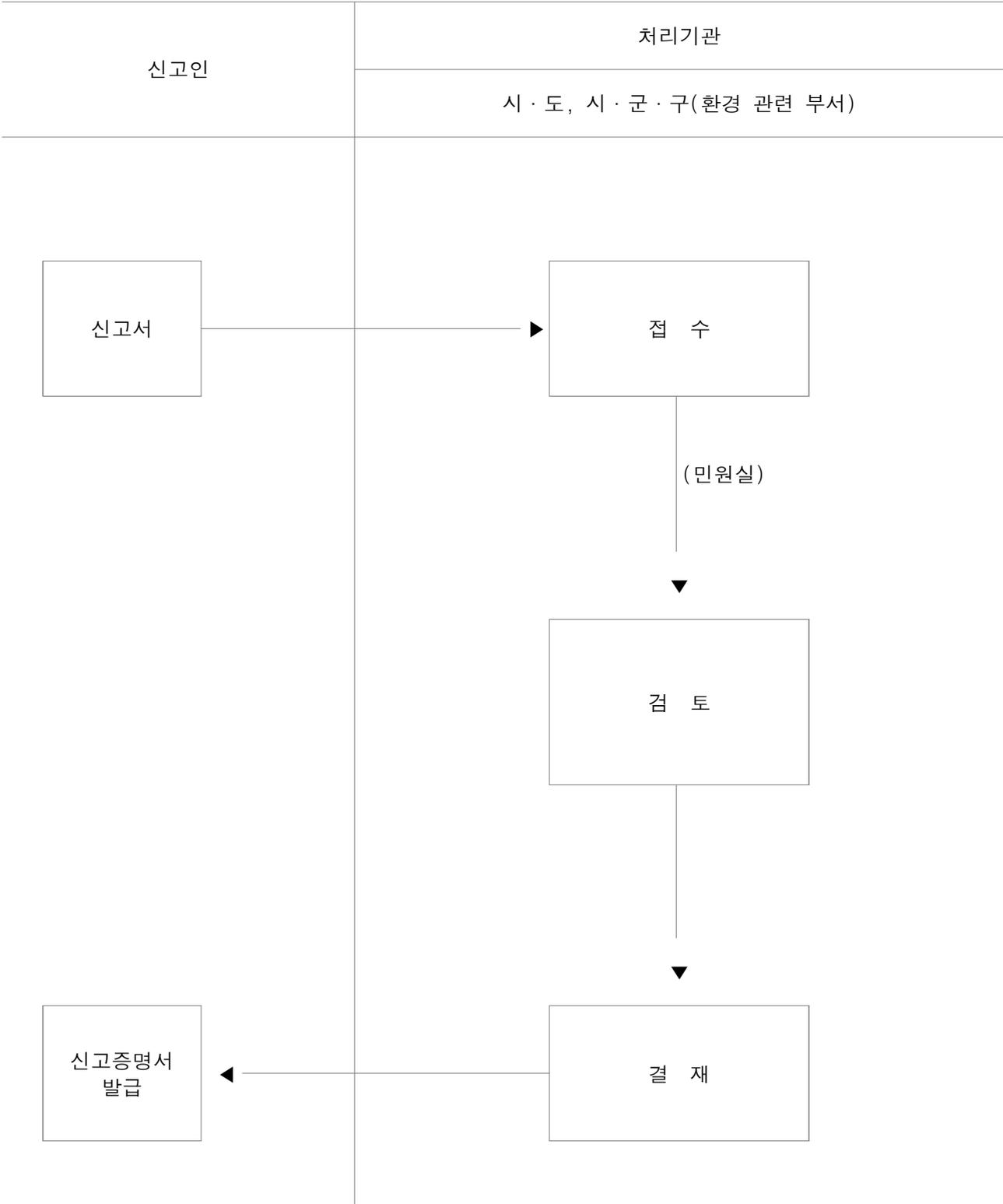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서류	1.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 1부	수수료
	2. 기타수질오염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없 음

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	------	------	-----

신고인	시설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시설 주소	(전화번호:)		
시설 종류	[] 바닥분수, [] 일반분수, [] 벽면분수(폭포 등), [] 실개천형, [] 기타		
운영 주체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민간 (시설구분: []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 관광지·관광단지, [] 도시공원, [] 체육시설, [] 어린이놀이시설, [] 공동주택, [] 대규모점포)		
시설 설치완료(예정)일		최초 가동개시(예정)일	
연중 운영기간	개월(월 ~ 월)	바닥면적	m ²
용수 종류	[] 수돗물(%), [] 지하수(%), [] 하천수, 계곡수(%), [] 기타() * 기타는 종류 명시, 중복 체크시 비율 명시		
저류조 용량	m ³	저류조 청소주기	
여과기 설치여부	[] 설치(종류: 처리능력: m ³ /일), [] 미설치		
소독 방법	1. [] 염소(), [] 오존, [] 기타() 2. [] 소독기 설치, [] 미설치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1항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운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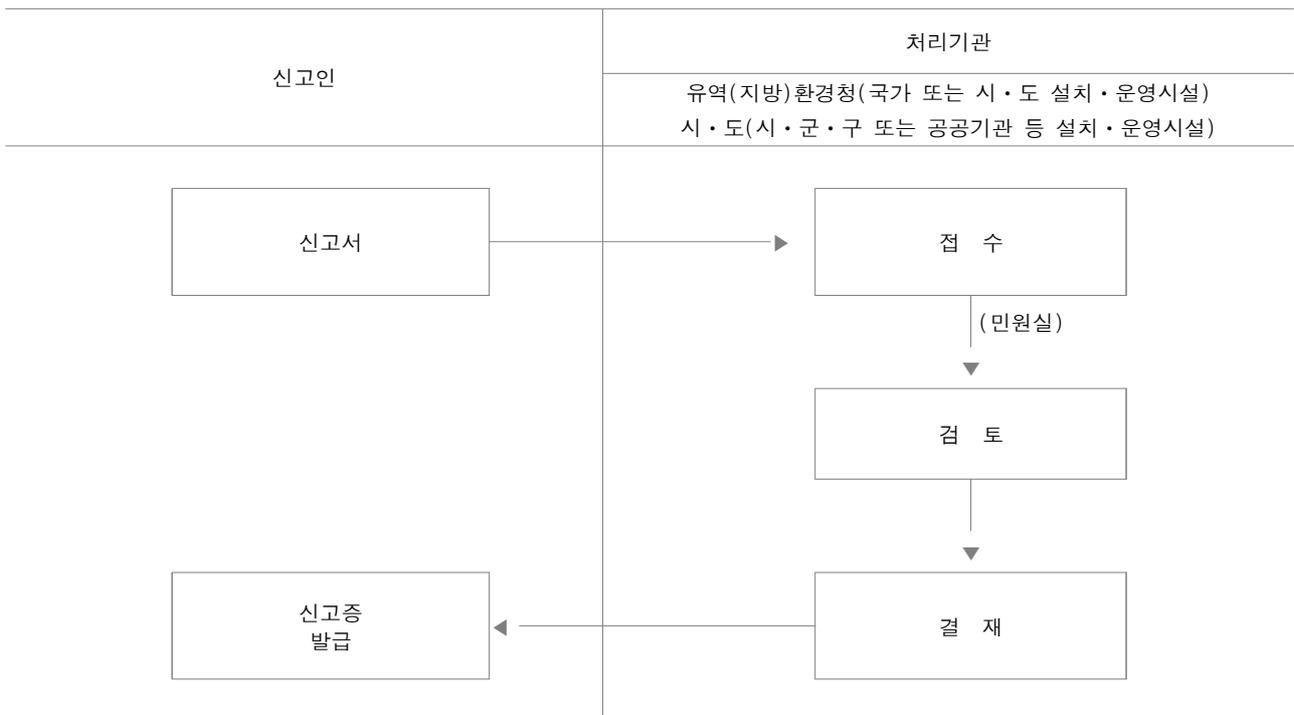
첨부서류	1.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2.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를 위한 시설의 조치계획서 1부 3. 수질의 검사주기가 포함된 수질 검사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	--	-----------

작성요령

신고인란 중 성명(대표자)란에는 법인의 경우 성명 대신 직함을 적어도 됩니다.

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시설명		
	성명(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시설 주소	(전화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4항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 시설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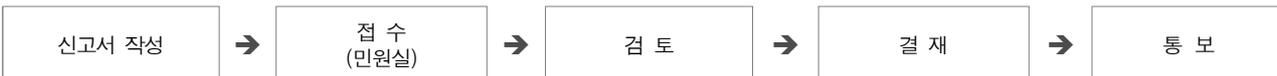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 2. 시설물 사후관리계획서(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국가 또는 시·도 설치·운영시설)

신고인

시·도(시·군·구 또는 공공기관 등 설치·운영시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① 채수 및 검사일시	② 채수장소	③ 검사기관명	④ 검사기관 연락처
⑤ 검사항목	⑥ 검사결과	⑦ 초과원인 및 조치사항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① 채수 및 검사일시	② 채수장소	③ 검사기관명	④ 검사기관 연락처
⑤ 검사항목	⑥ 검사결과	⑦ 초과원인 및 조치사항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① 채수 및 검사일시	② 채수장소	③ 검사기관명	④ 검사기관 연락처
⑤ 검사항목	⑥ 검사결과	⑦ 초과원인 및 조치사항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① 채수 및 검사일시	② 채수장소	③ 검사기관명	④ 검사기관 연락처
⑤ 검사항목	⑥ 검사결과	⑦ 초과원인 및 조치사항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① 채수 및 검사일시	② 채수장소	③ 검사기관명	④ 검사기관 연락처
⑤ 검사항목	⑥ 검사결과	⑦ 초과원인 및 조치사항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① 채수 및 검사일시	② 채수장소	③ 검사기관명	④ 검사기관 연락처
⑤ 검사항목	⑥ 검사결과	⑦ 초과원인 및 조치사항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폐수 [] 수탁처리업 허가신청서
[] 재이용업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	-----	----------

신청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착공일 년 월 일	설치완료일 년 월 일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재이용시설

시설명	규격	대수	시설명	규격	대수

수질오염방지시설

처리대상 폐수	폐수처리능력	m ³ /일 (m ³ /시간)			
폐수처리방법					
시설명	규격	대수	시설명	규격	대수
폐수운반방법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제2항에 따라 폐수 [] 수탁처리업
[] 재이용업

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	-------

<p>신청인 제출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처리대상 폐수의 종류 및 그 처리방법 처리시설의 설치계획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각 1부 폐수처리방법별(폐수 재이용업은 폐수성상별)로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공업용수 및 폐수처리방법별(폐수 재이용업은 폐수성상별)로 유입조와 최종배출구 등에 부착해야 할 측정기기의 설치 부위 표시 도면 1부 폐수의 수거 및 운반방법(이동식탱크로리 또는 용기운반차, 고정식관망 이용 등)을 적은 서류 기술능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기술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1부 	<p>수수료 10,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9,000원)</p>
<p>담당공무원 확인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기술자격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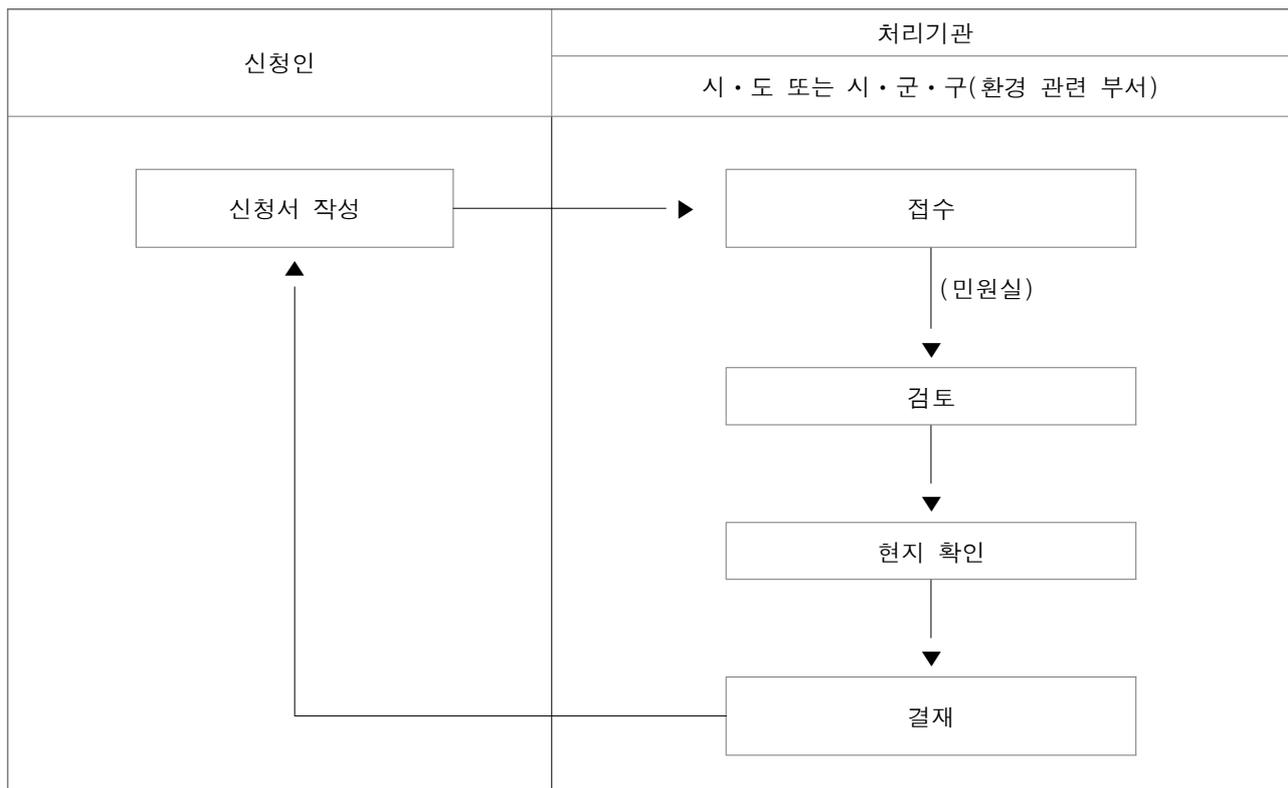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폐수 수탁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
 재이용업 변경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 쪽)

허가(신고)번호	제 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	-----	-----	------	-----

신청인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착공 예정일	설치완료 예정일
	년 월 일	년 월 일

변경허가·신고 명세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의2제2항에 따라 폐수 수탁처리업 재이용업 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폐수 수탁처리업 또는 폐수 재이용업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5,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4,0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3. 기술능력 보유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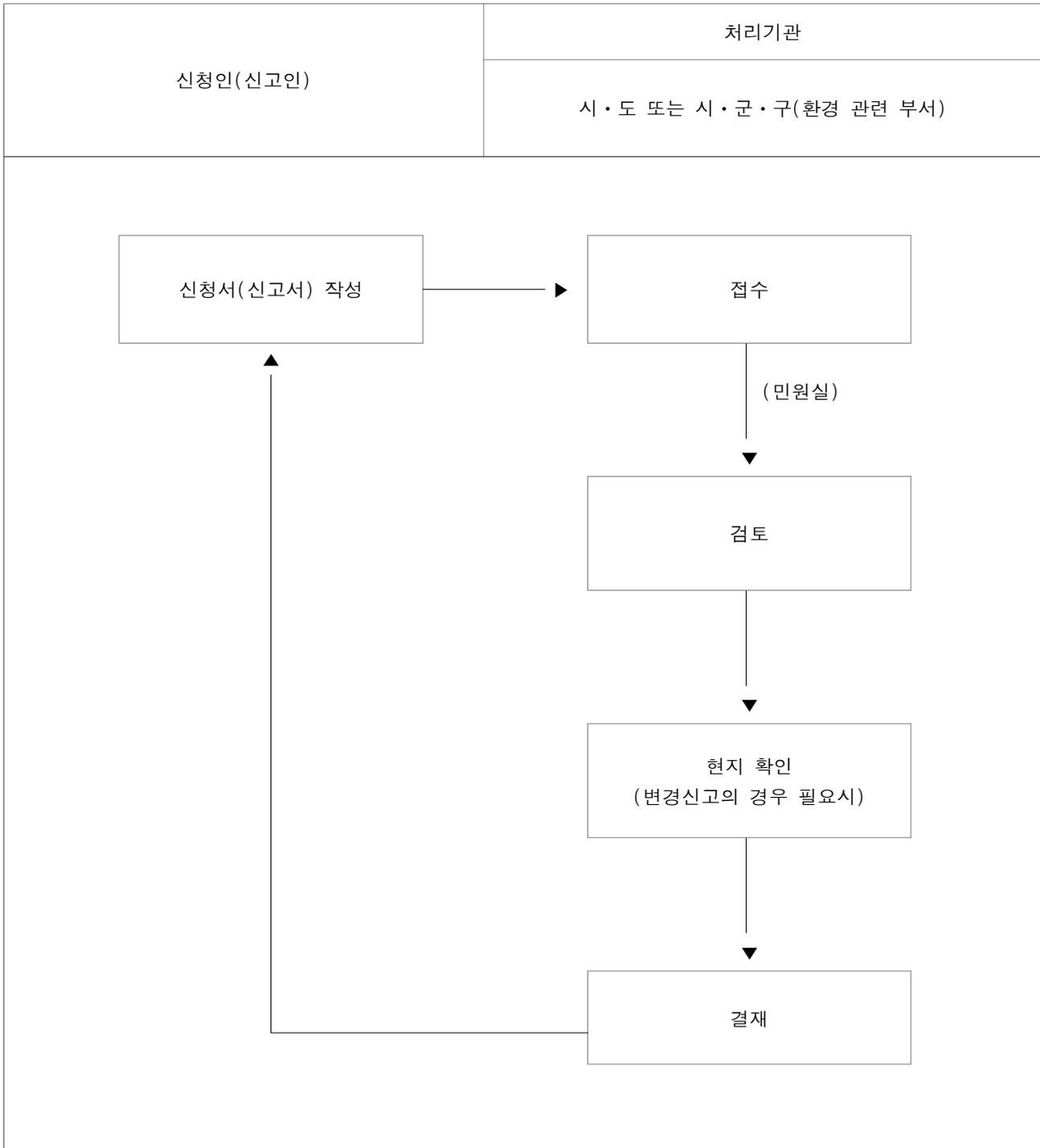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일련번호		폐수 위(수)탁 확인서			
제 호					
위 탁 자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소재지			④ 전화번호	
수 탁 자	⑤ 상호(명칭)			⑥ 성명(대표자)	
	⑦ 소재지			⑧ 전화번호	
구분		⑨ 단위	⑩ 수량	⑪ 비고	
폐수종류(부호)					
()					
()					
()					
⑫ 특기사항					
폐 수 부 호	H-1 도금산화계	H-2 도금환원계	H-3 도금혼합	H-4 실험실 폐수	
	H-5 그 밖의 중금속	A-1 폐산	K-1 폐알칼리	M-1 그 밖의 금속	
	P-1 사진현상	P-2 사진정착	P-3 사진세척수	P-4 인쇄제판정착	
	P-5 인쇄제판현상	P-6 인쇄제판세척수	B-1 보일러세관(녹제거)	B-2 보일러세관(중화)	
	G 귀금속 가공수				
	EX 그 밖의 폐수(⑫ 특기사항란에 폐수의 종류·성상 등을 적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마목에 따라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차량번호:		확인자: 수탁자		(서명 또는 인)	
운 전 자:		확인자: 위탁자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1. 폐수처리업자는 확인서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발급하고, 확인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합니다.
2. 확인서는 2장을 작성하여 수탁자와 위탁자가 각 1장씩 보관합니다.

수탁폐수의 혼합확인 결과서

확인일시		확인자	(인)
확인목적	[] 혼합 저장 [] 혼합 처리 [] 기타 취급 ()	책임자	(인)

확인 대상				
저장폐수	폐수 종류(부호)	()	저장량(m³)	
수탁폐수	상호(명칭)		수탁량(m³)	
	폐수 종류(부호)	()		
혼합비율 (%)	저장폐수	수탁폐수	(산정근거:)	
폐수부호		H-1 도금산화계	H-2 도금환원계	H-3 도금혼합
H-4 실험실 폐수	H-5 그 밖의 중금속	A-1 폐산	K-1 폐알칼리	
M-1 그 밖의 금속	P-1 사진현상	P-2 사진정착	P-3 사진세척수	
P-4 인쇄제판정착	P-5 인쇄제판현상	P-6 인쇄제판세척수	B-1 보일러세관(녹제거)	
B-2 보일러세관(중화)	G 귀금속 가공수			
EX 그 밖의 폐수(폐수의 종류·성상 등을 적습니다)				

확인 결과						
구분		저장폐수	수탁폐수	혼합 직후	혼합 반응 후	위험·유해성 분류기준
부식성	pH					pH 2.0 이하 강산성 또는 pH 11.5 이상 강염기
폭발성	메탄(%)	/				메탄 10% 이상
유해성	이산화탄소(%)					1.5% 이상
	황화수소(ppm)					10ppm 이상
	산소(%)					18% 미만 또는 23.5% 이상
자연발화성	자연발화			[] 유 [] 무	[] 유 [] 무	5분 내 자연발화
기타	온도(℃)					
	가스 발생(연기 등)				[] 유 [] 무	
	악취 발생				[] 유 [] 무	
처리결과	[] 혼합 저장 [] 별도 저장 [] 반송					
특이 사항			사진대지			
			실험 전		실험 후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검사 희망일부터 60일
------	------	------	--------------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사무소 소재지	

세부내용	시설 소재지	
	검사대상 시설	[] 폐수 수탁처리업 ([] 저장시설, [] 처리시설) [] 폐수 재이용업 ([] 저장시설, [] 처리시설)
	처리시설 구분 (처리시설을 검사 대상으로 신청할 경우)	[] 증발농축시설, [] 건조시설, [] 소각시설, [] 물리·화학시설, [] 생물화학적처리시설, [] 기타시설 ()
	검사 희망일	

「물환경보전법」 제6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제4항에 따라 검사대상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검사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폐수 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증 사본 2. 폐수처리시설의 설계도면 및 처리용량계산서 3. 직전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최초 정기검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4. 직전 정기검사 이후 폐수처리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 내용 5. 폐수처리시설의 운전·유지관리계획서 6. 폐수처리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수수료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6조제1항제6호에 따 른 금액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폐수처리시설 검사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상호, 주소, 전자우편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검사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에 따른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고지받고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 동의함 [] 동의 안 함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서면검사 자료 확인	→	현장 확인	→	결과 통보
신청인		검사기관		검사기관		검사기관		

제 호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결과서

상호(명칭)		업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검사 장소			
검사 연월일			
검사대상 시설			
검사 결과	(항목별 검사결과 붙임)		
검사자	(인)	(인)	(인)
특이 사항			

「물환경보전법」 제6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제5항에 따라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결과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담당부서:

전화번호: